

4.16세월호참사 비평 vol.1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주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행

4·16재단

4.16세월호참사 비평 vol.1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4.16세월호참사 비평 VOL.1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발간사

진실이 두렵다고 왜곡하거나 은폐할순없다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종기

대한민국 건국이후 일어나지 말아야될 참사는 끊임없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다시는 반복 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는 높였지만 진상규명은 되지않았고 사후대책은 미흡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전국민이 TV생중계로 지켜본 건국 이후 최악의 참사라는 세월호침몰 사건도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침몰원인조차 밝혀내지 못 하고 있고 구조방기 세력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무엇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것에 걸림돌로 작용했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참사와 관련한 그 시대적 상황과 국민들의 진상규명에 대한 열망 그리고 집권세력의 의지 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결합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7년여간의 끈질긴 활동에도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반하는 시대적 상황과 집권 세력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함께 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집권세력인 박근혜 정권의 전방위적인 증거은폐 및 관련기록파기 조사와 수사방해 등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침몰원인조차 밝히지 못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보더라도 집권세력의 진상규명 방해 또는 집권세력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결여가 어떻게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증거가 지금 세월호참사의 검찰수사 결과와 법원의 해경지휘부 무죄판결 등이 그동안의 재판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의 이러한 수사결과와 법원의 재판결과를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 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성역없는 검찰수사인지와 적절한 법 적용과 법관의 법리적 양심을 적용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비평집은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재판이나 수사결과를 비교, 평가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진상규명 방해를 넘어, 여론을 다시 환기시키고 진실을 밝히는 활동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일상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조금 더 살만하고 안전한 나라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비평집을 통해서 이런 귀중한 기회를 가질수있도록 애써주신 민변 세월호 TFT 변호사님들과 4.16연대 사무처 활동가분들 그리고 이 비평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한 4.16재단, 이 모든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공동대표

박승렬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말만하지 않았습시다. 싸우고 또 싸워 왔습시다. 지난 7년여 세월 동안 세월호 가족들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싸웠습시다. 진도에서 서울까지 멀고 먼 길을 행진하기도 했습시다. 단식과 삭발도 마다하지 않았습시다. 시민들도 역시 세월호 가족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싸워 왔습시다.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의 염원은 단 하나입습시다. 2014년 4월 16일, 그 날의 진실을 밝혀내고, 국가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입습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람이 존중받고 생명이 중시되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다짐이었습시다.

우리는 4월16일의 약속을 지키고자 지난 7년 동안 싸워왔습시다. 진상 규명을 위해 싸웠고 많은 진상 조사 작업이 이뤄졌습시다. 특조위,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수많은 조사와 수사, 재판이 있었습시다. 그러나 무엇이 밝혀졌습습니까? 침몰의 원인이 밝혀졌습습니까? 구조를 포기했던 국가의 책임자들이 밝혀졌습습니까?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으니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습시다. 반면에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면 실망하거나 분노하기도 합습시다. 간극이 크게 벌어져 있습시다. 그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세월호 관련 재판의 판결을 정리하지 못한 채 서가에 묻혀 있었던 탓도 있습시다.

이번에 판결 비평집을 발간하는 것은 재판 결과를 정리하여 무엇이 드러났고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분명히 하고, 나아가 과제와 목표를 다시 세워보고자 함입니다. 판결 비평집은 과거의 판결을 정리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판결 비평집은 판결문에 담겨 있는 검찰과 사법부의 얼굴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검찰과 사법부의 맨 얼굴을 드러내는 고발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참사에 대해 얼마나 허약했고 아직도 대비하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비평집은 진실을 향한 싸움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등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비평집을 발간할 수 있게 된 것은 민변 변호사님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쫓겨이 쌓여 있는 사건 보고서, 공소장 등과 씨름하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해 오셨습니다. 민변 세월호 특위를 책임지고 소임을 다하신 이정일 변호사님을 비롯한 류하경 변호사님, 오민애 변호사님 등 많은 변호사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의지가 없었다면 결코 결실을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투쟁 현장에서 언제나 헌신적으로 싸우시는 세월호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자 열심히 뛰어 다니는 4.16연대 사무처 활동가들의 노고에도 마음 깊이 찬사를 보냅니다. 이 비평집은 함께 투쟁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질 그 날까지 4월16일의 약속을 다짐하고 함께 싸워갑시다.

진상규명 활동의 방향을 그려보게 할 소중한 작업

4·16재단
운영위원장
박래군

우리는 다시 참담한 심정으로 7주기를 맞는다.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바랐던 이들은 유가족들만이 아니었다. 세 번째 국가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악조건 속에 분투 중에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사건의 실체들은 7년이 지나도록 온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어느 해보다 더하다.

그러한 때에 세월호참사 판결 비평집이 나오게 되어 더 없이 반갑다. 이 비평집을 통해서 그간의 세월호참사 관련한 법원 판결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고소·고발운동, 사참위의 조사결과의 일단, 그리고 지난 1월 19일 발표된 검찰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까지 훑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비평집은 세월호참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법원의 결론, 사참위의 조사결과의 개요까지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 비평집이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아무 것도 안 되었다는 세간의 의심을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유가족과 시민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진행해왔던 일들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아님을, 아주 어렵고 더디기는 하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짜 맞추기, 축소수사로 면죄부를 주려는 검찰 수사의 수사태도는 초기부터 최근의 특별수사단까지 일관되어 있음도, 특별검사가 하루 빨리 임명되어야 할 필요성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의 판례 속에서 구조책임 방기 지휘 책임자, 진상규명 방해세력에 대한 단호한 책임을 묻지 않는 법원의 미온적이고 안이한 태도도 확인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검찰과 법원의 태도들은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도 4.16세월호참사가죽협의회나 4.16연대의 활동이 없었다면,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다면 나올 수 없었음도 알게 된다. 만약 그런 활동들이 없었다면 정보기관들의 유가족 사찰행위나 박근혜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방해세력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판결 비평집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의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진상규명의 현재를 판단할 수 있고, 이후 진상규명 활동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간보고서로서의 역할은 해낼 것이라 기대된다. 이후 이 비평집이 발전되어 시민용 진상규명 작업 해설서로 거듭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 소중한 비평집을 만드는데 4·16재단도 조금의 기여를 했다. 사참위 활동이 종료된 뒤 그 뒤의 진상규명 관련 활동을 이어받을 4·16재단으로서는 주어진 사명을 다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이 비평집은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비평집이 나올 수 있기까지 유가족들과 4.16연대의 활동가와 시민들의 분투가 있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 세월호참사 초기부터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지속해온 민변 변호사들의 노력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 비평집은 우리의 진상규명 노력을 더욱 다그쳐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진실, 책임, 안전한 사회

우리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대응 TF

팀장, 법률대리인단 단장

변호사 **이정일**

눈물이 흐른다. 왜일까? 따스한 날, 야트막한 언덕에 핀 노란 꽃을 보자, 깊게 참아왔던 무언가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때로는 가까이서, 때로는 멀리서 함께 한 시간이었다. 함께 할 수 있게 한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진실이다. 드러난 진실은 책임을 묻는다. 드러난 진실과 책임은 모든 이가 오순도순 살 수 있는 밑 거름이 된다. 진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책임을 져야 하고, 권력을 쥐 자는 내려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

‘450여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메시지가 국가안보실, 청와대에 전파되었는데도 국가컨트롤타워는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의 행정력, 군사력, 경찰력을 총 동원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가 해저로 가라앉았는데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구조·대응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 지지율은 폭락했다. 진실이 드러나면 광화문 촛불처럼 모두가 들고 일어날 상황까지 갈 수 있었다.

박근혜 전 청와대는 김기춘을 정점으로 최초의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국회에 대응했다. 감사원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경123정장과 해경지휘부 수사에 대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 당시 감사원과 검찰은 외압에 순응했다. 박근혜 전 청와대는 국군기무상령부와 국정원을 동원하여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면서 반정부 세력 등이라는 비판 여론을 만들어냈다. 세월호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활동을 시작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했다. ‘세금도둑’이라며 예산을 축소했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해양수산부, 여당 등은 합세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김기춘 판결, 조운선 판결, 국군기무사령부 등 일부 판결을 통해서 일부만 드러난 것이었다.

세월호참사의 최초 원인, 즉, 세월호가 넘어지고 빠른 시간 안에 해저로 침몰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를 밝히고자 한 재판은 청해진 해운에 대한 재판, 운항관리자에 대한 재판, 선원에 대한 재판 등이다. 법원은 판결로 밝히려고 했다. 이러한 판결은 재판 당시 세월호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진실을 드러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세월호가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낸 1073일 후에 목포신항에 옮겨진 바로 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려 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두가지 견해를 내 놓았다. 이런 점에서 판결비평은 불완전한 것이다. 판결비평 작성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모든 수사자료와 조사자료를 볼 수 없었던 측면에서도 불완전하다.

이렇게 불완전한데도 판결비평을 하게 된 것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부라도 정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공적으로 확인해 준 파편이 진실을 찾아가는 작은 표시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이 세월호 침몰원인의 모든 것이 라고 말하고자 하지 않았다. 판결의 내용과 한계를 말하고자 노력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는 것,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활동이 방해받아 세월호 침몰원인과 관련해서 제대로의 발걸음을 하지 못했다는 것, 진실을 밝히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진실의 흔적과 자료가 숨겨졌다는 것, 이런 이유로 책임져야 할 자들이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 법원은 엄격증명 책임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깃대어 책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 등을 우리는 교훈으로 새겼다. 늦어진 정의가 결코 정의가 될 수 없음도 교훈으로 새겨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 법률가로서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왜냐하면, 세월호의 침몰원인을 밝히고, 구조책임자를 드러내어, 모든 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에서 오순도순 살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판결비평집을 내는 것이 매우 두려웠다. 판결비평문에 실린 내용이 세월호 진실의 모든 것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여전히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짧은 시간이라도 판결비평문을 내는 의미를 강조하고 힘을 실어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와 4.16재단에 감사를 드린다.

발간사를 거듭 거듭 독촉받는 날에 비가 계속 내렸다. 언덕에 핀 노란 꽃은 비를 맞고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노란 꽃은 겨울을 이겨내며 꽃을 피워냈고, 비를 맞고 흔들리며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생각에 머물렀다. 매년 이날이 다가올 즈음이면 온 몸으로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하는 변호사들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 마음을 담은 판결비평문을 드린다.

비평 순서

I. 기존판결 비평	019
1.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 판결	021
2. 세월호 선원들의 구조책임과 관련한 살인,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등에 대한 판결	053
3.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판결	089
4.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책임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 판결	105
5. 특조위 강제해산으로 인한 조사관들의 임금청구 사건 판결	117
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사건 판결	127
7. 세월호참사 당시 최초보고 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죄 사건 판결	145
8.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한 판결	171
9. 해경지휘부의 구조 책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 판결	193
II. 국민고소고발 추진단	219
1. 경과보고	221
2. 고소고발요지	227
III.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내용	247
IV.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비평	259
1. 수사결과 요지	261
2. 불기소 처분에 대한 비판	305

I

기존판결
비평

1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건 판결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97, 209(병합), 211(병합), 447(병합)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노509판결, 대법원 2015도7703판결

조세현 변호사

1 사건의 등장인물 : 피고인별 직위 및 기소 죄목

청해진해운은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선박인 세월호의 선사이고, 이 사건 피고인들은 위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해무이사, 물류팀장, 해무팀장 등 위 회사 소속 임·직원과 본선 하역작업 관리 등을 담당하는 우련통운의 직원들, 선박의 안전점검과 출항 현장 확인 등을 수행하는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소속회사에서의 지위 및 본 사건들에 기소된 죄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성명	직위	기소 죄목
1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물, 선박안전법위반, 특경법위반(업무상 횡령), 특경법위반(업무상 배임)
2	김영봉	청해진해운 상무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물, 선박안전법위반
3	안기현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물, 선박안전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순번	성명	직위	기소 죄목
4	남호만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5	김정수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6	박희석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7	신보식	세월호 선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8	문기한	우련통운 본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9	이준수	우련통운 현장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10	김주성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업무방해
11	전정윤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인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업무방해

2 사건의 소개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인천-백령도, 여수-거문도 등의 정기 연안여객선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인천-제주 간 노선은 독점 운항하여 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의 침몰 원인 및 사고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수익 극대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사의 무리한 증·개축 공사, 화물과적, 고박불량 등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 상실이 침몰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본 판결은 세월호의 불법 증·개축, 화물과적, 고박불량 등에 대한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우련통운 직원들의 업무상과실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인이 세월호 출항 전에 과적 여부 및 고박 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세월호를 출항하도록 한 업무상과실, 그리고 당시 세월호에 탑승 중이던 선장 이준석 및 선원들의 업무상과실이 결합하여 복원력을 상실한 세월호가 전복되었다는 점¹⁾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등을 선고한 사건이다.

3 이 사건 제1심판결²⁾의 주요 내용

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1) 청해진해운의 설립 및 운용

청해진해운은 1999. 2. 24.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청해진해운은 2013.말 주요 주주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유병언 일가가 소유하였던 회사이고, 2013. 당시 오하마나호, 오가고호 등 여객선 5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임원인 회장 유병언을 비롯하여, 사장인 피고인 김한식, 상무인 피고인 김영봉과 그 아래 기획관리팀, 해무팀, 물류팀, 여객영팀과 제주지역본부, 여수지역본부, 한강사업본부, 백령영업소로 구성되어 있다.

1) 세월호 참사의 진상 및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은 현재진행 중이다. 다만, 본 판례 분석문은 청해진해운 사건 판결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필자는 위 판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관한 설시를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해당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세월호 참사의 실제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전히 추가적인 진실 규명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97, 209(병합), 211(병합), 447(병합)

그 중 물류팀은 화물을 유치하거나 하역회사와 함께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해무팀은 선박직원의 채용, 안전교육 등의 업무와 선박의 입출항관계 업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청해진해운의 보고체계를 살펴보면, 각 팀장(본부장)이 상무인 피고인 김영봉과 사장인 피고인 김한식에게 보고를 하고, 일부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김한식이 회장 유병언에게 직접 보고를 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피고인 김한식의 주재로 각 팀장(본부장)들이 모두 모여 주간회의를 하면서 각 팀(본부)의 실적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바, 피고인 김한식은 위 회의에서 전주 실적을 점검하고 매출을 독려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는 단초가 되었다.

2) 세월호 도입 증·개축

청해진해운은 2011. 3.경 일본국 연안에서 운항되던 ‘나미노우에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2. 10. 8. 일화 8억 엔 (한화 115억 원 상당)에 수입하여 2012. 10. 22. 인천 지방해양항만청에 선박의 명칭을 ‘세월호’, 선적항을 인천광역시로 하여 신규(수입) 등록하였다.

그 후, 피고인 김한식은 유병언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의 여객실 및 화물 적재 공간을 늘임과 동시에 유병언의 개인 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피고인 안기현 등의 감독 하에 세월호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세월호 B 데크의 선미 부분을 철거하고, A 데크의 선미 2.8m, 갑판 5.6m, 천정 1.6m를 연장하여 생긴 공간을 두 개 층으로 만들어 하층은 여객실 상층은 전시실 등으로 개조하고, 선수 우현의 카래프(차량진입문) 40톤 상당을 철거하는 등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하였다.

완성 복원성 계산 결과, 세월호의 총 톤 수는 239톤 증가, 경하중량(순수한 배의 무게)은 187톤 증가, 재화중량(화물 등을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은 187톤 감소, 승선인원이

116명 증가하면서 무게중심이 51cm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무게중심을 낮추어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적재가능 화물을 1,448톤 감소시키고, 대신 평형수를 1,324톤 증가시킬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합계 1,077톤의 화물만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선급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또한, 카래프 철거 시 선수 우현에 30톤 상당의 중량을 추가하거나 좌현에 30톤 상당의 중량을 감축하지 않아 좌우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복원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청해진해운은 위와 같이 증·개축 공사를 마치고 2013. 3. 1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인천 ~ 제주항로에 세월호를 운항하면서 최대화물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초과운임을 취득하여왔다.

3) 세월호의 교육훈련 미준수 및 사고 전력

피고인 김한식은 2013. 8. 1. 해무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안기현을 세월호의 안전 관리담당자로 임명하였고, 피고인 신보식은 세월호 선장으로서 세월호에 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해상인명 안전훈련 및 대응훈련, 해양사고 대응훈련, 인명사고 시 행동 요령, 비상조타훈련, 기름유출 대처훈련을 실시하여야 했음에도 소화훈련만 1회 실시하는 등 평소 세월호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해양사고 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안기현과 그의 지휘를 받아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피고인 박희석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한편, 세월호는 위와 같은 증·개축 이후 2013. 11. 28. D데크에 선적된 화물 등이 한쪽으로 쏠려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4. 1. 20. 18:30경 구조변경으로 인한 선박무게 중심 이동으로 화물의 양적하시 기울기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출항지연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는 피고인 김한식 등에게 보고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 가능한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점이다.

4)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출항

세월호는 2014. 4. 15. 18:30경 출항 예정이었으나, 안개로 인하여 21:00경 지연 출항하게 되었다. 청해진해운이 선박안전법 제28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복원성 자료에 의하면 총 톤수 6,825톤인 세월호가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재화중량 톤수는 3,794톤이고,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는 1,077톤이었으므로, 세월호가 만재할수 6.264 m를 유지하면서 최대 1,077톤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평형수 1,694.8톤, 연료유 560.9톤, 청수 290.9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1항차당 유류대금 등 비용만 약 6,000만 원이 소요됨을 이유로 위와 같은 기준을 도외시하였고, 피고인 김한식, 김영봉, 안기현, 박희석 등은 2013. 2.경부터 2014. 3.경까지 각종 화물적재를 위한 장치인 D-Ring 785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위 피고인들은 세월호의 증·개축으로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아 세월호의 매각을 건의하였으나, 2014. 1. 유병언에 의해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오하마 나호를 먼저 매각하라는 지시에 따라 복원성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세월호를 운항하고 있었고, 피고인 김한식은 매주 월요일 오전 피고인 김영봉, 안기현, 남호만, 박희석 등이 참석한 주간회의를 주재하면서 “화물을 많이 실으라”며 실적을 독려했다.

이에, 피고인 남호만은 피고인 김정수에게 “화물을 무조건 많이 적재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이준수는 적재 화물량이 많으면 우련통운에도 수익이 많이 생기므로 규정과 달리 화물을 과적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문기한은 위 피고인 이준수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 ‘적재계획도’, ‘작업계획’ 없이 화물이 과적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이준수가 규정에 맞지 않게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그 결과 세월호는 2014. 4. 15. 출항 전까지 C데크(2층) 선수 갑판에 컨테이너 45개, 일반

화물 등, Tween데크(2.5층) 선미 화물칸에 승용차 30대 등, C데크(2층) 화물칸 승용차 70대, 화물차 28대, 중장비 1대 등, D데크(1층) 화물칸에 승용차 24대, 화물차 29대, 중장비 3대, 컨테이너 7개, 일반화물 등, E데크(지하) 화물칸에 컨테이너 53개와 일반화물 등 모두 2,142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하여, 복원성자료에 기재된 적재 가능한 화물 최대치 1,077톤을 무려 1,065톤이나 초과한 양의 화물을 적재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김정수, 남호만, 박희석, 안기현, 김영봉, 김한식은 규정대로 고박을 하게 되면 화물 적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규정대로 고박을 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김한식의 지시하에 피고인 남호만은 피고인 김정수에게 “공간을 최대한 붙여라. 화물을 많이 실어라”는 등으로 지시하고, 피고인 김정수는 피고인 이준수에게 “화물을 무조건 많이 적재하고, 컨테이너는 2단 컨테이너 상단을 로프로 돌려 묶는 방법으로만 고박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선박안전법 제39조에 의하여 운항관리규정 첨부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정해진 방법을 위반하여 화물을 고박하였고, 피고인 문기한은 우련통운이 고박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이준수가 위와 같은 고박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5) 운항관리자의 부실 점검과 출항

운항관리자는 해운법 시행규칙, 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기준에 따라 각 선박의 선장이 제출하는 안전점검 보고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장 피고인 신보식은 평소 3등항해사 박한결에게 위 선박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을 위임하여 왔고, 이준석 역시 이를 위 박한결에게 위임하였다. 3등항해사 박한결은

위임받은 안전점검 보고서 2부를 모두 양호로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 관리실 소속 운항관리자인 피고인 전정윤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전정윤은 세월호의 화물적재상태 등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중 1부에 자신의 서명을 한 뒤 박한결에게 돌려주며 세월호의 과적이나 고박불량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출항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세월호를 출항하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 전정윤은 세월호가 출항한 이후 박한결이 무전으로 알려주는 대로 현원란에 474명, 여객란에 450명, 일반화물란에 657M/T, 컨테이너란에 “없다”TEU, 자동차란에 150대를 직접 기재하여, 마치 출항 전 안전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운항관리실에 비치하였다.

6) 운항과실과 전복

사고 당일 07:30경부터 당직조타수로 근무한 조준기는 세월호의 복원성이 취약한 점, 화물적재상태나 고박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평소 우현으로 조타할 경우 좌현으로 경사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08:48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조준기는 박한결의 지시에 따라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원하는 대로 변침이 이루어지지 않자 당황하여 임의로 조타기를 우현 측으로 대각도로 돌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선수가 급속도로 우회두 하면서 외방경사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졌다.

그 과정에서 부실하게 고박된 과적 화물이 좌현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복원력이 상실되어 결국 좌현으로 약 30도 전도되었고, 세월호는 2014. 4. 16. 08:49:13경 위도 34.162247, 경도 125.96492 지점 해상에 있다가 엔진 정지 및 조류의 영향 등으로 선박 우측방향으로 타원형을 그리면서 8:52:01경 위도 34.160717, 경도 125.9608지점 해상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세월호는 09:34:03경 52.2도로 기울어진 것을 비롯하여, 09:35:02경

52.9도, 09:36:17경 54.1도, 09:38:44경 54.4도, 09:39:10경 54.9도, 09:40:52경 55.3도, 09:41:26경 55.4도, 09:43:27경 56.2도, 09:44:38경 56.7도, 09:45:03경 57.3도, 09:46:38경 61.2도, 09:47:37경 62도, 09:49:44경 62.8도, 09:50:22경 62.6도, 09:51:46경 63.3도, 09:54:35경 64.4도, 10:07:41경 68.9도, 10:09:03경 73.8도, 10:10:43경 77.9도로 기울어 지다가 10:17:06경 108.1도로 전복되었다.

7) 구조요청과 퇴선

세월호가 전도되어 8:52:01경 위도 34.160717, 경도 125.9608지점 해상에 멈추자 이준석, 강원식, 김영호, 신정훈, 박경남, 오용석은 상황 파악을 위해 조타실에 모였고, 배가 곧 침몰할 것으로 인식하여 08:55경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VTS’)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세월호가 사고 발생 직후 이미 좌현으로 약 30도 정도 기울고 선수 갑판에 있던 화물들이 좌현으로 쏠려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즉시 전 비상부서배치 명령을 발하여 각 선원들이 승객들을 선실에서 나오게 한 뒤 갑판으로 유도하는 등 퇴선 준비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이준석은 위와 같은 퇴선준비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08:58경 김영호에게 승객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지시하고, 이에 김영호가 방송을 하였으나, 비상버튼을 누르지 않아 선내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영호는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에게 세월호 침몰 상황은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안내방송을 지시하고 양대홍은 3층 데스크에 있는 매니저 강혜성에게 ‘선내 대기’ 방송을 지시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선내에 대기토록 하였다.

한편, 당시 조타실에 있던 박기호는 이준석이 “기관실로 내려가 봐라”라고 지시하자 기관부 선실이 있는 3층 복도까지 계단으로 내려갔고, 09:06경 그곳에서 기관실에서부터 올라온 이수진, 박서용은 이영재와 기관부 선원인 손지태, 전영준, 김규찬과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조타실에 있던 이준석, 강원식, 김영호 등은 09:15경 둘라에이스호가 승객 구조를 위해 세월호에 다가오며 교신을 보내는 것을 들었고, 09:21경 및 09:23경 진도 VTS 및 둘라에이스호로부터 “인근에 있다가 인명들이 탈출하면 구조하겠습니다.”라는 교신을 듣고도 구명뗏목과 슈트 등 구조장비를 투하하고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구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09:24경 둘라에이스호 선장으로 부터 “라이프링이라도 하여간 착용을 시켜 탈출을 시키십시오”라는 교신을 받고, 09:25경 진도 VTS로부터 “지금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선장님께서 승객을 탈출시킬지 최대한 지금 빨리 결정을 해 주십시오”라는 교신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였다.

조타실에 있던 이준석 등은 09:26경 진도 VTS로부터 “10분 이내에 도착할 겁니다”라는 교신을, 09:27경 “1분 후에 헬기 도착 예정입니다”라는 교신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09:34경 세월호가 52.5도(추정)로 기울면서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더 이상 지체하면 승객들은 아예 선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09:37경 이후 교신에 응답하지 않은채, 09:39경 박기호 등 기관부 선원들이 퇴선하는 것과 전방 경비정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조타실 좌측 출입문을 통해 윈브릿지로 나간 후 09:46경 조타실 앞에 도착한 해경 123호 경비정에 탑승하여 자신들이 선장, 선원임을 밝히지 않고 세월호를 퇴선하였다.

당시 승객들은 08:52경 매니저 강혜성의 선내방송을 비롯하여 09:50경까지 수회에 걸쳐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들었다. 08:52경 피해자 최○○의 119 최초 신고 이후 피해자 김○○이 09:41, 09:42경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박○○이 10:17경 “지금 더 기울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내 대기 안내방송에 따라 구조조치를 기다리며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죄책은 무엇인가?

[2014고합197, 209(병합), 211(병합)]

1) 피고인 김한식, 김영봉, 안기현, 남호만, 김정수, 박희석의 선박안전법 위반

피고인들은 세월호 증·개축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세월호가 복원성을 유지하며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최대치가 1,077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한식은 위 피고인들에게 복원성에 문제가 있는 세월호에 화물을 많이 실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선장 이준석 등과 공동하여 2014. 4. 15. 세월호에 평형수, 연료유, 청수 등을 복원성 기준 2,546.6톤 보다 1,275.8톤 적게 적재한 반면, 화물은 복원성 기준보다 1,065톤 많은 2,142톤을 적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보다 현저히 미달한 채 출항하게 하였고, 결국 세월호는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준석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김한식, 김영봉, 안기현, 남호만, 김정수, 박희석, 문기한, 이준수, 전정윤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화물을 적재하면서 관련 규정대로 화물에 대한 고박을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과 피고인 전정윤이 출항 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채 출항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 그리고 세월호가 위 일시, 장소에 이르러 우현으로 변침하는 과정에서 박한결, 조준기가 조타를 미숙하게 한 업무상과실이 겹쳐서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한 뒤 전복됨으로써 승객 등 476명이 현존하는 세월호를 침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준석, 강원식, 박한결, 조준기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하게 하였다.

3) 피고인 김한식, 김영봉, 안기현, 남호만, 김정수, 박희석, 신보식, 문기한, 이준수, 전정윤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위 1), 2) 항의 업무상과실 및 피고인 신보식이 평소 세월호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해양사고 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고, 피고인 안기현과 피고인 박희석이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업무상과실과 이준석 등 선원 15명이 승객 등에 대한 어떠한 구조조치도 하지 않은 채 퇴선한 행위가 겹쳐서 피해자 304명으로 하여금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5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로 이준석, 강원식, 박한결, 조준기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전정윤의 업무방해

피고인 전정윤은 과적이나 고박불량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출항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세월호를 출항하게 하고, 이후 박한결이 무전으로 알려 주는 대로 출항안전점검 내역을 직접 기재하여 출항 전 안전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기재한 다음 이를 운항관리실에 비치하였다. 이후 피고인 전정윤은 여객선 방문결과 서류에 특이사항 없음, 현장확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뒤 방문자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다음 날인 16일 운항관리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전정윤은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9.부터 2014. 4.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안기현

가) 업무상횡령 : 세월호 수리과정 발생한 고철, 선박 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품, 청해진 해운 보관 선박 부품 등을 임의 매각하였다.

나) 배임수재 : 쾌속선 수리 업체 대진기계의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배임수재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447(병합)]

● 피고인 김한식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³⁾

- 업무상횡령 : 유병언이 청해진해운(피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고문료로 2010. 6. 1.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135,122,500원을 지급하였다.
- 특경법위반(업무상횡령) : 2010. 3.경부터 2014. 3. 31.까지 유대균이 오하마나호라는 상호를 등록한 것을 기화로 사용료 명목으로 33,441,871원을 지급한 것을 비로하여 2014. 3. 31.경까지 합계 1,496005,170원을 지급. -> 무죄(5억 이상 증거불충분)
- 업무상배임 : ① 아이원아이홀딩스(유대균, 유혁기 최대주주 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수수료 269,500,000원, ② Naeclear(유혁기 운영)에 대한 컨설팅 비용 2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혐의에 해당하여, 간략히 인정된 범죄사실만 기재하였다.

- 특경법위반(업무상배임) : ① 유병연 사진 110,000,000원 상당 구입, ② 헤마토센트릭 라이프연구소 출자금 549,960,000원 지급은 무죄로 판단되었다(경합범, 5억 이상 증거불충분).

다.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어떠한 형이 선고되었는가?

1) 피고인 김한식(징역 10년 및 벌금 200만 원)

업무상과실치사죄, 특경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경법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선박안전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하였다.

2) 피고인 김영봉(금고 5년 및 벌금 200만 원), 남호만(금고 4년 및 벌금 200만 원), 김정수(금고 3년 및 벌금 200만 원), 박희석(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만 원)

업무상과실치사에서 정한 금고형과 선박안전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하고, 피고인 박희석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3) 피고인 안기현(징역 6년, 벌금 200만 원, 추징 5,570만 원)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횡령죄, 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선박안전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하고, 형법 제357조 3항 후문에 따라 5,570만원을 추징하였다.

4) 피고인 전정윤(징역 3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5.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5) 피고인 신보식(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정한 형을 선택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6) 피고인 문기한, 이준수(각 금고 2년)

재판부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금고 2년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무엇이고,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가?

1) 피고인 김영봉의 선박안전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김영봉은 자신이 선박안전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당해 사건 재판부는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어 그 대표기관이 법인이 부담하는 의무 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 김한식이 선박안전법위반죄의 주체가 되고, 그와 공모한 피고인 김영봉은 선박안전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2)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과실 인정여부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 김영봉이 청해진해운의 모든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 이사로서 세월호의 복원성이 좋지 않고, 적정량을 초과하는 화물 적재 및 고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를 출항하게 한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 안기현의 경우, 청해진해운이 해무팀장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하고 선박별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제3장 제2항 제1호)하고 있는바, 피고인 안기현이 세월호의 안전관리담당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안기현은 피고인 신보식이 평소 선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안기현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 박희석은 세월호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아니더라도 해무팀장으로서 해무팀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 상무, 대표이사에게 업무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고 직접 결재를 받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인 신보식은 평소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해양사고 훈련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문기한, 이준수의 경우, 세월호에 화물이 과적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하역 및 고박 담당자로서 화물 선적 및

고박이 규정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전정윤에 대하여는 운항관리자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출항정지를 요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세월호 출항 전 과적여부 및 고박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세월호를 출항하도록 한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유무

(1) 상당인과관계 인정

재판부는 복원성이 좋지 않은 상태로 출항한 세월호가 조타수인 조준기의 운항 중 과실로 우회두 하면서 횡경사가 발생하였고, 이에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이동하여 침수가 시작됨으로써 세월호가 침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주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과 세월호의 침몰 및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예견가능성

① 선박의 과적 및 평형수 부족으로 복원성이 나빠지면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화물이 부실하게 고박된 경우 화물이 이동하여 배가 기울어질 수 있는 점, ② 세월호 같은 수백 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침몰하면 탈출 과정에서 다수의 승객이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피고인들은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하역 담당자, 운항관리자로 세월호의 복원성이 나쁘다는 사실을 평소에 알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공동정범 성립여부

(1)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정범 성립여부 : 적극

재판부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참여한 자는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선박 전복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 전복 및 승객들의 사망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들 및 이준석, 선원 강원식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조준기, 박한결의 조타과실이 합쳐져 세월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는 세월호를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 대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2) 세월호 선원들과 사이에 공동정범 성립여부 : 소극

다만, 이준석 등 선원 15명이 승객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의 유기 행위이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행위의 시기, 구성요건, 보호법익 등이 다르므로, 피고인들과 선원들 사이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과 세월호 선원들 사이에 공동정범의 성립은 부정하였다.

라) 피고인 전정윤의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전정윤은 운항관리업무는 피고인 본인의 업무일 뿐, 한국해운조합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해운조합은 피고인이 선박 출항 직후 선장으로부터 승선인원 및 화물량을 보고 받아 안전점검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해운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제15조의9,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2조의 해석에 따르면 운항관리자는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고, 운항관리자는 한국해운조합의 사업 중 하나인 안전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하되 그 전문성을 존중하여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전문적 독립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안전운항관리업무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전정윤은 실제 출항하는 선박을 방문하는 등 현장확인을 통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화물이나 차량의 고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 화물적재상태란에 ‘양호’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출항 정지를 요청하는 등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 보고서 확인란에 서명함으로써 한국해운조합이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의 화물 적재 및 고박상태와 관련하여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인정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마) 피고인 김한식의 특경법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경법위반(횡령)

피고인 김한식은 유대균에게 상표사용료, 아이원아이홀딩스에 경영자문 수수료, Naeclear에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계약이 1년마다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0. 1.경 이후에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이를 해지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청해진해운의 자금집행에 관한 부분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위 계약들이 횡령이나 배임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특경법위반(배임)

피고인 김한식은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연구소에 549,960,000원을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2013. 4.경까지 주식회사 아해에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인 607,627,462원에 매도하여 청해진해운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고,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2012도12582 판결)”는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4 이 사건 제2심판결⁴⁾의 주요 내용

가. 이 사건 제1심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 피고인 문기한, 이준수의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실범의 공동정범 엄격 적용의 필요성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범 개개인의 개별적인 인과관계의 증거가 요구되지 않아 손쉽게 가벌성이 인정됨으로써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고, 일부 단계에 관여한 사람도 발생한 결과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광주고등법원 2015. 5. 12. 선고 2014노509

나) 화물과적과 관련한 업무상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인 문기한, 이준수가 ① 세월호에 선적할 화물의 양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들은 세월호의 완성복원성계산서에 따른 복원성 기준이나 화물 적정량을 전혀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화물의 과적여부도 알 수 없는 점, ③ 가사이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계약에 따른 화물선적 작업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에게 화물의 과적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부실고박과 관련한 업무상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 이준수의 부실고박 관련한 업무상주의의무위반, 예견가능성 등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문기한의 경우, ① 우련통운의 다양한 수행업무 중 제주카페리팀의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직접 세월호에 승선하여 화물선적 및 고박 업무를 감독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하위 직원인 이준수를 관리, 감독할 위치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간부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서 결과발생에 대한 단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문기한에 대한 원심 판결을 기각하였다.

라)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인용되어, 피고인 문기한은 1심 금고 2년에서 무죄로, 피고인 이준수는 1심 금고 2년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2) 피고인 전정윤의 업무방해죄에 관한 무죄 판단에 대한 판단

구 해운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운항관리업무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한국 해운조합은 청해진해운과 같은 선사 조합원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비록 해운조합이 운항관리자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운항관리자는 일정한 자격요건, 승선경력 갖추어야 하는 등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전문직으로서, 공공적 지위에 있다(구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6 내지 제15조의7). 이같은 취지에서 운항관리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아닌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위 시행규칙 제15조의9).

구 해운법 제22조 제4항,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은 ‘운항관리자 본인’이 안전운항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권한과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는 한국해운조합이 아닌 운항관리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인 전정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원심이 피고인 전정윤의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기 때문에 이를 모두 파기하고,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전정윤의 형을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하였다.

3) 피고인 김한식, 김영봉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김한식

이 사건 항소심은 ① 피고인 김한식과 유사한 정도의 횡령, 배임 범행을 한 다른 계열회사 임원들에게는 제1심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② 횡령, 배임의 양형기준

권고형량이 징역 2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최종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2년 이상인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 김한식의 항소이유를 인용하였다.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 김한식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 김영봉

① 피고인 김영봉이 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선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고, 세월호 증·개축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② 청해진해운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고 화물 과다 적재 및 부실고박과 관련된 책임은 피고인 김한식, 안기현보다 가벼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김영봉에게 금고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소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였으나, 과실범의 공동 정범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하역작업을 담당한 우련통운 소속 피고인들에게 화물의 과적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는 한국해운조합이 아닌 운항관리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인 피고인 전정운의 업무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하였고, 청해진해운의 상무이사인 피고인 김영봉의 책임을 완화하여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김영봉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5

**이 사건 대법원 판결⁵⁾의 주요 내용
: 피고인 전정윤에 대한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은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이 해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① 한국해운조합으로 하여금 운항관리자를 선임하고 각 지부 운항관리실에 배치하여 구체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관련 규정상 한국해운조합의 사업 중 하나로 규정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사업’에는 적어도 운항관리자 및 운항관리실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근거로, 한국해운조합 역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국해운조합은 그 자신의 업무로 운항관리자를 감독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 항소심이 안전점검보고서를 확인하고 여객선 방문결과 서류를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는 업무가 오로지 피고인 전정윤의 업무일 뿐 한국해운조합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아 위계로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타인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전정윤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였다.

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703 판결

6 이 사건 판결의 의의 및 한계

가. 청해진해운 사건 판결의 의의

이 사건 판결은 세월호가 침몰됨으로써 304명의 승객이 사망하고, 152명의 사람들이 상해를 입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 또한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세월호는 불법 증·개축, 과적 및 부실고박 등의 사유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험한 여객선이었음에도 청해진해운의 간부들은 여러 차례 지적된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채 매출증대를 위하여 화물 과적 및 부실고박을 조장하였다는 점을 양형이유에서 고려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청해진해운이 이준석 선장 등 나이 많고 무능력한 선원들을 채용한 뒤 훈련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여,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탈출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이 위험한 선박인 세월호에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채 운항하는 것을 가능케 한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나. 청해진해운 사건 판결의 한계

형벌의 최후수단성에 비추어 볼 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항소심의 결론은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 참사가 그러하듯 세월호 침몰의 원인 역시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이 이윤과 효율을 앞세우며 쫓겨이 쌓아온 구조적 문제가 그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 더욱이 재난은 단순히 불운한 사고나 불행한 우연이 아니다. 이른바 ‘하인리히 법칙’과 같이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와 관련한 작은 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러한 경고성 전조를 간과함으로써 우연한 사고는 거대한 재난이 되어 돌아오고, 사고를 재난으로 만드는 요인은 대부분 수많은 사회적인 원인 및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재난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 자체로 사회적인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청해진해운의 임원 및 우련통운의 하역업무 담당자인 피고인들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것은 형벌의 최후수단성,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결코 과도하지 않았다. 청해진해운의 간부들은 여러 차례 지적된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채 매출증대를 위하여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을 조장하였고, 우련통운 소속 피고인들 역시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화물과적과 부실고박을 만연히 자행함으로써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 재난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 역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관한 판결에서,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각 단계에서의 과실 그것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량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 및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과실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결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영봉의 화물 과다 적재 및 부실고박과 관련한 책임이 피고인 김한식, 안기현 등보다 가볍다거나, 피고인 문기한의 피고인 이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간부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서 결과발생에 대한 단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논리는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엄벌주의에 찬동하는 것이 아니다. 재난 참사로 인해 존엄을 훼손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특히, 대형 참사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 즉 세월호 참사 가족들에게 수학여행을 떠난 자녀들이 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인지, 왜 세월호에 생명과 안전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등의 진상을 알려주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고립과 정신적 트라우마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참사의 연속’이라는 사회적 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는 점에서, 끝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책임을 경감해 준 이 사건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1 재판결과

순 번	성명	직위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1심	2심	3심	1심	2심	3심	1심	2심	3심	1심	2심	3심
1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유죄			유죄			유죄			유죄		
2	김영봉 ⁶⁾	청해진해운 상무이사	유죄			유죄			유죄			유죄		
3	안기현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유죄			유죄			유죄			유죄		
4	남호만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유죄			유죄			유죄			유죄		
5	김정수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유죄			유죄			유죄			유죄		
6	박희석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유죄			유죄			유죄			유죄		
7	신보식	세월호 선장	유죄						유죄			무죄		
8	문기한	우련통운 본부장	유죄	무죄		유죄	무죄		유죄	무죄		X		
9	이준수 ⁷⁾	우련통운 현장팀장	유죄			유죄			유죄					
10	김주성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X			X			X			X		
11	전정윤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인												

6)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형

7) 1심에서는 화물과적, 부실고박에 대한 업무상과실이 모두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부실고박에 대한 업무상과실만 인정. 화물과적에 대한 업무상과실은 불인정

8) 유죄취지 파기환송

업무방해			특경법(업횡)			특경법(업배)			배임수재			최종 형량
1심	2심	3심	1심	2심	3심	1심	2심	3심	1심	2심	3심	
			유죄 (특경법 무죄)			유죄 (특경법 무죄)						징역 7년, 벌금 200만 원
												금고 3년, 벌금 200만 원
			유죄(형법상 업횡으로 기소)						유죄			징역 6년, 벌금 200만 원, 5,570만 원 추징
												금고 4년, 벌금 200만 원
												금고 3년, 벌금 200만 원
												금고 2년 6월,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4년)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무죄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무죄												무죄
유죄	무죄	파기 ⁸⁾										징역 3년

2

세월호 선원들의 구조책임과 관련한 살인,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 등에 대한 판결



세월호 선원들의 구조책임과 관련한 살인,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등에 대한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노490판결
대법원 2015도6809판결

문은영 변호사

1 사건의 등장인물⁹⁾

이준석(승무경력 27년 9월)은 2006. 11. 청해진해운에 입사하여 2013년 3월경 세월호가 취항할 당시부터 선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년 8월경 정년 퇴직한 뒤에도 선장 신보식의 휴가기간에 대신 근무하였다. 선장은 선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여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운항관리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선원법 규정에 의하여 출항전 선박의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이 가능한지, 화물이 실려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징비, 인원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등 ‘출항 전 검사 의무’가 있고,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할 ‘직접지휘의무’, ‘재선의무’가 있다.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생겼을 때,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평소 비상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선원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항관리규정

9)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판결문 5~13쪽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상 선박의 좌초·퇴선 및 인명구조 등 비상상황 발생시에 선원의 승객구호의무를 지휘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강원식(승무경력 20년 5월)은 2012. 12. 청해진해운에 입사하여 1등 항해사로 근무하였다. 1등 항해사는 선장이 사망·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장의 직무를 대신 하고, 평상시에는 선장의 지휘에 따라 여객과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하는 자이다. 운항관리규정상 비상시 현장을 지휘하면서 우현 슈트¹⁰⁾를 투하하고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김영호(승무경력 2년 4개월)는 2014. 1. 청해진 해운에서 2등항해사로 근무하였다. 2등 항해사는 선장의 지휘에 따라 운항관리, 각종 항해장비, 통신기를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 한다. 비상시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좌현슈트와 구멍뗏목을 투하하며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박한결(승무경력 2년 1개월)은 2013. 12. 청해진해운에 입사하여 3등항해사로 근무하였다. 3등항해사는 평소 선장을 보좌하여 선원 교육훈련, 항해일지 등의 문서작성, 출항전 화물적재 및 하역시 힐링(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맞추며, 안전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출항시간, 흘수¹¹⁾ 수치 등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항해시 항해당직사관으로서 조타실에서 여객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운항 업무에 종사하였다. 운항관리 규정에 의해 비상시에는 승객구호를 지휘하는 선장을 보좌하고 항해일지 등 운항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통신기기로 조난신고, 구호요청을 하는 등 승객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준기(승무경력 13년 10월)는 2013. 11. 청해진해운에 입사하여 조타수로 근무했다. 조타수는 항해사의 지시에 따라 조타 업무를 담당하고 비상시에는 우현 구멍뗏목과

10) 사람이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들 때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11) 물에 떠 있는 선박의 밑바닥부터 수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사다리를 투하하고 승객을 유도하는 등 승객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정훈(승무경력 3년7월)은 2014. 4. 15. 입사하여 1등항해사로 승선하였고 2등항해사인 김영호가 휴가를 갈 경우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부여받아 운항관리, 각종 항해장비, 통신기기 점검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운항관리규정상 비상시에 1등항해사 강원식을 보조하여 현장을 지휘하며 우현 슈트를 투하하고 승객들을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박경남(승무경력 5년 9월)은 2013. 2. 청해진해운에 입사하여 조타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운항관리규정상 비상시 우현 구명뗏목을 투하하고 승객들이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오용석(승무경력 9년 11월)은 2013. 7. 청해진해운에 입사하여 조타수로 근무하였다. 운항관리규정상 비상시에는 좌현 구명뗏목을 투하하고 승객들이 구명뗏목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박기호(승무경력 24년 11월)는 2001. 9. 청해진해운에 입사한 뒤 2012. 11.부터 세월호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 기관장은 승선하여 기관부 선원을 지휘하며 선박의 엔진, 전기 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를 총괄하면서 출항 전에는 선박의 주기관 점검, 유류 적재 등을, 항해시에는 각종 설비의 운전 및 보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운항관리규정에 의해 비상시에는 기관사·조기수 등 기관부 선원이 승객 구호의무를 이행하도록 지휘하여야 한다.

손지태(승무경력 21년 3월)는 2013. 12. 청해진해운에 입사하여 1등기관사로 근무하였는데, 1등기관사는 승선하여 선장 지휘 하에 기관장을 보좌하여 주기관 엔진운전, 정비 및 기관 부속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운항관리규정에 의해 비상시에는 주기관을 담당하고 우현 슈트 및 구명뗏목을 투하하며 승객들이 구명뗏목을 통해 안전하게 퇴선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수진(승무경력 1년 4월)은 2013. 11.부터 세월호에 3등기관사로 승선하였고, 선장의 지휘에 따라 기관장을 보좌하고 엔진 및 발전기 등 기관장비의 운항 상태를 점검하고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시에는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조기수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함께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장을 보좌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영준(승무경력 23년 1월)은 2014. 4. 15. 청해진해운에 입사한 뒤 조기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조기장은 기관장이나 기관사의 지시를 받아 조기수를 지휘하면서 엔진 및 발전기 등 기관장비를 점검,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운항관리규정에 의해 비상시에는 익수자를 구조하고 우현 슈트 및 구명뗏목을 투하하고 승객들이 우현 슈트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영재(승무경력 28년 8월)은 2012. 12. 청해진해운에 입사하여 조기수로 근무하였는데, 조기수는 선장의 지휘에 따라 기관장, 기관사, 조기장의 지시를 받아 엔진 및 발전기 등 기관장비를 점검,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운항관리규정에 의해 비상시에는 좌현 슈트 및 구명뗏목을 투하하며 승객들이 좌현 슈트를 통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박성용(승무경력 27년 7월)은 2014. 1. 청해진해운에 입사하여 조기수로 근무하였는데, 선장의 지휘에 따라 기관장, 기관사, 조기장의 지시를 받아 엔진 및 발전기 등 기관장비를 점검,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운항관리규정에 의해 비상시에는 우현 비상사다리를 투하하고 승객들이 우현 비상사다리 등을 통해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김규찬(승무경력 10년 4월)은 2013. 11. 청해진해운에 입사하여 조기수로 근무하였는데,

선장의 지휘에 따라 기관장, 기관사, 조기장의 지시를 받아 엔진 및 발전기 등 기관장비를 점검,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운항관리규정에 의해 비상시에는 좌현 비상사다리를 투하하고 승객들이 좌현 비상사다리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건의 소개

세월호는 2014. 4. 15. 21:00 다수의 화물을 적재하고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 등 총 476명이 승선한 뒤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기 위해 출항하였다. 2014. 4. 16. 오전 7:30경부터 박한결이 당직항해사, 조준기가 당직조타수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 같은 날 8:48경 병풍도 근처 해상에서 박한결의 지시에 따라 조준기가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복원력을 상실한 세월호가 좌현으로 급격히 전도되기 시작하였고 선체는 빠른 속도로 기울어져 같은 날 10:17경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인지한 선장과 선원들은 신속히 승객들을 안전하게 퇴선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배가 전도되기 시작(08:48경)한 후 각자 탈출한 시각(박기호 등은 09:38경, 이준석 등은 09:46경)까지 승객 구조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다 먼저 탈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선내에 남아있던 승객 중 303명과 양O진이 익사하였고, 152명의 승객은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구조과정 및 사고 발생으로 상해를 입었다.

선장 이준석을 비롯한 선원 15명은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 등을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2015. 11. 판결이 선고된 후 형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선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세월호 사건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그와 함께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책임을 살펴 판단하였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과 2심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상이했고, 이는 선장 및 선원들의 책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1심과 2심(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동일함)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원인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로 인하여 각 선원들의 책임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재판부는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선원들의 책임을 제대로 판단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¹²⁾

가. 1심 법원은 세월호 침몰에 영향을 미친 원인을 어떻게 보았는가

1) 청해진해운의 선박에 대한 무리한 증·개축 공사로 인하여 복원성에 부정적 영향 발생

1심 법원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원인으로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선박 도입 직후 무리한 증·개축으로 인하여 복원성¹³⁾에 문제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다. 청해진해운은 2011. 3.경 일본의 1994년에 건조된 나미노우에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2. 10. 인천 지방해양항만청에 ‘세월호’로 수입등록하였다.

12) 이 내용은 1심, 2심, 3심의 판결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13) 복원성이라 함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제2조 제8호). 해양수산부 고시(선박복원성 기준)에 따르면, 6가지 복원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해진해운은 2012. 10.~ 2013. 2.경 세월호 선박에 전시실 등을 만들 목적으로 내부를 수리 및 증축공사¹⁴⁾를 하였고 공사완료후 완성복원성계산 결과 안전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총 1,077톤의 화물만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선급으로부터 승인을 받아¹⁵⁾ 만약 세월호가 승인받은 화물적재량을 초과할 경우 복원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카램프 철거시 선수 우현에 30톤 상당(철거 40톤, 밀폐 10톤)의 중량을 추가하고 좌현에 30톤 상당의 중량을 감축하지 않아 좌, 우 불균형이 발생하여 이는 복원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재판부는 파악하였다.

2) 사고 당시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세월호 선박의 구조상 문제로 인하여 위와 같이 최대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청해진해운은 사고 당일 2,142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하여 복원성자료에 기재된 적재 가능한 화물재량 최대치 1,077톤을 1,065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였다. 세월호는 적자를 면한다는 명목으로 화물을 초과하여 적재하기 위해 기준(평형수 1,694.8톤, 연료유 560.9톤, 청수 290.9톤)에 비해 평형수 761.2톤, 연료유 150.6톤, 청수 31.9톤 등 모두 1,375.8톤을 감축하여 평형수 761.2톤, 연료유 150.6톤, 청수 259톤만 적재한 후 평형수 등의 무게만큼 화물을 더 적재하였는데, 1등항해서 강원식은 평형수 등을 조정하여 화물을 더 적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적을 묵인하였으며, 선장 이준석은 이러한 과적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적 상태로 출항할 수 있었다.

14) 세월호 B데크의 선미 부분을 철거하고, A데크의 선미 2.8m, 갑판 5.6m, 천정 1.6m를 연장하여 생긴 공간을 두 개층으로 만들어 하층은 여객실로, 상층은 전시실 등으로 개조하고 선수 우현의 카램프(차량 진입문) 40톤 상당을 철거하였다(1심 판결문 14쪽).

15) 세월호는 공사후 완성복원성계산 결과에서 총톤수가 239톤이 증가하였고 경하중량(순수한 배의 무게)은 187톤 증가, 재화중량은 187톤 감소, 승선인원이 116명 증가하면서 무게중심이 51cm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되어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적재 가능 화물을 1,448톤 감소시키고, 대신 평형수를 1,324톤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 결국 총 1,077톤의 화물만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한국선급에서 승인한 세월호에 대한 경사시험에서는 세월호의 경하중량 및 무게중심 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선미 흡수 보정을 잘못하였고(선미부분을 +0.077m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0.077m로 잘못계산), 그 결과 완성복원성계산서에는 실제 경하중량보다 63톤이 과소평가되고 무게중심은 6센티미터 낮게 평가됨으로써 세월호의 복원성이 실제보다 좋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1심 판결문14~15쪽).

선박이 화물을 운송할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에 첨부된 차량적재도 및 화물고박장치도에 정해진 방법으로 적재하고 항해시 화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박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 청해진해운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 고박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하청 업체에게 ‘화물을 무조건 많이 적재하고, 컨테이너는 2단 컨테이너 상단을 로프로 둘러 묶는 방법으로만 고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선박에 화물이 제대로 고박되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는 1등항해사 강원식은 규정에 어긋난 고박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였다. 선장 이준석은 위와 같이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에 대하여 점검을 하지 않은 채 3등항해사 박한결에게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을 위임하였고, 박한결은 화물적재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은 채 안전점검보고서에 화물적재상태 등이 모두 ‘양호’하다고 기재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은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소속 운항관리자는 세월호의 화물적재상태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은 채 보고서를 결재하였다.

이와 같이 세월호에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등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세월호는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출항을 한 것이다.

3) 운항과실과 그로 인한 전복

1심 재판부는 2014. 4. 16. 사고 당일 선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직항해사인 3등항해사 박한결과 당직조타수 조준기의 운항과실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운항과실과 함께 앞서 언급한 원인들(①선박의 무리한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에 악영향 발생, ②화물과적과 고박불량)이 겹쳐 전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박한결은 사고 당일 07:30경부터 당직항해사로 근무하였는데 평소 세월호 선장 신보식으로부터 세월호의 복원성이 매우 약하므로 변침은 5도 이하로 나누어 해야한다는 교육을 받아 세월호의 복원성이 취약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상태였다. 당시 선장

이준석이 조타실에 없는 상태에서 맹골수도에 진입하기 약2~3마일 전에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 바꾸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한결은 세월호의 현재 침로를 레이더와 육안 등으로 정확하게 확인하며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타가 되도록 조타수를 지휘·감독하여야 했다.

또한 박한결과 함께 당직조타수로 근무한 조타수 조준기 역시 세월호의 복원성이 취약하다는 사실과 화물적재상태나 고박상태가 불량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평소 우현으로 조타를 할 경우 좌현으로 경사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조타 시 조심하여 소각도로 천천히 정확하게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박한결은 세월호가 같은 날 08:48경 병풍도 근처 해상에 이르자 침로 약 140도, 엔진최대 출력을 유지한 채 145도 방향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면서 주변 수역의 조류 특성 및 변화에 주의하여 조준기가 조타기를 안전하게 조작하는지 여부를 살피, 선수방향이 지나치게 빨리 회전하는 경우 곧바로 정침명령을 하여 대각도로 조타기를 조작하지 않도록 지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준기가 어느 방향으로 몇 도 타각을 하는지, 세월호가 선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곧바로 확인 및 시정하지 못하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조준기가 박한결의 지시에 따라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원하는 대로 변침이 이루어지지 않자 당황하여 임의로 조타기를 우현 측으로 대각도로 돌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선수가 급속도로 우회두하면서 선체가 좌현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졌다고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설명한대로 과적된 상태로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좌현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그 영향으로 세월호는 좌현 측으로 더욱 기울게 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결국 좌현으로 약 30도 전도되었고, 09:34경 약 52도, 09:46경 약 61도, 10:09경 약 73도, 10:10경 약 77도로 기울어지다가 10:17경 108.1도로 전복되었다.

4) 세월호가 기울게 된 원인에 대한 판단

1심 법원은 세월호가 기울게 된 것은 조타수 조준기가 조타기를 우현방향 대각도로 조작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1심 법원은 세월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신호의 송수신기록¹⁶⁾을 사고 당시 세월호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핵심 근거 자료로 삼았다¹⁷⁾.

재판부는 조준기가 08:48경 박현결의 지시에 따라 140도에서 145도로 우현변침을 시도한 것을 인정하였다. 세월호 사고 당시 AIS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의 선수방위각이 08:46:22경부터 08:48:38경까지 140도 방향을 2분 16초 이상 유지한 것이 확인되고 세월호 예정항로에 의하면 맹골수도를 통과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병풍도 앞 지점까지 130도에서 145도 방향으로 변침하는 구간으로 변침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박한결이 조준기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를 보거나 들은 다른 선원들의 진술을 근거하여 사실로 인정하였다.

1심 법원은 여러 가지 근거를 이유로 조타기 고장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우회두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다. 세월호 사고원인을 조사한 합동수사본부 자문단의 단장은 법정에서 세월호의 AIS 기록상 세월호 선체 움직임의 특이점은 없고 항적 자료상 좌현으로 조타한 흔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고 지점 해역의 수심(30m 이상)은 항해의 장애요소가

16) AIS는 주변 선박과의 충돌예방 또는 해상통관제 등의 목적으로 자선(自船)의 위치, 침로와 속도 등의 정보를 외부에 알려 주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각 선박에서 발신한 정보 신호를 인근의 각 기지국에서 수신하여 저장한다.

17) 1심 법원은 AIS 신호에 담긴 선박의 위치, 침로, 속도 등의 정보는 실시간 송수신 된 정보로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고 판단 하였다. 비록 사고 당일 세월호의 항적자료 중 일부 구간의 정보가 소실되고 일부 오류가 발견되나 이러한 오류는 송수신 또는 저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세월호의 AIS 자료가 제3자의 의도적인 편집이나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그 정확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당시 재판부도 AIS자료에서 세월호의 선수방위각이 08:49:40경 2초만에 29도가 증가하고, 08:49:43경 2초만에 22도가 감소하는 등 세월호가 실제로 움직인 상황과 다른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AIS 신호정보의 송수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는 양상이 다르고 같은 시간대에 GPS로 측정된 위치는 큰 중요없이 선회권 바깥으로 약간 밀린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수치가 발생한 원인은 세월호에 설치된 자이로컴퍼스가 순간적인 대각도 경사나 화물이동으로 인한 충격으로 세차운동을 일으켰거나 자이로 컴퍼스의 선수방위가 AIS로 입력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등 조타에 의하지 않은 다른 원인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1심 판결문 45~46쪽).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되었을 때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세월호 수면 아랫부분에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공이나 외부 물체와 충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설시하였다. 사고 당일 조준기보다 먼저 조타했던 조타수들은 당시 조타기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당일 AIS 자료에도 세월호가 사고 지점까지 항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변칙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준기가 조타기의 휠을 조작하더라도 수면 아래의 러더¹⁸⁾가 움직이지 않고 우현방향으로 고정되는 현상에 의하여 우회두 하였을 가능성도 가정하였으나 당시 촬영된 동영상 자료와 조준기의 진술을 살펴볼 때 세월호가 기울 당시 러더가 움직이지 않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¹⁹⁾.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세월호가 사고 지점에서 우회두를 계속한 것은 조타수 조준기의 조타기 조작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세월호의 조타기 고장, 외부 물체와의 충돌 등 다른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준기가 사고 당시 조타기를 대각도로 조타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대각도 조타가 세월호 전복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시뮬레이션 결과²⁰⁾ 선수각의 경우 초기는 우현 15도, 후기는 우현 20도의 궤적과 유사한 경향을 얻어 실제 조타시 지시받은 각도보다 크게 조타가 이루어졌을 것이란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서울대학교

18) 러더(Rudder)란 선박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장치를 의미하는데, 세월호의 경우 프로펠러는 2개이고 러더는 양 프로펠러 사이에 1개가 설치되어 있다.

19) 사고 당일 전남201호에서 촬영한 동영상의 10:22경 부분을 보면 러더가 미집(midship)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조준기는 세월호가 전복된 후 확인되는 러더의 상태가 자신이 우현으로 조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준기는 사고 당시 좌현으로부터 15도까지 타기를 돌렸고 그 후로 조타기 휠을 만지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세월호의 러더가 미집인 상태에 부합하지 않고, 세월호가 기울기 전에도 러더가 미집인 상태를 유지하였다면 세월호가 AIS 자료에서 확인되는 항적으로 그리며 우선회하였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세월호가 기울 당시 러더가 움직이지 않은 현상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1심 판결문 48쪽).

20) KRISO는 사고 당시의 세월호의 모형, 적하상태, 조종성능, 해역, 항행환경을 모델링하여 조타 및 선박의 경사에 의한 화물의 쓸림, 침수 등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였다. 이를 기초로 우현 5, 10, 15, 20, 25도를 각 적용하였을 때의 궤적과 세월호의 AIS 항적자료상 궤적으로 비교한 결과 선수각이 초기 우현 15도, 후기 우현 20도의 궤적과 유사한 경향을 얻은 것이다(1심 판결문 49쪽).

선박해양성능고도화연구사업단(서울대)의 시뮬레이션 결과 세월호의 항적과 유사한 항적으로 나타내는 다양한 경우를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실험 결과와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조준기가 5도 변침을 시도하다가 우선회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하자 당황하여 좌현 방향으로 타를 쓰려고 하였으나 자이로컴퍼스의 회전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착각하여 우현 방향으로 타를 더 크게 썼거나 미집을 하기 위해 타를 반대로 쓰던 중에 박한결의 ‘반대로요’라는 말을 듣고 착각하여 다시 우현으로 대각도의 타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소결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세월호 선박의 무리한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악화, 화물과적 및 고박이 불량한 상태에서 사고 당일 항해사와 조타수의 조타 실수로 인한 급변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월호가 급격히 복원력을 상실하면서 전도되어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였다. 1심 법원은 특히 세월호가 침몰한 결정적 원인을 조타기를 우현 대각도로 돌리는 바람에 세월호의 선수가 급속도로 우회두하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어졌다고 보아 조타수 조준기가 타기를 임의로 사용하고 당직 항해사 박한결의 대각도 변침에 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있다고 보았다.

나. 항소심 법원(대법원)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달리 본 내용

항소심 법원(대법원 동일)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 내용 중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 세월호의 전복 원인에 대하여 사고 당시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하여 달리 판단하였다.

1) 조준기의 대각도 타각 행위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의 문제점 지적

항소심 법원은 박한결이 조준기에게 140도에서 145도 변침을 지시하고 이에 조준기가 지시에 따라 우현 5도 변침을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선수가 급격하게 우선회한 원인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1심에서 판단한 내용, 즉 ‘조준기가 5도 변침을 시도하다가 우선회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자 당황하여 좌현 방향으로 타를 쓰려고 하였으나 자이로컴퍼스의 회전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착각하여 우현 방향으로 타를 더 크게 썼거나 타를 반대로 쓰던 중에 박한결이 반대로라는 말을 듣고 착각하여 다시 우현으로 대각도의 타를 사용하였을 것’이란 내용은 추측에 의한 판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합동수사본부 자문단이 제출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조류의 영향 등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당시 145도 변침 지시를 받고 선회가 잘 되지 않자 최소 15 이상 각도로 조타하여 선수가 빠르게 우선회하였다고 추정하였으나, 사고지역에서 조류 때문에 조타가 잘 되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타 선박 선장의 법정 진술과 당시 조류 영향이 세월호와 같은 큰 선박의 조향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KRISO 연구원의 법정 진술, 사고 당시 0.5 노트 조류 속도는 전체 항로에서 약한 편에 속하는 사실과 함께 당시 조준기가 변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타각을 15도까지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아 1심의 조타 과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세월호 선원들은 세월호의 복원성이 약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대각도로 조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2)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 등의 조타기의 비정상 작동 가능성 제기

항소심 법원은 판결 당시 세월호 침몰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타기의 비정상 작동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는 김영호가 검찰조사에서 “조준기가 ‘타가 쓴 것

보다 많이 돌았다거나 배가 확 넘어갔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 신정훈이 법정에서 “사고 발생 후 호텔에서 지낼 때 조준기로부터 ‘키를 돌렸더니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왼쪽으로 키를 돌렸는데 빠르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키를 왼쪽을 더 돌렸다’는 진술, 박기호가 “박한결이 변침 지시를 한 후 조준기가 ‘어 안돼!..어.. 안 돼!’, ‘조타기가 안돼요!’라고 소리쳤다”는 진술, 박한결이 “변침 지시 후 몇 초 지나지 않아 조준기가 갑자기 ‘어. 타가...’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조준기가 지시에 따라 140도에서 145도로 변침을 시도하던 중 자신이 사용한 조타기 타각보다 더 많은 각도의 타효가 발생하여 세월호가 급격하게 우선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현상을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 등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판단하였다.

노후한 선박의 경우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²¹⁾ 안에 있는 스푼(spool, 솔레노이드 밸브 안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장치)에 오일 찌꺼기인 슬러지가 끼는 경우 스푼이 고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스푼이 이동한 채로 고착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어 유압이 계속 작용함으로써 조타기 작동 여부에 관계없이 러더가 일정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 35도 전타 위치까지 가게 될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은 조준기가 140도에서 145도로 변침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조준기가 조타기를 다시 미집(midship)으로 놓거나 반대타를 사용하여도 러더에 유압이 계속 발생하여 러더가 우현 35도까지 돌아갈 수 있고 그 영향으로 세월호가 변침 과정에서 급격하게 우선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합동 수사본부 자문단의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사고 당일 08:49:13(세월호 선수 방위각 150도 시점)부터 08:49:40(세월호의 선수방위각 184도에서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변동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의 선회초기 세월호 AIS 자료에

21)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기신호의 변화에 따라 밸브를 열고 닫아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로서 조타유압장치에 설치되어 있다. 조타기에서 타를 돌린다는 것은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기적 신호를 주어 밸브를 열고 닫음으로써 유압을 발생시켜 그 유압으로 러더(Rudder)를 돌리는 것이다(2심 판결문 52쪽).

근거한 항적 그림이 세월호 건조 당시 우현 최대 타각 35도로 한 선회시험²²⁾에서의 항적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사고 당시 세월호에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에 의해 러더가 우현 35도까지 갔을 가능성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현상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검사는 조타실 상부에 설치된 타각지시기는 실제 러더의 각도를 나타내는데 선장 이준석은 당시 타각 지시기가 우현 15도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조준기도 타각지시기가 작동하였다고 진술한 점, 세월호 조타수들이 사고 당일 조타기가 고장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박한결은 사고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상대방이 타기가 고장이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라고 답변한 점, 합동수사본부 자문단장은 사고 당시 조타기 고장은 없었다고 법정 진술한 점, 사고 이후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세월호의 러더가 미집에 위치하고 있는데, 러더는 조타기에 의한 유압에 의해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러더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음에도 러더가 미집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점,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의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에서도 사고 당시 세월호의 조타설비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점을 근거로 사고 당시 세월호의 조타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당시 이준석이 있던 해조대 부근부터 조타실 정면 타각지시기까지 약 4미터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당시 이준석은 시력이 나쁜데도 안경을 쓰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준석의 진술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러더가 실제로 움직이는 이상 타각지시기는 그에 따라 작동하므로 타각지시기가 작동하였다고 하여도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본 점, 사고 이전 근무한 조타수들이 조타기가 고장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어도 사고 당시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박한결이 사고

22) 선박의 선회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최대 조타각인 타각 35도를 사용하여 360도 1회전 선회하면서 종방향 및 횡방향의 이동거리와 선회각속도, 총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는 시험이다(2심 판결문 53쪽)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조타기가 고장이냐는 상대방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였으나 이어서 “기계적 결함이나 선박 결함 같은 건 인양해 봐야 알거 같고”, “대각도 변침도 아니고”, “타수 아저씨가 타...타가...이러면서 타가 안 먹고 좌현으로 기울면서 우회두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볼 때 조타기의 비정상적으로 작동했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항소심 법원은 합동수사본부 자문단장(허O범)의 법정진술은 주로 정전에 의한 조타기 미작동 또는 오작동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진술한 것이고, 박한결 측 전문가 증인(정O진 OOOOO 컨설팅 대표)은 조타기에 전원이 끊겼다가 다시 들어오면 러더가 미집에 원위치한다는 법정진술을 하였고,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운 후 세월호의 전원이 끊겼다가 다시 들어온 사실이 있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이 발생하였더라도 세월호의 러더가 사고 이후 미집에 위치하고 있는 현상이 설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러더는 유압으로 작동시키지 않으면 러더가 스스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다시 검사는 조준기가 조타기를 다시 미집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조준기가 대각도로 조타기를 돌린 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검사가 다시 조타기를 미집에 원위치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 보고서는 사고 당시 타각지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는 조준기의 진술과 세월호 러더가 미집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세월호 조타설비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제가 다르다면 다른 결론이 가능하므로 조타설비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3) 프로펠러 비정상 작동 가능성

또한 항소심 법원은 사고 당시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더라도 엔진이상 등으로 좌현 쪽 프로펠러만 작동하고 우현 쪽 프로펠러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추진력의 차이로 세월호가 급격하게 우선회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4) 항소심 법원의 결론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조타기에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으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했거나 프로펠러가 오작동했을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당시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아 기계 고장 여부 등의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로 인하여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고 보았지만 비정상 작동 상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항소심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사고 원인을 모를 때에는 피고인들(조타 부분과 관계된 조준기와 박한결)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법원칙에 따라 이들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4

구조의무를 방기한 채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법원 판단²³⁾

가. 세월호 선원들의 구조의무 존재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08:52경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타실에 모인 후 08:55경 제주VTS에 구조요청을 할 정도로 배가 곧 침몰할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즉시 선내에 있는 승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할 의무가 있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은 승객들의 퇴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즉시 퇴선을 명령하고 선원들은 신속히 담당 구역으로 가 승객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퇴선시켜야 했다. 선장, 항해사 등은 제대로 연락받지 못한 승객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객실 및 선원 선실을 수색하여야 한다.

23) 1심, 2심, 3심 판결문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수난구조법,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등에 따라 인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장인 이준석의 지휘에 따라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방법에 대한 안내 방송을 하고, 담당구역의 여객 대피 안내 등 맡은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준석은 선장으로서 임명구조 및 퇴선 등 구조조치를 총괄 지휘하면서 승객들을 구조가 쉬운 갑판 등에 대피시키고 안전한 퇴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피명령과 퇴선명령을 하고 안내방송, 승객유도, 선원들의 담당구역 배치, 구명뗏목과 슈트 등의 투하 지시 등 구조 조치를 취하고 선원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구조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 승객구조 임무 수행시 선원별 구조 담당은 다음과 같다.

선원	담당업무	선원	담당업무
이준석 (선장)	선원 전체 지휘	박기호 (기관장)	기관부 선원들이 승객구조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휘
강원식 (1등항해사) 신정훈 (1등항해사)	선장보좌 우현슈트 투하	손지태 (1등기관사)	우현슈트, 구명뗏목 투하
김영호 (2등항해사)	선장보좌 좌현슈트, 구명뗏목 투하	이수진 (3등기관사)	기관장 보좌 승객 퇴선유도
박한결 (3등항해사)	선장보좌, 운항관련기록 보존, 통신기기로 조난신고, 구조요청	전영준 (조기장)	우현슈트 구명뗏목 투하
박경남 (조타수)	우현 구명뗏목 투하	이영재 (조기수)	좌현슈트 투하
오용석 (조타수)	좌현 구명뗏목 투하	박성용 (조기수)	우현 비상사다리 투하
조준기 (조타수)	우현 구명뗏목, 사다리투하	김규찬 (조기수)	좌현 비상사다리 투하

위와 같이 선장 및 선원들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임무를 수행해야하나 선원들은 구조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해운업 운영자는 선박 및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법에 근거한 운항관리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담당자가 선박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선장은 이를 토대로 선박지원의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매 10일), 해상 인명 안전훈련 및 대응훈련(매 10일), 해양사고대응훈련 중 선체손상 대처훈련, 인명 사고시 행동요령(매 6개월), 비상조타훈련(매 3개월), 기름유출 대처훈련(매월) 등을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나 청해진해운과 선장은 평소 세월호 선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해양사고 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나. 세월호 선원들은 모두 세월호가 침몰할 것을 명확히 인식함

2014. 4. 16. 08:52경 세월호가 좌현으로 전도되어 해상에 멈추자 각자 선실에 있던 이준석(선장), 강원식(1등항해사), 김영호, 신정훈, 박경남, 오용석은 조타실에 모였다. 강원식은 세월호의 복원성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배가 좌현으로 많이 기울었으며, 배의 균형을 잡는 힐링펌프가 작동되지 않자 배가 곧 침몰할 것을 인식하고 같은날 08:55경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VTS)에 “본선...아...위험합니다. 지금 배 넘어가 있습니다”라며 구조요청을 하였다.

선장 이준석 및 선원들은 당시 선박이 침몰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에 비상상황에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퇴선시키기 위해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시행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선장 이준석은 퇴선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퇴선준비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08:58경 김영호에게 승객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지시하고 김영호는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였으나 방송시스템의 비상버튼을 누르지 않아 선내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영호는

세월호의 사무장 양대홍에게 무전기로 연락하여 세월호의 침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안내방송을 지시하고 양대홍은 세월호 매니저 강혜성에게 ‘선내 대기’ 안내방송 할 것을 지시하여 강혜성은 ‘선내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하여 승객들이 선박의 침몰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 대기하도록 만들었다.

박기호는 세월호가 전복될 것으로 판단하여 직통전화로 기관실에 전화를 걸어 기관실에 있던 기관부 선원들(이수진, 박성용, 이영재)에게 기관실에서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선장 이준석이 박기호에게 기관실로 내려가 보라는 지시에 따라 기관실로 내려가던 중 3층 복도까지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09:06경 기관실에서 올라온 기관부 선원들과 기관부 선실에서 나온 선원들은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준석, 강원식, 김영호 등 조타실에 있던 선원들은 09:13경 세월호 부근을 향해 중이던 둘라에이스호가 진도VTS의 구조요청을 받고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세월호에 다가오면서 “탈출을 시도하면 저희들이 구조하겠습니다”라는 교신내용을 들었고 이후 진도 VTS와의 교신을 통해서 경비정 및 인근 어선들도 구조를 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이들은 09:21경 및 09:23경 진도VTS 및 둘라에이스호로부터 “지금 둘라에이스가 지금 접근 중에 있는데 지금 그 ALONGSIDE가 할 수 없는 상태라 구조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다가 인명들이 탈출하면 인명구조 하겠습니다.”라는 교신을 들었고, 이때에 이미 사고 직후보다 배가 좀 더 좌현으로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명뗏목과 슈트 등 구조장비를 투하하고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구조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조타실에 있던 선원들은 09:23경 진도VTS로부터 “경비정 오는데 15분, 15분입니다.”, “방송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나가셔서 그 승객들한테 구명동의를 꼭 착용하고 옷을 두껍게 입으라고 최대한 많이 전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교신을 받았고, 09:24경 둘라에이스호 선장으로부터 “맨몸으로 하지 마시고 라이프링이라도 하여간 착용을 시켜서 탈출을 시키십시오. 빨리.”라는 교신을 받았고, 다시 09:25경 진도VTS로부터 “지금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 선장님께서, 세월호 선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셔갖고 지금 승객 탈출을 시킬지 최대한 지금 빨리 결정을 해 주십시오.”라는 교신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등 구조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 무렵 조타실에 있던 선장 이준석 등 선원들은 김영호가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 등을 통하여 3층 객실 안내데스크에 있던 박지영(세월호 매니저)와 강혜성으로부터 선내 대기 중인 승객들에 대한 대피 등의 추가 조치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승객들에 대한 대피 명령 등의 추가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박 침몰 상황에 따른 올바른 대처방법을 알지 못한 박지영과 강혜성은 계속하여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여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하도록 하였다.

조타실에 있던 선장 및 선원들은 09:26경 진도VTS로부터 “경비정이 10분 이내에 도착을 할 겁니다”라는 교신을, 09:27경 진도VTS로부터 “1분 후에 헬기가 도착할 예정입니다”는 교신을 받았음에도 승객들이 즉시 탈출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또한 조타실의 선원들은 09:34경 세월호가 사고 당시보다 더 많이 기울어져 세월호의 침수한계선(D데크 높이까지의 흘수)이 이미 수면에 잠기어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선내에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조타실에 있던 선장 및 선원들은 09:37경 진도VTS로부터의 교신에 응답하지 않은채 해경 경비정이 세월호에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승객들에 대한 대피 및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고, 승객들에 대한 구조방법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

다. 승객들에 대한 구조조치 없이 선원들의 탈출

세월호가 곧 전복될 것임을 인식한 선원들은 선내에서 승객구조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았다. 박기호 등 기관부 선원들은 3층 기관부원 객실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세월호가 곧 전복되기 때문에 승객들이 퇴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3층 복도에 모여 약 30여분 동안 해경 구명단정이 오기만을 기다리다 09:38경 해경 구명단정이 세월호의 좌현으로 접근하자 09:39경 자신이 선원임을 밝히지 않고 세월호를 퇴선하였다.

조타실에 있던 선원들은 09:39경 박기호 등 기관부 선원들이 퇴선하는 것과 전방에 경비정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승객과 다른 선원들을 그대로 둔채 자신들만 퇴선하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조타실 좌측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차례로 윈브릿지로 나간 후, 09:46경 세월호의 조타실 앞에 도착한 해경 123호 경비정에 자신들이 선장 또는 선원임을 밝히지 않고 세월호를 퇴선하였다.

세월호에서는 08:52경부터 매니저 강혜성이 선내방송으로 승객들에게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가 시작되었고 09:50경까지 수회에 걸쳐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만 계속되고 승객들에게 사고상황이나 대피요령 등에 대해서 안내방송이 되지 않았다.

승객 등은 08:58경 배가 기울고 엔진이 꺼진 사실 자체만으로도 스스로 갑판으로 나와서 침몰상황을 파악한 후 그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고 생존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고, 그 경우 적어도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 등은 위와 같은 선내 대기 명령으로 인하여 선실 내부 또는 복도 등에서 그대로 대기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가천대학교 초고층방재융합연구소에서 실시한 가상 대피 시나리오 및 탈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하면서, 세월호가 52.2도 기울 상태에서 선실에 있던 승객 등이 탈출을 시작하였다면 약 9분 28초안에 탈출을 완료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09:26경까지

승객 등이 탈출을 시작하였다면, 3, 4층의 출입구가 침수되기 전에 세월호를 탈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각주 대법원 판결문 18쪽)

세월호에서 타고 있던 피해자 최OO(남, 16세)가 08:52경 119에 최초로 신고하였고, 피해자 김OO(여, 16세)이 09:41경과 09:42경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박OO(여, 16세)이 10:17경까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승객들은 그 시간까지 선내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하면서 구조조치를 기다리는 등 생존해 있었다. 당시 피해자 유OO(남, 58세)와 같이 갑판으로 이동한 경우 해경에 의해 구조되었던 바, 선장 및 선원들이 제때 퇴선명령을 하고 구명뗏목을 투하하는 등 구조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승객들은 살아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선원들의 아무런 구조조치 없이 탈출하여 남아있던 승객 중 303명과 양O진은 익사하여 사망하였고, 152명이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상해를 입었다.

5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가

가.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비교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각 선원들의 지위와 책임의 크기, 개별 행위의 위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량을 결정하였다. 항소심에서 선장 이준석은 원심보다 그 형량이 증가하였다고 나머지 선원들은 모두 형량이 낮아졌다.²⁴⁾

24) 선원들에 대한 재판결과표 중 왼쪽 죄명은 기소된 죄명이다. 다만, 1심 당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죄명은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선 원	1심 형량	2심 형량(3심 동일)
이준석(선장)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징역 36년	무기징역
강원식(1등항해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위반)	징역 20년	징역 12년
김영호(2등항해사)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살인, 살인미수)	징역 15년	징역 7년
박한결(3등항해사)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징역 10년	징역 5년
조준기(조타수)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징역 10년	징역 5년
박기호(기관장)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살인, 살인미수)	징역 30년	징역 10년
신정훈(1등항해사)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징역 7년	징역 1년 6개월
박경남(조타수)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징역 5년	징역 2년
오용석(조타수)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징역 5년	징역 2년
손지태(1등기관사)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징역 5년	징역 3년
이수진(3등기관사)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징역 5년	징역 3년

이영재(조기수)	징역 5년	징역 3년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박성용(조기수)	징역 5년	징역 3년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김규찬(조기수)	징역 5년	징역 3년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선원들에 대한 재판결과>

나. 선장 이준석의 경우

1심 법원은 선장 이준석의 경우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살인, 살인미수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준석의 경우, 승객 등에 대한 퇴선지시를 하지 않았고, 당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승객 등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그들이 죽어도 어쩔수 없다고 용인하면서 퇴선한 것이므로 이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선장인 이준석의 경우 해사안전법과 선원법상의 권한과 의무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세월호 선장으로서 승객 구조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세월호가 침몰하여 비상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구조작업이나 승객 안전에 대한 본인의 역할을 포기한 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판단²⁵⁾하였다.

25) 판단의 근거 : ①이준석은 조타실에 대기하면서 선내 대기방송 지시 이외에는 승객 구조를 위한 적극적인 지휘를 전혀 하지 않음, ②강원식, 김영호 등이 진도VTS와 교신하면서 해경 구조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해경 구조대 도착 이후 승객 구조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③김영호가 진도VTS로부터 “지금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서 선장님께서, 세월호 선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셔갖고 지금 승객 탈출을 시킬지 최대한 지금 빨리 결정을 해 주십시오”라는 교신을 듣고 이준석에게 “어떻게 할까요”라고 수차례 물었으나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음. ④이준석은 27년 9개월의 (대부분 선장으로서) 승무경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사고 당시 정신이 없어서 승객들에 대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변명을 납득할 수 없음.

항소심 법원은 원심에서 선장 이준석이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준석이 퇴선할 무렵에도 선내에서는 퇴선방송 대신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²⁶⁾, 퇴선방송에 수반되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이준석의 퇴선방송이 있었다고 진술한 이준석, 강원식, 김영호, 조준기, 신정훈이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김영호의 09:37경 진도VTS와 교신 내용은 퇴선명령이 있었다는 근거로 볼 수 없어 퇴선방송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준석은 퇴선 당시 승객들이 선내에 남아 있던 상태에서 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뒤 자신이 선장임을 밝히지 않고 해경 등에게 승객들의 구조에 관하여 알리지 않는 등 승객 안전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을 보였다. 항소심 법원은 이준석이 선장으로 승객 구조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둔 채 퇴선하는 등의 부작위는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준석의 부작위로 인하여 승객들이 입은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는 살인의 작위행위에 의한 결과 발생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선장 이준석의 경우 원심과 달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이준석의 잘못된 행위는 유족들과 생존자들 나아가 사회 전체에 크나큰 공포와 슬픔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 이준석을 사회와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6) 설령 퇴선방송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되어도 응답이 없는 무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된 후 그 퇴선명령에 수반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퇴선방송에 불과하다(2심 판결문 23쪽)

다. 박한결과 조준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1심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한결과 조준기에게 조타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사고 당시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본 글의 3.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나. 항소심 법원(대법원)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달리 본 내용에서 설명함) 1심의 형량이 낮아졌다.

라. 박기호에 대한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박기호가 09:06경부터 09:38경에 3층 복도에서 다른 기관부 선원들과 모여 있던 중 자신의 바로 옆 복도에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상을 당한 김문익과 이묘희가 방치되어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09:39경 해경 구명단정에 올라타 이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은 그 무렵 익사하여 살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박기호가 피해자 김문익, 이묘희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은 박기호가 각 피해자들의 상태를 전해 들었고, 발견 당시에는 살아있을 수 있었으나 퇴선 무렵에 생존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사망한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만으로 박기호가 피해자들에게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였다.

마. 그 밖의 양형참작 사유 및 나머지 선원들의 양형 결정

항소심 법원은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 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승객 등을 침몰하는 세월호에 남겨두고 먼저 세월호를 탈출하여 이 사고로 304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상해를 입는 끔찍한 대참사가 발생하였으며, 이들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 또한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는바, 선장 및 선원들은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자들로 그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동시에 세월호 침몰이 무리한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약화, 과적 및 부실고박 등의 사유로 언제 침몰할지 모를 위험한 여객선이었고 이는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경비 절감을 위해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것, 매출 증대를 위해 과적을 조장하고 부실고박을 방치한 점, 세월호 선원들에게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승객들에 대한 구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중요한 원인이 된 점도 지적하였다. 아울러 청해진해운이 승객 및 선박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안전점검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 세월호 침몰 원인이 세월호 선박의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고 책임자인 선장 이준석의 형량은 높이고 나머지 선원들의 형량은 1심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판결하였다.

6 남은 과제

가.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평가되었는가

승객 구조를 방기하여 304명의 귀한 생명을 잃도록 하는데 핵심적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 대하여 1심에서 부인한 ‘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항소심에서 인정되고 그에 따라 형량이 가중된 것은 그나마 그 책임에 대한 평가가 바로 잡힌 것이라 본다.

그러나 박한결과 조준기의 경우 1심에서 인정된 업무상 과실이 항소심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의 다른 가능성(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현상 등)이 제기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합리적 의심으로 받아들여 결국 조타 업무를 담당한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는 적시에 세월호 침몰의 진실 규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정당한 판결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의 전반적인 형량이 낮아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청해진해운과 관계 행정기관의 규정 위반이나 부실 운영,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직후 ‘골든타임’에 승객들에 대한 제대로된 비상상황 전달 및 퇴선 유도 등의 구조활동을 하였다면 대형참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구조활동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선원들에 대하여 참사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비해 그 책임을 대폭 경감한 판결은 결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박한결의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3등항해사로서의 주어진 구조활동(조난신고, 구조신고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보기에겐 징역 5년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체 구조활동의 지휘·감독자인 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구조체계가 작동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선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선원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은

지울 수 없다. 항소심의 선장과 선원들의 형량을 비교할 때 구조체계가 작동하지 못한 책임의 무게를 선장에게만 무겁게 지도록 하고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가벼운 처벌을 한 항소심 판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엄중함 판결을 해야 함에도 판결의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본다. 구조체계를 이루는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을 증대하게 물었어야 하나 제대로 판결하지 못한 책임은 안타깝게 역사에 남아버렸다.

나. 세월호의 침몰 원인 규명의 필요성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은 사회적 부조리의 종합임을 우리 사회는 정확히 확인하였다.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그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유가족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발족을 요구했고 그 결과 어렵게 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과 행정관료들의 방해로 조사위원회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

세월호 선원에 대하여 판결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주어진 자료만으로 사고 원인을 판단하였다. 1심과 2심은 당시 제출된 자료를 나름의 합리적 추론과정을 통하여 판단하였으나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 채 가정과 추론에 기대 상태에서 판결이 이루어졌고 항소심은 결국 형사재판의 대 원칙을 앞세워 판결의 어려움을 피해나갔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조타를 담당했던 박한결과 조준기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그 정당성에 관한 의문은 계속 남게 되었다.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선행되었어야 할 세월호 선체조사를 위한 선체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사고 발생 약 3년 뒤인 2017. 3. 21.에서야 시행되고 2017. 3. 23. 사고발생 1073일만에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2017. 3. 28. 구성된 선체조사위원회는 2017. 7. 7. 활동을 개시하여 2018 8. 6. 활동기간을 종료하고 선체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선체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견으로 설명하였다²⁷⁾.

1) 김창준 위원장, 김영모 부위원장, 김철승 위원 의견(내인설)

가) 해양수산부 복원성 고시 기준 9개 중 6개를 준수하지 않은 세월호는 출항하지 말아야 했음에도 2014. 4. 15. 저녁 9시경 단원고 학생 등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화물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관구역의 수밀문과 맨홀을 열어 둔 채 무리하게 제주도를 향해 출항하였다.

나) 같은 달 16. 오전 8시 26분경 맹골수도로 진입하기 직전에 세월호는 자동조타에서 수동 조타로 변경되었고, 오전 8시 48분 57초경 세월호 2번 타기펌프의 파일럿 밸브에 부착된 슬레노이드 B밸브 고착 현상이 발생하였다(추정).

다) 슬레노이드 B밸브 고착 현상에 의하여 통제 불능상태로 된 타는 조타수가 의도한 5도 정도의 소각도 타각 이상을 가지는 우현으로 돌아갔고(AIS분석 결과, 8시 49분 13초부터 8시 49분 39초인 약 26초 동안에 선수방위가 34도 변하였다. 이 시간 동안 세월호의 선회율은 초당 평균 1.3도인 것을 감안하고, 해상 시운전 성적서와 비교하면

27)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제출보고'(요약보고서) 2018. 8. 6.작성에서 인용

타가 20도 이상 우현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타의 효과에 의하여 세월호는 최초 급선회를 하면서 나쁜 세월호의 복원성 때문에 20도 이상 좌현 방향으로 기우는 횡경사가 발생하였다.

라) 20도 이상 횡경사로 인하여 세월호에 실린 화물이 제대로 고박되지 않아서 D-데크, C-데크 순서로 좌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같은 날 8시 49분 40초경 급선회를 하면서 세월호가 45도 이상 기우는 횡경사를 발생시켰다.

마) 세월호가 45도 이상 기운 이후에 주기관 등이 정지되어 표류하던 중 C-갑판 좌현 창문에서 좌현 핀 안정기실로 열려 있던 수밀문과 맨홀을 통하여 해수가 침수되어 같은 날 10시 30분경 세월호의 앞부분만을 남겨 둔 채 침수·침몰 되어 참사가 발생하였다.

2) 권영빈 제1소위원장, 이동권 위원, 장범선 위원 의견(열린안)

가) 해양수산부 복원성 고시 기준 9개 중 3개를 준수하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복원성을 유지한 세월호는 2014. 4. 15. 저녁9시경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출항하였다. 화물고박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화물고박 상태는 부실하였고, 기관구역의 수밀문과 맨홀은 열어둔 상태였다.

나) 다음날인 16일 아침, 오전 8시 48분경 맹골수도를 빠져나온 세월호는 8시49분을 지나며 원인미상의 이유로 우선회와 함께 좌현 18도까지 횡경사를 일으켰고 49분 48호경 약 47초까지 기울면서 병풍도 전방에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다) 인양된 세월호에서 발견된 블랙박스 영상과 AIS 데이터는 세월호 선체는 8시49분 02~13초경 두세차례 요동이 있었으며 39초경 ‘기~익’소음이 발생한 이후 초당 3.13도의 좌현 횡경사와 초당 3~4도의 급우선회율로 분석되었으며, 이의 원인으로 솔레노이드 B밸브가 고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제주도로 가는데 인천행 타기펌프가

가동된 증거가 없다), 솔레노이드 B밸브가 고착되었더라도 타가 우현 전타로 돌아갔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솔레노이드밸브 고착 시 전타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라) 이상과 같이 급변침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세월호의 선수방위각의 변화양상과 세월호의 횡경사율 변화 양상은 단순 기기 이상으로 보기 어렵고 외력의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하였다.

마) 3차에 걸친 마린해양연구소에서 실시된 자유항주모형시험에서, 세월호의 좌현 편안정기에 외력 조건을 가한 결과, 외력과 선수방위각, 횡경사율의 변화양상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바) 직립된 세월호 선체 좌현 편안정기실과 그 위쪽 데크스토어 내부의 대변형과 외부의 충돌흔적은 외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직립된 세월호 선체의 정밀조사를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사) 또한 세월호 침몰의 가장 큰 특징인 과도한 선회율을 재현 및 검증하기 위해 자이로 컴퍼스와 타기시스템 등에 대해 합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기술적,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 침수 · 침몰 과정은 의견 차이 없음

세월호 침몰에 관한 원인 규명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한 사고 발생의 책임 규명이 현재에도 정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다 하지 못한 침몰 원인을 밝히는 과제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판결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26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노177판결,
대법원 2015도11610판결

오민애 변호사

1 사건의 등장인물²⁸⁾

김경일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00톤급 경비정인 123정의 정장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진도 연안 3구역 내의 해상경비, 해난구조, 해양오염방지 및 감시, 해상범죄조사, 기타 해양경찰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활동 및 해상대간첩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함께 선박의 침몰·침수·전복 등으로 인한 다수 인명 피해 등 재난 발생시 경찰공무원법, 수난구조법 등 관계 법령 및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대규모 인명 피해 선박사고 대응 매뉴얼 등 해양경찰청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수색 및 인명 구조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28)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6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판결문(이하 '판결문'이라고 합니다) 2쪽을 인용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이 원고는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한 것이고, 읽고 이해의 도움을 주기 위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하 필요한 경우에 판결문을 인용합니다.

2 사건의 소개

김경일은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123정의 정장이자, 현장지휘관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이다. 당시 김경일이 부담하는 의무가 무엇이었고, 김경일의 어떤 과실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망,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다. 특히 123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구체적인 시간대별로 주의 의무의 내용, 위반여부와 사상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김경일은 123정 승조원들에게 승객퇴선유도와 관련하여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함정일지에 퇴선 방송을 실시하고 승조원들의 선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123정 내에 이러한 함정일지를 비치하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다.²⁹⁾ 이 사건의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이후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들에서 참고,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9) 이 부분은 1, 2, 3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 원고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3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 참사 당일 시간대별 김경일의 업무상주의의무와 업무상과실

가. 참사 당일 123정의 행적

- 2014. 4. 14. 9:00경 4박 5일 항해예정으로 목포항을 출발
- 2014. 4. 16. 8:57경 진도 연안 3구역 내에서 해상경비 등 임무 수행 중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서거차도 근해 승선 인원 350명의 여객선이 침몰하였으니 즉시 이동하라” 지시를 받음
- 2014. 4. 16. 8:58경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병풍도 북방2마일, 승객 350명, 선명 세월호가 침몰하였으니 즉시이동하라” 재차 지시를 받음
- 2014. 4. 16. 9:16경 123정장 김경일은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로부터 해양경찰청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근거한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음
- 2014. 4. 16. 9:30경 세월호 1마일 앞 해상 도착
- 2014. 4. 16. 9:44경 세월호 선체에 접근, 구조활동 진행

나. 판결에서 확인한 세월호 침몰의 원인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수리 및 증축공사하여 세월호 선박 자체의 무게, 승선 인원이 증가하고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는 줄어들어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화물 적재량을 감소시켜야했는데, 당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화물 과적과 부실고박을 감행하고 이를 묵인하였다. 그리고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해상사고 훈련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세월호의 복원성³⁰⁾이 취약한 상태에서 2014. 4. 16. 8시 32분경 맹골수도에 진입할 당시 조타에 미숙한 당직 조타수가 조타를 맡고

30) 평형을 유지하다가 외부힘에 의해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려는 성질

있고 선장도 조타실에 없었기 때문에 조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했다. 그러나 당시 항해사는 레이더를 통해 침로를 확인하고 조타수에게 변침을 맡기면서, 조타를 잘못 하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급속히 기울었고, 과적과 부실고박으로 화물이 급격히 쏟아 세월호가 더욱 기울어 복원력이 상실되어 8시 52분경 전도되었다.

다. 김경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었는가

123정장이었던 김경일에게는 세월호 참사 당일 법령과 관련 매뉴얼 등에 의한 의무가 인정되었다. 법령에 의한 의무의 경우,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수난구호법 등 법령에 따라 해양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중대하고 절박하고, 경찰관으로서 이러한 구체적인 위협을 알거나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으며, 경찰관한의 행사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직무상 임무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관련 매뉴얼 등에 의하면, 당시 123정은 세월호 사고현장인 병풍도 북방 2마일 부근 해상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함정이었고, 사고현장에 첫번째로 도착한 함정이 자동으로 현장지휘관의 임무를 담당하게 되거나 현장지휘관이 별도로 임명될 수 있다. 123정은 참사 당일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배였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동시에 9시 16분경 현장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³¹⁾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 중인 구조세력에 대한 포괄적인

31) 법원은 9시 16분경 김경일이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되었다고 인정하였다.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지휘관(OSC)은 ① 조난선박으로부터 선박 위치, 승객 수, 희생자 수 등 정보 수집, ②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 장비의 지속적인 청취, ③ 조난 선박 퇴선여부, 구명조끼 착용여부 파악 등을 해야 한다. 김경일은 위와 같은 현장지휘관의 임무를 하지 않았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은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한 것 외에는 123정이 현장에 도착한 9시 30분경까지 현장지휘관에 대한 구조지휘와 관련하여 특별히 조치를 취한 것이 없었다. 이는 현장지휘관을 통해 구조임무를 부여한 임무조정관 등 구조본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과 연결되고, 현장지휘관에 대한 지휘와 현장지휘관으로부터의 상황 전파를 통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해경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김경일이 9시 16분경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이후 실제 현장지휘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였고 해경지휘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9시 16분경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사실만 인정되면서 이후 해경지휘부에 대한 재판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에도 영향을 미쳤다[해경지휘부의 구조책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분석 부분 참고].

지휘권한을 부여받아 상황 파악과 구조업무 수행을 위한 여러가지 의무를 부담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조난선박으로부터 기본적인 정보(위치, 선명, 승선원 수, 조난의 종류, 요구되는 지원형태, 희생자 수, 조난선박의 침로 및 속도, 선박의 형태, 통신수단 등)를 파악해야하고, ② 교신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전복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퇴선여부, 구명조끼 착용여부, 선원들의 위치 등을 즉시 확인하고, ③ 조난 선박과 교신을 유지하면서 안전조치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④ 현장으로 향해하면서 준비 요원을 배치하고 장비 점검 및 준비 후 결과보고를 받아야 하고, ⑤ 구조작업에 임하는 요원들이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사고 선박 위로 이동하여 생존자의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고 확인해야하고, ⑥ 전복선박 내에 생존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생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조작업을 전개하되, 전복선박이 침몰되지 않았을 때 구조작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라. 시간대별 상황과 김경일의 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시간대	업무상과실의 내용	인정여부
9시 30분 ~ 9시 44분	세월호와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음	업무상과실 인정 (1심은 업무상과실은 인정, 사상 피해와의 인과관계 불인정/ 2,3심에서 인정)
	123정 방송장비를 통한, 123정 승조원을 통한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음	업무상과실 인정 (1심에서는 불인정/ 2,3심에서 인정)
9시 44분 이후	123정 방송장비를 통한, 123정 승조원을 통한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음	업무상과실 인정
	세월호의 방송장비를 통한, 헬기 인명 구조사를 통한 퇴선조치를 하지 않음	업무상과실 불인정
9시 51분 이후	마이크 또는 육성을 통한 퇴선유도를 하지 않음	업무상과실 불인정

1) 9시 30분 123정이 세월호 1마일 앞 해상에 도착한 후 9시 44분 세월호에 접안 하기 전

123정이 세월호 1마일 앞 해상에 도착한 이후에도,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 대한 퇴선 및 구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9시 34경 세월호의 경사가 52도에 이르러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승객들에 대한 대피 내지 퇴선명령을 지체하면 선박에서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 대한 대피 및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23정 고무단정과 123정에 탑승하여 탈출했다.

9시 30분경 123정이 사고현장 1마일 앞 해상에 도착하였고 김경일은 직접 세월호 상황을 확인했는데, 승객들이 보이지 않아 450명에 이르는 승객 대부분이 선내에 있고 45~50도로 기울어 있어 침몰할 가능성이 높아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면 익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선장 및 선원들을 통해 퇴선유도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하였고, 세월호에 접근하여 고무단정을 하강시키고 구조작업을 진행하였다. 김경일은 구조작업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123정의 승조원들이 퇴선유도조치를 실행하도록 지휘했어야 하지만, ①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하며 퇴선상황 등을 파악하지 않았고, ② 123정의 방송 장비를 이용한 승객 퇴선유도를 이행하지 않았고, ③ 123정 승조원으로 하여금 갑판에서 승객에 대한 퇴선유도를 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1심에서 법원은 123정이 세월호 1마일 앞 해상에 도착한 9시 30분부터 세월호에 접안한 9시 44분 이전까지는 ① 현장지휘관으로서 도착 즉시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 교신하여 선내방송을 통해 승객들이 비상대피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지 않았고, ② 123정의 방송 장비를 이용한 승객퇴선유도를 이행하지 않았고, ③ 123정 승조원에게 갑판에서 승객에 대한 퇴선유도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김경일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3심에서는 위 ①, ②, ③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해양조난사고 구조활동에 투입된 해경인 김경일의 업무상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해경이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훈련내용,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서 정한 행동수칙, 구조환경 및 조건, 사고의 경위와 특성,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해경은 해양에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해의 방지를 임무로 하고, 해양조난사고의 경우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하여 훨씬 위험성이 높고 상황이 긴박하므로 육상 경찰이나 소방대원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① 김경일은 현장지휘관으로서 현장에 도착한 직후 세월호 갑판이나 해상에 승객이 전혀 나와있지 않은 사실을 목격하고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하고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② 세월호가 이미 45-50도 기울어져있는 것을 육안으로 목격해 세월호의 침몰가능성과 승객들이 퇴선하지 않으면 익사할 상황임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③ 현장에 도착하여 즉시 퇴선유도 조치를 했다면 이에 따라 퇴선할 수 있었고, ④ 당시 선내에 있던 승객들의 위치, 3, 4층의 출입문이 열려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대공마이크 등으로 퇴선방송을 하거나 승조원이 갑판에 올라 퇴선을 유도했다면 이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⑤ 9시 38-39분경 123정의 고무단정에서 일어선 승조원의 머리 높이가 세월호 3층 좌현 갑판 난간 윗부분과 일치해 승조원이 혼자 갑판에 오르는 것이 충분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조치들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해경으로서 이행해야할 기본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23정의 방송장치를 이용하거나 123정 승조원을 통해 갑판에서 퇴선유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었다.

다만 당시 헬기인명구조사들을 통해 퇴선유도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9시 44분 이후 헬기 인명구조사를 통해 승객퇴선유도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 9시 44분 세월호에 접안하여 구조업무를 진행한 이후

① 9시44분 이후 123정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점, ② 9시 44분경 이후 123정 승조원에 의한 세월호 갑판에서의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점은 업무상과실로 인정되었다. ① 123정이 세월호 선체에 접근해 퇴선방송을 실시했다면 승객들이 듣고 다른 승객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었으므로 9시 44분 이후에 123정 장비를 이용하여 퇴선 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고, ② 당시 123정 승조원은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세월호 갑판에 어려움 없이 올라갈 수 있었고 9시 44분경 김경일도 목포서 상황실에 승조원을 승선시켜 퇴선 유도하겠다는 보고를 하였는데 퇴선유도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아 조타실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 대한 구조와 동시에 할 수 있었으며 퇴선지시를 했을 경우 출입문 근처에 있던 승객들이 다른 승객들에게 전파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① 9시 44분 이후 세월호 방송장비를 이용한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점, ② 9시 44분경 이후 헬기 인명구조사에 의한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점, ③ 9시 51분경 이후 마이크 또는 육성을 이용한 퇴선 유도를 하지 않은 점은 업무상과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①의 경우 탈출한 선장, 선원들에게 물었더라도 이미 선장에 의한 퇴선방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방송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방송가능여부를 물었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답했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리고 ②의 경우에는 헬기의 인명 구조사들은 무전기 등이 없이 세월호로 내려간 상황에서 헬기 조종사와 연락할 수 없었고 김경일은 헬기의 구조상황이나 인명구조사의 역할 등을 충분히 알지 못했고 헬기에 대한 구조지휘 경험도 없었으며, 123정 승조원들을 통한 퇴선유도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헬기조종사 내지 인명구조사에 대한 퇴선유도 지시를 하지 않은 행위를 업무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③의 경우 피고인이 9시 51분경, 57분경, 58분경 서해청 상황실 등으로부터 세월호에 승선하거나 마이크 또는 육성을 통해 승객들을 안정시키고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9시 50분경 이미

갑판이 물에 잠겨있어 지시를 이행하기 어려웠고 대피지시를 한다고 해도 승객들이 객실 안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며, 지시를 받았을 당시 123정 승조원들이 세월호 선수에 접안해서 유리창을 깨고 승객들을 구조하였던 점 등에 비추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 김경일의 업무상과실과 사망,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1심 판결은 김경일이 9시 44분경 이후 구조작업을 계속하면서 123정 방송장비를 통한 승객퇴선유도, 123정 승조원을 통한 승객퇴선유도를 하지 않은 점을 업무상과실로 인정하면서, SP-1, 2, 3 선실을 배정받았고 사체가 SP-1, 2, 3 선실에서 발견된 피해자 56명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만 인정하였다.

그러나 2, 3심 판결에서는 김경일이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들과 교신하여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과실로 인정하고, 9시 30분경부터 9시 44분경을 지나 구조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123정 방송장비, 세월호 갑판에 승선한 승조원을 통해 승객퇴선유도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김경일의 퇴선유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모든 승객들의 대피와 퇴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당시 수온(12.6도), 국제 항공 및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의한 생존 예상 시간에 비추어보면 승객들이 퇴선하였더라도 상당시간 생존하였을 것을 인정하면서, 김경일의 위 과실과 사망, 상해 피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였다.

4

**김경일과 세월호 선장 및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해경지휘부는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세월호 선장은 과적, 부실고박을 묵인하고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선장의 이러한 업무상과실을 묵인했다. 운항관리자는 과적여부, 부실고박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월호를 퇴선했다. 그리고 김경일은 현장지휘관으로서 적절한 구조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공범(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1, 2, 3심 법원은 모두 ①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무리한 선체개조, 과적과 부실고박은 김경일과 무관하고, ② 세월호의 선장 및 선원들이 함께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의사나 공동의 목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김경일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이유에서는, 세월호 전복 사고와 피해자들의 사상에 관한 주된 책임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세월호 선장·선원들에게 있다는 점, 김경일을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한 후에도 해경 상황실, 서해청 상황실에서 통화를 하거나 보고를 요청하는 등 구조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했고, 해경들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해경 지휘부나 사고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김경일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성수대교와 같은 교량이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시공상의 감독, 그리고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각 단계에서의 과실만으로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설회사의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의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의 공범(공동정범)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판결).

위 사건을 세월호 참사에 비추어보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선박 자체가 안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운항시 과적, 부실고박이 없어야 하며, 운항과정에서 운항미숙이 없어야한다. 그리고 선박의 과적, 부실고박과 운항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선장 및 선원들의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어있고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는 것, 현장에 출동한 구조세력과 이를 지휘하는 구조세력이 구조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모두 제대로 진행될 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고로 인한 사상피해 발생에 대하여 각 관계자들이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선체, 운항, 구조 단계에서 각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야 사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범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김경일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것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 각 단계에서 의무 내지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5 현장 구조세력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김경일의 업무상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세월호의 규모에 비해 123정은 배의 크기도 작고 승조원의 수도 12명에 불과했다는 사정, 세월호 내에서 퇴선조치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믿었을 사정, 그리고 대형사고나 구조업무를 수행해본 적이 없다는 사정이 고려되었다.

김경일은 해경이었고,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123정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고 현장 관리자로 지정되었다. 이 판결에서 법원도 해양조난사고의 경우 육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하여 훨씬 위험성이 높고 상황이 긴박하므로 육상경찰이나 소방대원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였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세월호와 지속적인 교신을 유지하고 정보를 취합하며 이를 전파하여 구조업무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123정의 임무였다.

그러나 판결을 살펴보다도 김경일이 실제 퇴선조치를 하였는지, 승객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없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퇴선명령에 관한 권한이 세월호 선장에게 있다는 사정이 김경일, 해경지휘부가 퇴선유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대규모의 선박이 침몰하고 있었고, 450명의 승객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퇴선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 하거나,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은 책임은 김경일과 해경지휘부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사고현장에서 구조세력이 각자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다할 것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선장과 선원이 탈출하고 있었고 123정이 탈출한 이들을 구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으레 선장과 선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신뢰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해경지휘부에 대한 판결에서도 확인되는 것과 같이, 이러한 논리라면 현장구조세력이 자신의 생각이나 짐작으로 구조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마치며**

1심 판결과 달리 2, 3심 판결에서 김경일의 업무상과실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이에 따른 사상의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운항, 구조와 관련된 책임자들의 과실이 결합되어 희생자들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책임을 함께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로의 형량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필요한 구조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만연히 판단하고,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앞으로 현장구조세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책임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 판결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책임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 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292, 2014고합581(병합)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4노3310, 제3심 대법원 2016도1401

서성민 변호사

1 사건의 등장인물

황정민은 2012. 5. 1. 경부터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김영주는 2012. 8. 1. 경부터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이성배는 1995. 7. 16. 경부터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이주영은 2011. 6. 경 한국해운조합에 입사하여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에서 근무하다 2012. 6. 6. 경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로 발령받아 인천지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사람들은 2013. 3. 경 세월호가 출항을 개시할 때부터 세월호에 직접 승선하여 월례 점검, 특별 점검, 승선 지도, 운항관리 규정 이행상태 확인 등 각종 점검활동을 하면서 세월호의 안전 운항과 관련된 각종 점검 업무를 지도·감독해 왔다. (이하, ‘등장인물’을 각 ‘피고인’이라고 함)

2 사건소개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여객선의 출항에 앞서 해당 항로 기상상태, 기항지 여객동태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로 상황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고 그로부터 당해 선박에 대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실제로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여객, 화물의 적재상태 및 선박의 시설 등이 그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지를 직접 확인하고 그 밖에 여객선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선장에 대한 정보제공상황, 점검사항, 지적사항 등 현장업무를 핵심내용을 여객선 방문결과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확인란에 확인 서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등으로 하여금 출항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직무수행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채, (주)청해진 해운측으로부터 허위의 출항전 점검보고서만을 제출받고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출항전 점검보고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하여 세월호, 오하마나호를 출항하게 하고, 세월호, 오하마나호를 정상적으로 점검한 결과 세월호의 출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함으로써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항 통제, 과승·과적 단속, 운항관리 규정위반 단속,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등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출입항 통제, 과승·과적 단속, 운항관리 규정위반 단속,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등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한국해운조합의 연안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3 판결의 경과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기소(황정민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추가)하였다.

제1심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한 뒤, 피고인 황정민, 이성배, 이주영에 대하여는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김영주에 대하여는 벌금 1,600만원을 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혐의중 일부(청해진해운 선박 외의 선박과 관련한 혐의, 청해진해운 선박에 대한 출항전 점검 관련 혐의), 피고인 황정민의 별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였고, 제2심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 황정민, 이성배, 이주영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원, 피고인 김영주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상고하였고, 제3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4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인정 부분 -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해양경찰서장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 업무방해죄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인데,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는 자신의 업무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객선 운항관리업무가 자신들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해운법, 한국해운조합법, 해양경찰청 고시 및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운항관리실 운영기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한국해운조합의 사업 및 수행 업무, 운항관리자의 선임, 소속 및 업무의 감독·관리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항관리자가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해운조합에 소속된 직원으로써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선임되어 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해운조합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하되, 그 전문성을 존중하여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직무독립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는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라고 하였고, 설령 안전운항관리업무가 운항관리자들의 업무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해운조합의 업무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업무가 운항관리자들과 한국해운조합의 공동의 업무가 되어 피고인들과 같은 운항관리자들과의 관계에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해양경찰서장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각 성립되는 것인지 여부

피고인들은 그 동안의 업무관행에 따라 승선인원 및 화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출항전 점검보고서에 확인서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출항하는 선박에 방문하여 전산매표 시스템, 만재흡수선, 화물적재상태 등을 확인하였고,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기 위하여 출항 직후 해당 선박에서 무전을 통하여 알려주는 승선인원 및 화물적재량을 기재하였을 뿐, 위계를 한 사실이나 업무방해를 한 사실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해운조합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알고 묵인한 것이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은 이러한 피고인들의 업무처리 방식을 잘 알고 있음에도 묵인한 것이므로 오인, 착각 또는 부지에 빠지는 위계의 상대방이 없다는 주장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이라고 한 뒤, 이러한 법리와 피고인들의 운항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출항전 점검보고서에 확인서명을 한 행위로 인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출항전 점검보고서의 일부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확인란에 서명한 것을 넘어, 출항하는 여객선이 과승, 과적, 또는 고박불량으로 인하여 안전운항을 해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항전 점검보고서에 서명하고 해당 선박을 출항하

게 함으로써 안전운항관리의무를 부담하는 해양경찰청장 및 한국해운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선박에 대한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지,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이어야 하는데, 당시, 화물이 제대로 고박되어 있는지 여부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에 방문하여 화물의 고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의 출항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을 당시에도 계속하여 화물이 적재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에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한국해운조합이 과거 ‘출항전 안전점검 보고서 서면 확인시 점검란이 미기입된 경우 안전점검 보고소에 서명하지 말라’는 취지로 선장이 제출하는 안전점검 보고서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해운조합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하여 한국해운조합의 안전운항관리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는 오인, 부지 또는 착각에 빠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인정부분

1) 피고인 황정민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여부

검찰은 피고인 황정민이 운항관리자업무를 하면서 선장들의 확인 서명을 위조하였고, 무단결근하여 운항관리업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객선 방문 결과와 해상기상 정보 및 운항상황부에 피고인이 정산근무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으로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의 혐의로 각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 황정민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하여) 일부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피고인 황정민이 무단결근을 하여 업무를 태만히 한 것 이외에 이를 가지고 어떠한 위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황정민에게 해당 부분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청해진해운 선박 외의 선박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여부

검찰은 피고인들의 청해진해운 선박 외의 선박에 대한 행위에 관하여 세월호, 오하마나호에 대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출항전 점검보고서의 일부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알면서 확인란에 서명한 것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및 한국해운조합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청해진해운 선박 외의 선박에 대하여 각 선박에 과승, 과적, 또는 안전운항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들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부분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피고인들의 청해진해운 선박에 대한 출항전 점검 관련(과승·과적 관련부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여부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출항 예정인 세월호에 대한 출항전 점검을 함에 있어 사실은 선박에 화물이 총 3,909톤이 선적되어 위 선박이 승인받은 화물 적재량 (1,077톤)을 현저히 초과한 화물이 적재되었음에도 여객 정원 초과, 과적 여부를 확인하여 과적된 화물에 대한 하선을 명하고, 출항 전 점검 미이행, 과적 등의 운항관리규정 위반 사실을 즉시 해양경찰서장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주)청해진해운으로부터 허위의 출항전 점검

보고서만을 제출받은 다음 아무런 시정조치없이 출항전 점검보고서에 서명함으로써 세월호를 출항하게 하고, 출항이후 (주)청해진해운 측에서 보고하는 허위의 여객 인원과 일반화물량, 자동차 대수를 출항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직접 기재하여 마치 출항전 점검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놓고, 해양경찰서장이 관리하는 해상교통관리시스템상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시스템에 승선인원, 차량대수, 화물량이 허위 입력되게 하는 위계로서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세월호 및 오나마나호의 재화중량톤수, 화물수송내역상 화물의 무게가 용적톤과 중량톤으로 혼합되어 있어 실제로 선적되었던 화물의 중량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인천항에 화물 계근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만재흡수선이 물에 잠겼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 화물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세월호의 선원들도 선적된 화물의 양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세월호의 복원성계산서에 기재된 적재중량을 알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가 과적을 하였고, 이러한 과적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해당부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소결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청해진해운측으로부터 허위의 출항전 점검보고서만을 제출 받은 다음 아무런 확인, 시정조치 없이 확인자란에 서명하여 세월호, 오하마나호를 출항하게 한 것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해양경찰서장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혐의만을 인정하였다.

5 법원 판결의 문제점

법원은 피고인들의 청해진해운 선박 외의 선박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범죄행위와 마찬가지로의 행위 즉, 피고인들이 각 선박에 대하여 공란으로 된 출항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서명을 하는 행위를 하는 등 청해진해운 선박과 같은 행위를 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각 선박에 과승, 과적 또는 안전운항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만 하였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법령과 여러 규정에 따라 청해진해운 선박 외의 선박에 관하여 마찬가지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매우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해진해운 선박의 과승·과적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의 운항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한것인지, 즉, 현실적으로 과적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세월호 선원들도 선적된 화물의 양을 몰랐다는 등의 외부적 요인과 현실적인 조건상 피고인들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하여는 쉽게 무죄를 선고하여 면책을 한 것이다.

법원은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과도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화물 적재 상태 및 고박 상태가 불량하여 안전운항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책무를 태만히하여 출항전 점검보고서에 확인서명을 하는 등 위계로써 해양경찰청장의 공무집행 및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를 각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여객운송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피고인들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동안의 관행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법적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운항관리자들인 피고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물을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기존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피고인들을 선처하였는바, 이는 기존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법원이 어느정도는 용인하고 선처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

그리고 법원에 묻고 싶다.

잘못된 관행의 존재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이해하고 선처하기 위하여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피고인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된 관행에 의지 또는 그것을 선택했다면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죄를 물어야 할 이유가 아닌지.

단 한번이라도 피고인들만이라도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였으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고려를 해보았는지.

5

특조위 강제해산으로 인한 조사관들의 임금청구 사건 판결



특조위 강제해산으로 인한 조사관들의 임금청구 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78097 판결(확정)

서채완 변호사

1 사건의 등장인물

이 사건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들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산하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 등에 소속 조사관들이다.

이 사건에서 소의 상대방인 피고는 조사관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즉 대한민국이다.

2 사건소개

전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2014. 11. 19.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진상규명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제정된 세월호진상규명법

제3조³²⁾에 따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설치되었다.³³⁾

특조위는 세월호진상규명법 제7조³⁴⁾에 따라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간의 조사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특조위는 2015. 8. 4.에서야 직원을 채용하고 예산을 배정받아 구성을 완료한 뒤 조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5. 8. 4.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5. 5.경부터 특조위에게 활동종료를 통보하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2016. 6. 30. 특조위의 조사기간이 2015. 1. 1.부터 1년 6개월이라며,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2016. 6. 30.까지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정부는 2016. 7. 1.부터의 특조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특조위 조사관들에게도 2016. 7. 1.부터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³⁵⁾

정부는 파견공무원들을 복귀시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농성 등에 돌입하고 업무를 이어나갔다. 조사관들은 2016. 6. 30. 이후에도 조사업무, 3차 청문회(2016. 9. 1.~2.) 준비, 출장 등 위원회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6. 9. 30.경까지 근무했다.³⁶⁾

강제종료를 막기 위한 특조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특조위가 2016. 9. 30.까지밖에 존속할 수 없다는 강제해산 공문을 보냈고, 2016. 11. 11.에는 특조위 사무실을 2017. 1. 13.에는 특조위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2016. 10. 16. 특조위가 무력하게 활동을 종료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특조위가 2016. 6. 30.부터 2016. 9. 30.까지 존속했다는 점을 전제로,

3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3) 세월호진상규명법 제정과정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실, 「중간점검보고서」 2016. 1-4쪽 참조

34)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7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5) 판결문, 3쪽

36) 판결문, 5쪽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따른 특조위의 활동기간의 의미를 확인하고 정부가 2016. 6. 30.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킨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제기된 사건이다.

3 ‘세월호진상규명법이 규정하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의 의미

세월호진상규명법 제7조는 제1항에서 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되, 6개월의 활동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세월호진상규명법 제7조 제2항은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3개월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즉 특조위는 1년 6개월의 조사기간과 3개월의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기간을 합산한 총 1년 9개월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정부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을 세월호진상규명법이 시행된 2015. 1. 1.이라 주장했다. 정부는 세월호진상규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가 2015. 1. 1.에 시작하므로 세월호진상규명법 제7조 제1항의 특조위의 구성을 마친 날은 2015. 1. 1.이고, 따라서 특조위의 조사기간이 2016. 6. 30. 종료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³⁷⁾

그러나 정부의 위와 같은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의 입장은 특조위가 실질적으로 조사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무조건 2016. 6. 30. 조사활동을 종료해야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정부가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거나, 특조위에게 예산을 배정·지급하지 않으면서 1년 6개월을 지체하는 경우 특조위는 조사활동을 하지 못한 채 종료될 수밖에 없다.

37) 판결문, 4쪽

또한 정부의 입장은 과거의 유권해석 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에도 부당한 해석이었다. 법제처는 2014년 10월 이미 2010. 12. 13. 설치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존속기간에 관한 통일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된 때가 법률의 시행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개시한 날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³⁸⁾

세월호진상규명법이 시행된 이후 특조위 위원은 정부의 비협조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2015. 3. 9.에서야 구성이 완료되었다. 특조위에 두는 직원의 정원, 위원회의 조직 등을 정하는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은 2015. 5. 11.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특조위는 2015. 5. 27. 직원 채용을 공고하여 2015. 7. 27. 선발된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고, 특조위 예산은 2015. 8. 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위원회에 배정되었다.³⁹⁾ 즉 특조위는 2015. 8. 4.까지 조사활동을 할 수 기본적인 인적·물적 토대를 배정받지 못한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그 구성이 완료되었다고는 보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법원은 특조위의 구성을 마친 날을 인적·물적 토대가 구비된 2015. 8. 4.으로 보았다. 즉 특조위는 2017. 2. 3.까지 1년 6개월간의 조사기간을, 2017. 5. 3.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4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2015. 1. 1.이 아닌
2015. 8. 4.이다**

법원은 특조위가 강제로 종료된지 약 1년여가 지난 2017. 9. 8.에서야 늦었지만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2015. 8. 4.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였을 때, 세월호진상규명법 제7조 제1항에서

38) 법제처 2014. 10. 31.자 14-0551 회신 참조

39) 판결문, 3쪽

말하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은 정부의 주장처럼 2015. 1. 1.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원회의 인적·물적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 8. 4.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⁴⁰⁾

- ① 세월호진상규명법이 정한 소위원회, 사무처 위원장·부위원장, 직원, 법령에서 정한 직원 등 법령에서 정한 위 각 사항들이 구성되어야 위원회의 구성이 마쳐졌다고 할 수 있다.
- ② 세월호진상규명법 제7조 제1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세월호진상규명법 부칙 제3조가 임원의 임기를 법의 시행일로 보고 있더라도, 이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 ④ 위원들이 2015. 1. 1. 이후에 임용되었고 그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 1. 1.로 소급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1년또는 1년 6개월)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

법원은 또한 특조위 조사관들이 2016. 9. 30.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조사관들이 정부가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시점으로 주장하는 2016. 6. 30. 이후에도 조사업무, 3차 청문회(2016. 9. 1.~2.) 준비, 출장 등 위원회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6. 9. 30.경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2016. 9. 30.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2015. 8. 4.로부터 1년 6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이므로, 조사관들이 2016. 7. 1.부터 2016. 9. 30.까지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⁴¹⁾

40) 판결문, 5쪽

41) 판결문, 5-6쪽

5 법원의 판단이 가지는 의미

법원의 판단은 먼저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2016. 6. 30.종료시키고, 특조위의 모든 활동을 2016. 9. 30.종료시킨 정부의 조치가 세월호진상규명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즉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부가 세월호진상규명법이 보장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부당히 축소하여 활동을 조기에 종료시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나아가 법원의 판단은 특조위의 활동이 정부의 비협조로 인하여 2015. 8. 4.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역시 보여준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이 통과된 후 약 8개월이 지나서야 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것이고, 특조위는 2016. 6. 30.까지 조사기간을 약 10개월밖에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6 정부의 특조위 강제해산에 대한 진상과 책임은 어떻게 규명되고 있는가

이상과 같이 법원은 정부가 세월호진상규명법을 위반하여 특조위를 강제종료시킨(이하 “특조위 강제해산”)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정부의 특조위 강제해산은 누구에 의해, 어떠한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일까?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정부의 특조위 강제해산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 통과된 직후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5. 3. 30.경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관한 법제처 법령해석의뢰를 임의로 철회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편성·승인한 2016년 예산안은 특조위가 2016. 6. 30.종료됨을 전제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정황들은 결국 정부가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 직후 특조위를 조기에 종료시키려는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특조위의 강제

해산은 단순히 정부가 법령을 오인한 결과가 아니라 사전적이고 의도적으로 기획된 국가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있는지 약 4년이 다되어가는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특조위 강제해산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2018. 2.경 특조위 조사방해행위 책임자들을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당시 정부의 특조위 강제해산은 빠진 채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국민고소고발을 통해 2020년에 와서야 특조위의 강제해산에 대한 책임자들이 일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인데,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한 상황이라 진상 및 책임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7 특조위 강제해산에 대한 진상과 책임규명이 시급하다

정부의 특조위 강제해산은 단순히 특조위와 그 소속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가 아니다. 정부의 특조위 강제해산은 본질적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음으로써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을 요구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나아가 세월호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전 국민적 염원을 받아 제정된 세월호 진상규명법을 사실상 무력시키는 반헌법적 범죄이기도 하다.

혹자는 특조위 강제해산을 과거 이승만 정부시절 강제로 해산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 위원회의 역사가 되풀이된 것이라 평가한다. 만약 특조위 강제해산에 대한 진상 및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와 특조위의 역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조위가 강제로 해산된지 약 5년이 지나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특조위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조위 강제해산으로 인해 고통과 좌절을 느끼게 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회복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특조위 강제해산에 대한 진상 및 책임규명이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사건 판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사건 판결

1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고합30, 75(병합) 판결,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상고심 : 대법원 2020도18296 사건(진행중)

서채완 변호사

1 사건의 등장인물

김영석은 2013.경부터 2014. 8.경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 2014.8.경부터 2015. 10.경까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라 한다) 차관, 2015. 11.경부터 2017. 6.경까지 해수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이다.

윤학배는 2014. 8.경부터 2015. 10.경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 2015. 10.경부터 2017. 6.경까지 해수부 차관을 역임한 사람이다.

이병기는 2015. 3.경부터 2016. 5.경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안종범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사람이다.

조윤선은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사람이다.

2 사건소개

세월호참사 직후, 참사 책임자 중 하나인 정부가 진상 및 책임규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의 태도와 미온적인 정부의 참사 이후 후속 대처는 정부에 의한 온전한 진상 및 책임규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참사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줄 것과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 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고,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전 국민적 공감대로 대두되었다.

무려 350만명이 입법을 청원하는 등 전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2014. 11. 19.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진상규명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제정된 세월호진상규명법 제3조⁴²⁾에 따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설치되었다.⁴³⁾

세월호진상규명법이 2014년 11월 19일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는 정부의 인사상, 예산상 비협조로 인하여 2015. 8. 4.까지 업무를 개시하지 못했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은 2015. 5. 11.에서야 제정이 되었고, 직원 채용은 2015. 7. 27.에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특조위 예산도 2015년

4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4·16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3) 특별법 제정과정에 관해서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실, 「중간점검보고서」, 2016, 1-4쪽 참조

8월 4일에서야 지급·배정되었다.⁴⁴⁾

특조위는 우여곡절 끝에 2015. 8. 4. 업무를 개시할 수 있었지만, 정부로부터 갖은 방해를 받았다. 나아가 정부는 특조위가 2015. 1. 1. 구성되었다며 특조위의 활동이 2016. 6. 30. 종료되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6. 6. 30. 이후 특조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특조위에 종료를 통보하고 종료절차를 집행하여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켰다(이하 “특조위 강제해산조치”). 특조위는 정부의 부당한 특조위 강제해산조치에 반발하여 광화문 당식 농성을 하는 등 업무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결국 정부의 종료 절차 집행으로 인해 활동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특조위 강제해산이 위법하다는 점은 특조위가 종료된 이후인 2017. 9. 8.에서야 특조위 조사관들이 제기한 미지급임금청구 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⁴⁵⁾

한편 특조위가 강제해산되기 이전부터 청와대와 해양수산부로부터의 방해 및 비협조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가 있었다. 2015. 11. 19. 언론사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작성한 ‘대응방안’ 문건도 공개되었다. 그러나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는 특조위가 해산된 이후인 2017. 12.경에서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찰은 2018. 2.에서야 김영석, 이병기, 윤학배, 조운선, 안종범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위 2018. 2. 기소 이후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다. 1심 판결이 2019. 6.에, 항소심 판결이 2020. 12.에 이루어졌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사건은 청와대 관계자들과 해양수산부 등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자 한 사건이다.

44)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78097 판결 참조

45)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78097 판결 참조. 서울행정법원은 위 판결에서 “위원들이 2015. 1. 1. 이후에 임용되었고 그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 1. 1.로소급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1년 또는 1년 6개월)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법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은 피고의 주장처럼 2015. 1. 1.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원회의 인적·물적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 8. 4.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3 특조위에 대한 어떠한 조직적 방해행위가 이루어졌는가?

검찰이 기소한 특조위에 대한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의 방해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행위이다. 검찰은 피고인 김영석, 윤학배, 조운선이 공모하여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관련 정부대응 전략」,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직제·예산(안) 작성 및 설명」 등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대응 문건 작성,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 일괄복귀, 특조위 활동기간에 관한 불리한 법령해석을 막기 위한 법령심의 심의보류 요청 및 철회를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보았다.⁴⁶⁾

두 번째로는 특조위 동향 파악 및 보고를 통한 방해행위이다. 검찰은 피고인 김영석, 윤학배, 조운선이 공모하여 특조위의 동향을 파악하고 업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에게 바이버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특조위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특조위의 업무에 대해 일일 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보았다.⁴⁷⁾

세 번째로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정조사 안건 의결’ 방해행위이다. 검찰은 피고인 김영석, 안종범, 윤학배, 이병기가 공모하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의 청와대 행정조사 안건 의결을 반대하기 위한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보았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대통령에 대한 위원회조사 가능성 검토」, 「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당 추천위원 조사 참고자료」 등 청와대 행정조사 안건 의결을 반대하기 위한 대응 방안 문건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특별조사가 필요한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 성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보았다.⁴⁸⁾

46) 1심 판결문, 28-104쪽 참조

47) 1심 판결문, 104쪽-108쪽 참조

48) 1심 판결문, 108쪽-156쪽 참조

<검찰이 특정한 특조위 방해행위와 관련자>

방해행위	지시를 받은 사람	지시를 한 사람
1.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행위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문건 작성	강용석, 김남규, 연영진	김영석, 윤학배, 조윤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문건 작성		
법령해석 심의보류 요청 및 철회	김남규	김영석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팀 구성 및 운영 방안」작성 및 실행	강용석, 김남규, 연영진, 정재훈	김영석, 윤학배, 조윤선
파견공무원 일괄 복귀	파견공무원 등	
직제·예산(안) 작성 및 설명	김남규, 임현택	
2. 특조위 동향파악 및 보고를 통한 방해행위		
바이버 단체 채팅방을 통한 동향파악	연영진 등	김영석, 윤학배, 조윤선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통한 동향파악		
3. 위원회 ‘청와대 행정조사 안건 의결’ 방해 관련 범행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문건 작성	연영진, 윤두한, 전찬수	김영석, 안종범, 이병기, 윤학배
「대통령에 대한 위원회 조사 가능성 검토」문건 작성	연영진, 전찬수	
「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당추천위원 조찬 참고자료」문건 작성	윤두한, 전찬수	
「특별조사가 필요한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문건 작성	윤두한, 전찬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후술하듯이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다만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위 특조위 방해행위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즉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공무원들은 특조위의 설립과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작성했고, 독립성을 보장받는 특조위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였으며, 특조위를 비판하도록 하는 새누리당 성명서도 작성했다.

나아가 법원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특조위 방해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들도 인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전제사실에 따르면, 조운선은 특조위 여당추천위원들이 참여하는 2015.
1. 19. 플라자호텔 회의에서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윤학배, 연영진,
김남규에게 특조위에 대하여 일련의 대응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질책 및 지시를 하였다.⁴⁹⁾
윤학배는 2015. 1. 20.경 위 지시를 바탕으로 강용석, 김남규, 연영진 등에게 사항을 토대로
위원회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⁵⁰⁾

윤학배는 나아가 2015. 1. 25.경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채팅방을
만들고, 채팅방에 특조위 내부동향을 파악하여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나아가 2015. 1.
하순경에는 특조위 회의결과 등을 일일상황보고 형식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김영석은 2015. 2. 하순경 김남규에게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위원회 심의보류를 요청하라고 지시하였고, 2015. 3. 30.경에는 철회를 지시했다. 나아가
김영석은 2015. 1. 22.경 특조위 설립준비단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파견된 공무원들을
일괄복귀시켰다.⁵¹⁾

이병기는 2015. 10. 21. 윤학배에게 김영석과 함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이 특조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에서 대처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⁵²⁾ 이병기는
2015. 10. 30.경에도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고, 김영석과 윤학배는 이를 기초로 대응방안
및 여당 성명서 작성 등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한편 안종범은 윤학배 등으로부터
청와대 행적조사 대응문건 등을 보고받았다.⁵³⁾

49) 1심 판결문, 7쪽

50) 1심 판결문, 8쪽

51) 1심 판결문, 10쪽

52) 1심 판결문, 15쪽

53) 1심 판결문, 198쪽

4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였는가

1심 법원은 2019. 6. 25. 김영석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윤학배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병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안종범에게 무죄, 조운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대체로 공모관계를 밝혀낼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특정 문건의 작성은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아가 1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건의 기획 및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1심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방해행위	피고인	1심 판단
1.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행위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문건 작성	윤학배 조운선	유죄
	김영석	무죄 (문건의 다른 버전만 작성을 지시하였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문건 작성	김영석, 윤학배, 조운선	무죄 (문건 작성 관여에 대한 증거가 없음, 공모관계 없음)
법령해석 심의보류 요청 및 철회	김영석	유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팀 구성 및 운영 방안」작성 및 실행	김영석, 윤학배, 조운선	무죄 (직권의 남용이 아님, 공모관계 없음)

파견공무원 일괄 복귀	김영석	유죄
	윤학배, 조운선	무죄 (공모관계 없음)
직제·예산(안) 작성 및 설명	김영석, 윤학배, 조운선	유죄
2. 특조위 동향파악 및 보고를 통한 방해행위		
바이버 단체 채팅방을 통한 동향파악	윤학배	유죄
	김영석, 조운선	무죄 (공모관계 없음)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통한 동향파악	윤학배	유죄
	김영석, 조운선	무죄 (공모관계 없음)
3. 위원회 ‘청와대 행정조사 안건 의결’ 방해 관련 범행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문건 작성	김영석, 이병기, 윤학배	유죄
	안종범	무죄 (공모관계 없음)
「대통령에 대한 위원회 조사 가능성 검토」 문건 작성	김영석, 이병기, 윤학배, 안종범	무죄 (이병기, 안종범, 윤학배 공모관계 없음, 김영석 직권의 남용이 아님)
「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당추천위원 조찬 참고자료」 문건 작성	김영석, 이병기, 윤학배, 안종범	무죄 (의무없는 일 아님)
「특별조사가 필요한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 문건 작성	김영석, 이병기, 윤학배	유죄
	안종범	무죄 (공무관계 없음)
위 각 문건의 기획 및 실행 부분	공소기각	공소사실 불특정

한편 1심 법원의 판단은 대부분 항소심 법원에 의해 파기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모두 그대로 인정하였지만 김영석, 안종범, 이병기, 조윤선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윤학배에게 특조위 동향파악 및 보고를 통한 방해행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윤학배에게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하향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로 인정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지만 공무원들에게 보조행위 내지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거나,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1심 법원의 유죄 판단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1심 법원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방해행위	피고인	1심 판단	항소심 판단
1.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행위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윤학배 조윤선	유죄	무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님)
	김영석	무죄 (문건의 다른 버전만 작성을 지시하였음)	검사 항소기각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 문건 작성	김영석, 윤학배, 조윤선	무죄 (문건 작성 관여에 대한 증거가 없음, 공모관계 없음)	검사 항소기각
법령해석 심의보류 요청및 철회	김영석	유죄	무죄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님, 고의 없음)

1. 기존판결 비평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팀 구성 및 운영 방안」 작성 및 실행	김영석, 윤학배, 조윤선	무죄 (직권의 남용이 아님, 공모관계 없음)	검사 항소기각
파견공무원 일괄 복귀	김영석	유죄	무죄 (직권 남용의 고의가 없고, 권리행사를 방 해지 않았음)
	윤학배, 조윤선	무죄 (공모관계 없음)	검사 항소기각
직제-예산(안) 작성 및 설명	김영석, 윤학배, 조윤선	유죄	무죄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님, 고의 없음)

2. 특조위 동향파악 및 보고를 통한 방해행위

바이버 단체 채팅방을 통한 동향파악	윤학배	유죄	일부유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님)
	김영석, 조윤선	무죄 (공모관계 없음)	검사 항소기각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통한 동향파악	윤학배	유죄	일부유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님)
	김영석, 조윤선	무죄 (공모관계 없음)	검사 항소기각

3. 위원회 ‘청와대 행정조사 안전 의결’ 방해 관련 범행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김영석, 이병기, 윤학배	유죄	무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님)
	안중범	무죄 (공모관계 없음)	검사 항소기각

「대통령에 대한 위원회 조사 가능성 검토」 문건 작성	김영석, 이병기, 윤학배, 안종범	무죄 (이병기, 안종범, 윤학배 공모관계 없음, 김영석 직권의 남용이 아님)	검사 항소기각
「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당추천위원 조찬 참고자료」 문건 작성	김영석, 이병기, 윤학배, 안종범	무죄 (의무없는 일 아님)	검사항소기각
「특별조사가 필요한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문건 작성	김영석, 이병기, 윤학배	유죄	무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님)
	안종범	무죄 (공무관계 없음)	검사항소기각
위 각 문건의 기획 및 실행 부분	공소기각	공소사실 불특정	검사항소기각

한편 1심 법원은 파견공무원을 일괄복귀한 행위가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아 김영석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직권남용죄의 권리행사 방해 요건의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하며 결론을 달리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직권 남용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권리행사가 간접적으로 방해되었더라도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일괄복귀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⁵⁴⁾

54) 항소심 판결문, 39쪽

5

직권을 남용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한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권한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공무원들에게 문건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도, 공무원들의 행위가 보조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결국 권한자가 직권을 남용하여도 결국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는 직권남용죄를 매우 형식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권한자의 직권남용을 묵인·방조하는 논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지시에 일선 공무원들이 무조건 따르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항소심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인 권리행사방해의 의미를 부당히 축소하여 해석했다. 항소심 법원은 직권남용의 상대방과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상대방이 같아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결국 권한자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권리침해상황을 묵인하겠다는 논리로 부당하다. 직권남용에 따른 피해는 단순히 권한자와 지시를 받는 자와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령 민간인 사찰 지시와 같은 직권남용의 경우, 그 피해자는 사찰지시를 받는 공무원들이 아닌 시민이 된다. 즉 항소심 법원이 권리행사방해 요건을 부당히 축소하여 해석한 것은, 결국 권한자의 직권남용에 따른 무수한 피해자들의 권리침해를 처벌의 공백에 두겠다는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

또한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이 모두 공모관계의 인정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조위 방해행위와 같이 청와대 및 정부가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국가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가진다.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구체적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공모관계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범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검찰의 충분한 입증도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데, 과연 공모관계 입증을 위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한편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현행 처벌법규의 뚜렷한 한계도 충분히 고민되어야 한다. 세월호진상규명법상 특조위 활동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규정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있다.⁵⁵⁾ 하지만 세월호진상규명법상 업무방해죄는 폭행, 협박, 위계에 의한 직무수행 방해해만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국가 및 정부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법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처벌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⁵⁶⁾ 실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6 법원은 특조위 방해행위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특조위는 특별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특조위의 활동을 청와대 및 정부가 주도하여 방해하는 것은 특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의 유가족들은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풀어줘야 할 대내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유가족들의 의무는 대외적으로 침해당할 수 없는 권리의 성격을 갖는데, 법원은 이를 편의상 ‘신원권’이라 부르고 있다.⁵⁷⁾ 이러한 ‘신원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55)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벌칙) ①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6)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57) 서울고등법원 1993. 7. 2. 선고 89나50586 판결 참조

제3항⁵⁸⁾ 등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하는 보편적 인권에 해당한다.

이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의 유가족들은 위 신원권에 기초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국가는 위 유가족들의 권리에 대응하여 철저하게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청와대 및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권리인 신원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즉 청와대 및 정부의 특조위 방해행위는 위법행위를 넘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원의 판단에서 특조위 조사방해행위의 피해자인 세월호 유가족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부역한 강용석, 연영진, 김남규, 임현택 등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서 피해자로 취급되고 있다. 피고인들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피해자로서 가지는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는 재판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7

**특조위 방해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사건을 통해 청와대 및 정부의 특조위 방해행위의 실재가 일부 확인되기는 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았을 때 법원은 특조위 방해행위를 위한 문건의 작성이 범죄행위인지 여부만을 판단했다. 실제 청와대 및 정부가 기획, 실행한 특조위 방해행위에 대한 실질적

5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판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대응방안 문건이 어떻게 기획되었는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등은 여전히 그 진상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드러난 방해행위 외에 다른 특조위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규명되지 않은 특조위 방해행위는 다양하다. 보수단체 등을 통해 특조위 청문회 등을 방해한 행위, 여당위원들의 방해행위, 특조위 비공개 문건 유출, 위법한 시행령 제정, 예산 삭감 등 다양한 조사방해행위가 충분히 조사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미 법원의 판결로 그 위법성이 확인된 특조위 강제해산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고소고발을 통해 2020년에 와서야 현기환, 한정택, 조대환, 이병기 등 일부 책임자들만이 기소될 수 있었고, 해당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⁵⁹⁾

강제해산을 비롯한 특조위 방해행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사를 방해함으로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골든 타임’을 허비하게 만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나아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피해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국가범죄이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 특조위 방해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은 매우 미흡하고, 책임자 처벌도 부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러한 부당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사회적참사 조사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특조위 방해행위의 진상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두 번 다시 특조위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부 지시자뿐만 아니라 실제 특조위 방해행위에 조력한 공무원들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 사건

7

세월호참사 당시 최초보고 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죄 사건 판결



세월호참사 당시 최초보고 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죄 사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6, 서울고등법원 2019노1880

이정일 변호사

1 사건의 등장인물⁵⁹⁾

김기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 사무를 총괄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김기춘은 2013년 8월 5일경부터 2015년 2월 24일까지 재직했다.

김장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김장수는 2013년 3월 23일부터 2014년 5월 23일까지 재직했다. 김관진은 김장수를 이었다. 김관진은 2014년 6월 2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재직했다.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6 허위공문서작성 등 판결문(이하 '판결문'이라고 합니다) 제3쪽, 70쪽, 94쪽을 인용한 것입니다.

2 사건소개

세월호참사 발생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로 사고내용을 보고받은 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로 지시한 시간과 내용이 진실규명의 핵심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근하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물렀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지 못했다.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바람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비난이 고조되었다.⁶¹⁾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진실을 숨기려 했다. 이 사건은 최초의 보고시간과 지시시간을 숨기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자 한 사건이다.

3 무엇을 숨기려 했는가?

세월호는 2014년 4월 15일 저녁 9시경 제주도를 향해서 인천항을 출항했다. 승객과 승무원이 476명이 탔다. 4월 16일 오전 8시 32경 세월호는 전남 진도면 맹골수도에 진입했다. 세월호는 오전 08:49 왼쪽으로 30도 이상 기울었다. 승객 최**은 오전 08:52경 119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 세월호는 점차 더 기울어 09:47경 3층 왼쪽 갑판이 침수되었다. 계속하여 침수되면서 10:10경 77.9도로 선체가 기울면서 전복되기 시작했다. 완전히 전복되기 직전인 10:17경 승객 박**은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 후 세월호는 10:30경 뱃머리(선수부)만 남긴 채 침몰했다. 그 결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단원고 학생과 일반 승객을 포함하여 304명의 생명이 희생됐다.⁶²⁾

61) 판결문 제5쪽

62) 판결문 제3~4쪽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관저에 머물렀다. 그 날 오후 5:21경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들니까?”라고 물었다. 이 물음은 세월호참사 발생 직후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혀 세월호 침몰상황 보고를 듣지 못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세월호참사의 ‘골든타임’ 시간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이 아무것도 하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4월 23일경 청와대 전 대변인 민경욱을 통해 “청와대는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발언도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난에 기름을 부었다.

2014년 4월 17일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구성되었다. 감사원은 4월 29일 감사에 착수하였다.⁶³⁾ 수사는 구조책임과 관련해서 해경지휘부⁶⁴⁾와 청와대로 향할 수 있었다. 감사원 감사도 청와대를 향해 갈 수 있었다. 정치일정으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와 7월 30일 재보궐선거⁶⁵⁾가 예정되어 있었다. 국회에서는 2014년 7월 7일 전 청와대 업무 현황 보고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가 예정되었다. 7월 10일에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라고 한다)의 국정조사도 예정되었다. 국정감사 기간 중 2014년 10월 28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도 예정되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전 정부의 청와대는 정부의 초기대응 미흡,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 해태 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 했다. 그래야 책임을 면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도 잠재울 수 있었다⁶⁶⁾. 결국 숨기려고 한 핵심대상은 세월호참사 당일 10:17경 승객 박**의 마지막 메시지가 수신된 시점을 ‘골든타임’으로 보아 최초 보고 시간과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하나이고, 청와대가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이 나머지 하나였다.

63) 감사원은 2014년 5월 21일 감사원 사무총장 김**의 지시로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64)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2014년 5월 29일 수사보고서로 “해양경찰청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중앙구조본부, 진도 관제센터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선체에 진입하거나 방송장비들을 동원하여 객실 내에 있는 승객들로 하여금 선체 밖으로 퇴선,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 수사하기로 했다.

65) 15석 차지를 둘러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1석의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였다. 대표적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서울 동작구를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전 노원구 병 국회의원 고(故) 노회찬 후보 대결이었다.

66) 판결비평자의 의견임

4

최초 보고시간에 관하여 드러난 진실은 무엇인가?

가.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박근혜 전 청와대가 주장한 사실⁶⁷⁾

세월호참사 직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루어진 첫 서면보고가 10:00경이고, 대통령의 첫 지시는 10:15경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추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화로 직접 10:30경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다.⁶⁸⁾ 모두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그날 이것이 팩트입니다”라고 게시되었다. 김기춘은 국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상 질의답변을 검토하는 회의를 했고, “모른다”라는 말로 철저히 숨겼다. 국회는 그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대상이 아니었고, 감사원도 추상같은 실지 감사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⁶⁹⁾에서도 박근혜의 소송대리인도 종래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주장했다. 세월호참사가 벌어진 당일 최초로 보고된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내용에 대한 진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을까. 2017년 7월 14일 청와대 캐비닛에서 세월호 문건이 발견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된 후에 청와대는 서버를 무더기로 폐기했다. 두 달 동안 각종 문서를 파기했다.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나, 일부 문건이 어둠을 뚫고 일부의 진실을 비추었다.

67)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박근혜 전 청와대가 주장한 사실은 전 정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주장되었던 내용을 기초로 핵심을 정리한 것입니다.

68) 판결문 제45쪽

69) 헌법재판소 2017. 3. 10.자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나. 재판에서 드러난 진실은 무엇인가?⁷⁰⁾

최초 서면 보고시간이 10:20경이었다. 대통령의 최초 지시는 10:22경이었다. 최초 지시 내용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이었다. 모두 ‘골든타임’이라고 지칭했던 당일 10:15~17경보다 5분~7분가량 이후였다. 그동안 청와대의 입장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재판부가 최초 보고시간을 판단한 경위는 어떤가?

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보실 직원은 당일 09:19경 YTN 뉴스 속보로 세월호 사고 발생 소식을 접했다. 09:22경⁷¹⁾ 청와대 문자 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통해 전파됐다.

국가안보실 상황팀은 문자발송 후 최초 상황보고서 1보를 작성하기 시작했다⁷²⁾. 09:57경 신고시간, 선박 명칭, 탑승 인원, 구조지원 세력, 출항시간과 도착예정시간 등 09:57경까지 파악된 상황을 바탕으로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중(1보)’를 완성(이하 ‘상황보고서 1보’라고 한다)했다. 10:00경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상황보고서 1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가안보실 사무실에서 10:12경까지 정확한지를 확인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10:12경 위기관리센터장 신인호⁷³⁾에게 대통령에게 보내라는 지시했고, 신인호는 10:12~13경 위기관리센터에서 최초 상황보고서 1보를 출력 후 밀봉하여 전령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병에게 대통령 관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10:12~13경 위기관리센터에서 출발한 상황병은 관저 인수문까지 뛰어가 관저 내부 근무 경호관에게 상황보고서 1보를 전달했다. 이를 전달받은 관저

70) 판결문 제17쪽~22쪽

71)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상황팀 소속 행정관 전응식이었다.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09:19:35’ 위기관리센터 문자 메시지 발송시스템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고 있다. ‘09:19:35’경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려면 그보다 빠른 시각에 세월호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의 수사는 불충분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현재 계속 조사 진행 중이다.

72)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상황팀 소속 행정관 이태안이 최초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작성해서 상황팀장 김주영에게 보고했다.

73) 당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이었고, 계급은 육군 준장이었다.

내실 근무자는 대통령 침실 앞에 있는 탁자에 최초 상황보고서 1보를 올려두었다⁷⁴⁾. 대통령 관저 인수문까지 뛰어서 도착하는 시간은 약 6분 20초, 내실까지 올려놓기까지 최소 1분 이상이 걸릴 것을 고려하면 10:19~20경 위 탁자에 올려진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경위는 어떤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상황병이 관저로 출발한 직후 위민3관 인근 지하에 있는 위기관리센터로 내려가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로 사고내용을 보고하려 했으나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제2부속실 비서관 안봉근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지금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서(1보)가 올라갈 예정이니 대통령에게 보고 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했다. 10:12경 제2부속비서관실 행정관 이영선은 본관 동문을 나가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서 본관 정문 앞에서 정차했다. 안봉근을 차로 태우고 관저로 향했고, 관저에 도착한 후 내실로 들어간 안봉근은 대통령 침실 앞에서 수차례 “대통령님, 대통령님”이라고 불렀다. 대통령은 침실 밖으로 나왔고, 안봉근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급히 통화를 원합니다.”라고 보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했다. 대통령은 김장수에게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상황 팀장 김주영을 통해 10:25~26경 해경 상황실에 핫라인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파했다.

74) 관저 내실 근무자 김막업(여, 71세)은 평소 보고서 전달 방법과 같이 최초 상황보고서 1보를 대통령의 침실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러나, 최초 상황보고서 1보가 도착한 시각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봉근이 대통령 관저에 갔는지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5 진실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는 무엇을 하였는가?

가. 왜 감추려 했는가?

한 마디로 밝히려고 하는 측과 숨기려는 측의 숨 가쁜 대결 양상이었다. 일시적으로 숨기려는 측의 승리였던 것으로 보였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기가 발생하였는데도 국가지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⁷⁵⁾. 뒤늦게 중대본을 방문한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상황에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여 비난에 기름을 부었다. 야당(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야당은 ‘청와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를 핵심 진상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2014년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 7월 10일 국조특위에서 강력한 추궁이 예상되었다. 이에 청와대(김기춘)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속이려 했다.⁷⁶⁾

나. 무엇을 감추려 하였는가?

감추려 한 대상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최초의 보고시간과 대통령의 최초 지시시간과 지시내용이다. 둘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사고 당일 14회(대통령비서실 11회, 국가안보실 3회)에 걸쳐 ‘실시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가이다. 셋째는 세월호참사와 같이 해상에서 일어난 대형참사 발생 시에 국가안보실(대통령)이 컨트롤타워인가 하는 것이다.

75) 판결문 제24쪽~제25쪽, 이하도 같음

76) 판결문 제62쪽

1)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간에 대하여⁷⁷⁾

검사는 국가안보실이 ‘골든타임’인 당일 10:17 마지막 카톡 이전으로 최초 통화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간을 조작하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당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과 최초로 통화한 시간이 10:15경이 아닌 10:22경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최초 보고시간을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볼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의 증거가 없었다고 보았다⁷⁸⁾. 재판부는 실제와 달리 10:00경 최초 서면보고 시간이 특정된 경위, 실제와 달리 10:15경 구두보고와 대통령의 최초 지시시간이 확정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청와대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간과 대통령의 행적 등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안보실은 타임테이블을 정리하게 되었다. 국가안보실은 2014. 6. 초경까지는 최초 상황보고서 1보의 보고시간을 09:50경으로 특정하여 정리하고 있었다. 핫라인으로 해경 상황실과 통화한 녹취록이 확보되면서 09:50경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구조 인원을 북방 4마일 떨어진 서거차도로 이동 예정’이라는 보고내용이 녹취록에 등장하는데, 이는 09:57경 이후에 상황보고서 1보에 보고될 수 있었다. 이에 청와대는 최초 보고시간을 10:00경으로 서면보고 했다는 취지로 확정하여 대응하기로 했다⁷⁹⁾. 이렇게 최초 서면보고 시간이 실제(10:22경)와 달리 10:00경으로 특정되었다.

해경 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사이의 핫라인 녹취록에서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전파되는 내용⁸⁰⁾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초 통화한 시간은 10:15경이 아닌 10:22경이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10:15경 대통령과 최초 통화하면서 ‘세월호에 구명조끼가 정원보다 많이 보유되어 있다’라고 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위기관리

77) 판결문 제79쪽~90쪽

78) 판결문 제82쪽, 제84쪽

79) 판결문 제32쪽

80) 당일 10:25경 국가안보실 상황팀장이 해경 상황실 근무자에게 최초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내용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객실 내에 인젠룸 등을 포함해서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누락되는 인원이 없게하라”라는 것이다. 이는 당일 10:22경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과 통화한 후 받은 지시내용이다.

센터 상황팀이 해경과 통화하면서 구명조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시점은 그날 10:15경 ~17경이었다. 따라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10:15경 대통령과 최초 통화하면서 구명조끼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2014년 5월 22일 퇴임하면서 업무용 휴대번호의 통화 내역을 보여주면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과 10:15, 10:22, 11:23, 13:13, 14:11, 14:49, 14:57에 7번 통화하였으니, 관련 문서 등에 위와 같이 기재하라’라고 했다. 국가안보실의 타임테이블은 10:15경 대통령 최초보고와 지시사항이 정리되었다⁸¹⁾.

2)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당일 14회에 걸쳐 실시간 보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⁸²⁾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은 10:36경부터 22:09경까지 제1부속비서관 정호성에게 총 11회에 걸쳐 ‘4.16 여객선 침몰사고 상황’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제1부속비서관 정호성은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즉시 관저에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 되지 않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2014년 5월 15일부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에서 김기춘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조만간 국회 운영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때 사고 수습과 관련한 청와대의 역할·조치 등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비서실이 한목소리로 일목요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 정무수석은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접수부터 내용전파, 초동조치, 대통령 현장 방문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정리해서 내일 아침 실수비⁸³⁾ 시 보고해 주기 바람”이라는 지시를 했다. 2014년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81) 신인호의 지시로 위기관리센터 대응팀 소속 행정관 최종필은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간은 10:00로 정해졌으니 상황 일지 등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의 조치내역을 정리하는 문서’를 작성했다.

82) 판결문 제27쪽~29쪽

83)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말한다.

수석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들은 세월호 관련 실무 T/F 실무자 회의를 매일 했다. 국회 대비 예상 질의·응답자료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실무자 회의에서 작성된 답변자료들은 다시 해당 수석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내부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014년 6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7월 초순경까지 답변자료 초안을 바탕으로 14회 이상 회의를 주재했다. 2014년 6월 말경까지는 답변자료 초안을 수정·보완하다가, 7월 초부터는 확정된 쟁점별로 읽어보며 검토하는 형태의 회의(검독회 또는 독회)를 진행했다. 그 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고 그날 대통령비서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1회에 걸쳐 ‘실시간으로’ 상황보고서를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답변하기로 작심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가안보실이 관저로 3회에 걸쳐 서면보고를 한 상황을 이용했다. 결국 14회(=비서실 11회 + 안보실 3회) 보고가 모두 ‘실시간으로’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하는 ‘VIP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및 답변 기조’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국회 대비 회의에 배포되어 회의자료로 활용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VIP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및 답변 기조’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활용하여 2014년 7월 7일 국회운영위, 같은 해 7. 10. 국조특위, 같은 해 10월 28일경 국정감사에서도 증언했다. 한편, 2014년 8월경 부좌현 국회의원은 ‘비서실장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사안이 심각한데 대통령에 서면·유선 보고만 하면 다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했다. 이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4회(=비서실 11회 + 안보실 3회) 보고가 모두 ‘실시간으로’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 대형참사 발생 시에 컨트롤타워인지와 관련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내용 삭제⁸⁴⁾

2013년 8월 30일 개정되어 시행된 대통령 훈령 제318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2015년 5월경 개정되기까지 효력이 있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원본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84) 판결문 제95쪽~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조 제2호에서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의 분석·평가 및 종합, 국가위기 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상황의 종합·관리기능을 수행하며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4월 23일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대응했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신인호는 직원(이*우⁸⁵)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직원(이*우)은 재난안전법(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중대본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는 취지로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는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중대본이지 대통령(국가안보실)이 아니라고 대응했다. 강*원 국회의원은 2014년 6월 27일 청와대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조 제2호에서 ‘국가안보실’을 ‘중대본’으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2014년 6월 28일 유*봉 국정기획수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안보’는 국가안보실, ‘재난’은 안전행정부로 업무분장을 하기로 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중 국가안보실이 오해될 수 있으므로 위기관리센터가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 2014년 7월 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바로 수정하는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정된 7월 10일 국조특위가 지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년 7월 7일 국회운영위, 7월 10일 국조특위에서 청와대가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인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타와 추궁을 받았다. 김기춘은 국조특위가 끝난 후 7월 21일~22일경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개정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질책의 취지로 얘기했다. 대통령 훈령이 적법하게 개정되기 위해서는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과 ‘대통령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했다. 10일

85) 이*우는 재난안전법에 국한하여 재난 관련 정부 기관 사이에 중대본이 실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는 것일 뿐이고, 재난 상황에서 최종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은 대통령이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기관리센터장 신인호에게 자신의 보고서를 청와대가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근거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고 증언하였다(판결문 제 100쪽 각주).

이상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 법제처장의 심사, 법령저축 여부 등 심사하여 주관기관 통보 등 복잡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국가안보실은 2014년 7월 말경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가위기관리지침 원본에 문제 될 조항을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위에 수정 내용을 기재하였다. 2014년 7월 31일 위기관리센터장 신인호의 지시에 따라 국가위기관리지침 사본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장 등 65개 정부 부처와 기관에 수정공문을 시행하였다.

6 드러난 진실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가. 국가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무너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업무 시간 중 대통령 관저에 계속 머문 것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응시스템이 무너진 것의 시작이었다. 미국독립선언문의 핵심을 꺼내본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파괴하는 정부 또는 조직을 개혁하거나 폐지하고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전 정부 대응시스템 붕괴는 그런 정도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는 촛불혁명의 용광로가 되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도력은 위기 상황에 빛을 발한다.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가 아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위기가 발생하여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갈 때이다. 이때는 통제,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도력은 위기대응 시스템으로 뒷받침된다. 전쟁, 대규모 재난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상황실에서 지휘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위기대응 시스템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저에 계속 머물렀다. 업무시간 중에

관저에 머물던 긴급한 순간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참모들은 대통령의 위치부터 파악하여야 하므로 보고에 지장이 생기게 될 것은 자명하다. 위기 대응시스템이 무너진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업무 시간 중에 관저에 계속 머문 데에 있었다. 09:19경 YTN 뉴스 속보로 세월호 사고 발생 소식을 접했다고 하더라도 09:22경 청와대 문자 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파됐다. 그렇다면, 전파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에 등장해야 했다. 그리고, 상황을 보고 받고 경찰력, 행정력, 군사력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 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전략대응반’이 구성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김기춘이 ‘전략대응반’을 가동하지 않았던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과 마찬가지로 무겁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등장했다면, 국가안보실은 상황보고서 1보를 작성하고, 확인하고 상황병을 대통령 관저로 보내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과 통화가 되지 않는다며 제2부속실 비서관 안봉근에게 통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후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감추는 온갖 행위도 없었을 것이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사람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다. 해양수산부는 09:40경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그 당시 적용되던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2013. 6.)은 대규모 선박사고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및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대통령실(위기관리센터) 및 안행부와 사전 협의하여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위기관리센터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던 핵심 이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 계속 머무는 상황에서의 그는 위기관리센터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 보고도 중요 하였지만, 대통령을 위기관리센터에 입장하도록 해서 지휘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대통령이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로 구조 작업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비록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위로를 받고 그 재난을 딛고 일어설 힘을 갖게 된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한다는 위로가

되고, 모든 국민에게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된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명을 받아 보좌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집중적으로 발휘되어야 할 때가 바로 세월호참사 상황이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국가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를 찾는 모습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09:19경 YTN 뉴스 속보로 세월호 사고 발생 소식을 안 후 최초 상황보고서 1보는 10:20경 박근혜 전 대통령 관저 침실 앞 탁자에 올려졌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10:22경 대통령과 통화했다. 그러나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기관리센터로 나오셔야 한다고 건의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위기관리센터 대응시스템을 작동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 대통령에게 위기관리센터로 나오셔야 한다고 건의에 대통령의 반응이 무서웠던 것인지. 그에게 붙여진 ‘꽃꽃 장수’라는 평가가 초라하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군인이었다. 전쟁에서 진 장수는 용서되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계는 초동대응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09:19경 YTN 뉴스 속보로 세월호 사고 발생 소식을 알았다. 최초 상황보고서 1보를 든 상황병이 위기관리센터에서 대통령 관저로 출발한 후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비로소 위기관리센터로 들어갔다.⁸⁶⁾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관리센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위기관리센터가 아닌 청와대 위민3관 2층 국가안보실장 사무실에서 10:00경 최초 상황보고서 1보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정확성을 확인한 후인 10:10경 위기관리센터장 신인호를 국가안보실장 사무실로 불러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신인호는 김장수의 지시를 받고 국가안보실장 사무실에서 내려와서 위기관리센터로 들어가 최초 상황보고서를 출력한 후에 10:12경 상황병을 출발시켰다. 위기상황에 맞지 않는 대응이다. 위기상황에 맞게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이 모두 위기관리센터에 있었다면 모두 필요가 없었던 조치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보고받고 지시하는 과정은 전쟁에서 적군의 탱크가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

86) 판결문 제71쪽~72쪽

군인을 살상하고 있는데, 초병이 탱크의 수를 헤아리고 피해 군인의 수를 세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꼴이다. 초병이 보고서를 들고 본부에 뛰어갔는데 지휘할 사령관을 본부에 올 것을 건의하지 않고 받은 보고서를 다른 초병에게 전화해서 탱크의 수와 피해 군인 수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전통문을 사령관 막사 앞에만 두고 오는 격이다. 경계에 실패한 초병이 용서되지 않는 것처럼 국가위기의 상황에서 초병 역할로 국가위기의 심각성을 즉각적으로 알리고, 국정 최고 책임자를 위기관리센터에 오도록 건의하며,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위기 상황에 맞추어 지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도 용서받을 수 없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은 10:36경부터 22:09경까지 사이에 제1부속비서관 정호성에게 총 11회에 걸쳐 ‘4.16 여객선 침몰사고 상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이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4.16 여객선 침몰사고 상황’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이 보고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에서 보낸 이메일을 받은 제1부속비서관 정호성은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즉시 관저에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잘 알고 있었다. 이런데도 김기춘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처럼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위기관리센터 대응시스템을 작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세월호 침몰사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위기관리센터에 나오셔야 한다고 건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지도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 머물기만 했다. 관저는 대통령의 휴식과 개인 생활을 위한 공간이므로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업무수행 공간이 아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 공자(孔子)는 인(仁)의 핵심이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고 했다. 맹자(孟子)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⁸⁷⁾. 측은지심(惻隱之心)은 우물 안에 빠지려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승객의 생명·안전에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고받고서도 관저에 계속 머물렀으므로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는 사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지시내용은 당일 10:22경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일 10:06경 세월호 마지막 생존자가 유리 창문을 깨고 탈출했고, 직후에 세월호 선실은 모두 물에 잠겼다. 당일 10:15~17경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도달됐다. 10:22경 내려진 대통령의 첫 지시는 구조상황에 전혀 맞지 않았다. 이미 객실이 물속에 잠긴지 16분경⁸⁸⁾ 흘러서 선실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꾸며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당일 오후 5시 21경 중대본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⁸⁹⁾은 그때 까지 전혀 세월호참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던 사람처럼 발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대본에 나온 결정적 계기는 최서원(개명 전의 이름 최순실)의 건의였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장도, 국가안보실장도 아니었다. 최서원은 당일 14:15경 보안 손님으로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과 함께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회의를 했다. 최서원은 대통령에게 중대본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정호성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제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호승에게 중대본을 방문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87) 무측은지심 비인야(無惻隱之心 非人也), 맹자, 공손추편

88) 세월호 마지막 생존자가 10:06경 세월호 선실 창문을 깨트리며 구조되었고, 그 직후에 물속에 잠겼다. 10:22경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있었다면 약 16분이 지났다는 취지이다.

89)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들니까?”(2014년 4월 16일 17:21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도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3년 4월 18일 국회운영위에서 “국가안보실은 안보, 재난, 국가 핵심기반 시설 분야 위기 징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전반에 관련된 범정부적 대응 활동을 조정·통제하며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가위기 관리 업무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당시에 효력이 있었던 대통령 훈령 제318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제3조 제2호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 취지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4월 23일 ‘청와대(국가안보실)는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다. 위기관리센터 캐비닛 안에 보관되고 있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원본 제3조 제2호의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자신의 책임으로 다가올까 봐 자신의 말도 부정했고, 법령도 부정했다. 공자(孔子)는 인(仁)과 함께 의(義)도 강조했다. 맹자(孟子)는 의(義)가 부끄러이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했다.⁹⁰⁾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책임한 사람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실이 …중략…컨트롤타워이다’라는 것을 삭제하도록 승인했다. 이것도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진정성, 신뢰감, 공공성의 지도력을 보여주지 않는 대통령이 결국 탄핵 되고, 수십년 권력자에 붙어 호가호위하며 법망을 피해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주검을 가슴에 묻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레 나올 눈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도체육관에서 흘리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5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렸다. 2014년 5월 14일 대국민 담화 시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국군기무사령부의 보고에 따른 것이었다. 국가지도자로서 진정성이 없는 것이었다.

90) 의(義), 수오지심(羞惡之心),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 맹자, 공손추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히 처벌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발족되었던 제1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⁹¹⁾는 법에 정해진 활동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강제해산됐다. 박근혜 전 정부는 모든 것을 숨기려 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자 한 독립조사기구까지 해체했다. 박근혜 전 정부는 어떠한 신뢰감도 주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의 이름 최순실)의 건의 또는 동조에 따라 중대본에 갈 것을 결심했다. 최서원(개명 전의 이름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는 많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상황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는 상황에도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다. 박근혜 전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와 국정원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공성의 지도력이 없음을 말해 준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대형 재난 위기상황에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삭제하는 것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실시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는데도 보고된 것처럼 숨기고, 왜곡하는 것도 공공성의 지도력이 아님은 마찬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가지도자가 진정성, 신뢰감, 공공성의 지도력을 보여주지 않는 것의 총합이다. 모든 국가지도자에게 주는 교훈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사건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을 지는 첫 사례가 되었다. 그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했을 행위에 대한 책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의미를 새겨야 할 것이 있다. 청와대 캐비닛에 숨겨진 자료가 발견된 것에서 수사가 시작됐고, 이것이 처벌과 연결됐다. 결코 진실은 숨겨질 수 없고, 책임자는 처벌을

91) 관련 특별법은 2015. 1. 1. 시행되었으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개시 시점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이고, 서울행정법원은 인적·물적 구성이 완료된 2015. 8. 4.이라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097).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최종 활동 종료 시점은 2017. 5. 3.이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전 정부는 2016. 6. 30.경 조사 활동 종료 시점이라고 통보하였고, 3개월의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을 고려한 후에 같은 해 9. 30.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했다.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모든 시민에게 각인되어야 한다. 죄짓고 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 진실규명이 빨리 되지 않으면 책임자가 얼마나 교묘하게 빠져나가는지를 보여준다.

『세월호참사 당시 10:00경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됐다. 10:15경 대통령과 통화해서 대통령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여 누락 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10:30경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직접 “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최초의 발화자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책임을 면했다.

김장수를 이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김장수가 ‘청와대(국가안보실)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 때문에 물러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014년 7월 14일 국조특위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 1차장 김규현이 ‘청와대(국가안보실)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지를 둘러싸고 질타당하는 모습을 현장에 지켜보았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조 제2호 등을 삭제(아래 참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런데도 책임을 면했다. 모두 정의롭지 못하다.

순번	삭제 부분	수정(수기 기재)
1	제3조 제2호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의 분석·평가 및 종합, 국가위기 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상황의 종합·관리기능을 수행하며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

정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난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이 구조책임과 관련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제 때에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2014년 5월 29일 “해양경찰청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중앙구조본부 등”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수사보고서를 올리고서도 말이다. 2014년 6월 5일 16:00~17:00경 청와대 민정비서관 우병우가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해서 ‘해경 상황실 경비 전화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의 압수수색을 막으려 했다는 것은 진실규명의 분기점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외압의 동기와 실체의 핵심이다. 세월호참사 당시 10:00경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도 없었고, 10:15경 대통령의 구두 지시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핵심 증거가 해경본청과 위기관리센터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처음에 청와대(국가안보실)는 해경본청의 경비 전화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 저장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알기 전에 국가안보실은 2014년 6월 초경까지 최초 상황보고서 1보의 보고시간을 09:50경으로 특정하여 정리했었다. 물론 이것도 사실과 멀었다. 청와대는 2014년 6월 5일 14:00~17:00경 광주지검 수사팀이 해경본청의 경비 전화 통화내용을 압수수색을 하면 청와대와 통화한 내용도 밝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와대(국가안보실)가 최초 상황 보고서 1보의 보고시간을 09:50경으로 특정했다면 큰일이었을 것이다. 해경본청과 청와대(위기관리센터)와 사이에 통화한 내용을 정밀 분석했다면 10:15경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도, 10:30경 대통령이 직접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게 지시했다는 것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을 것이다.⁹²⁾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직후에 거짓이 밝혀졌다면 박근혜 전 정부는 세월호참사로 바로 무너졌을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해경본청의 경비 전화 통화내용 녹취록을 통해서 최초 서면보고 시간을 09:50경에서 10:00경으로 수정하는 데까지만 성공했다. 그것으로도 박근혜 전 정부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기를 벗어났다. 그러나 해경본청의 경비 전화 통화내용 녹취록이 10:22경 대통령의 최초 지시이었다는

92) 헌법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 사건(헌법재판소 2017. 3. 10.자 2016헌나1 결정)에서 10:30경 대통령이 직접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직접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당일 09:53경 이미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해경청장과 통화를 하였다면 해경청장이 이미 지시한 사항을 보고하였을 것인데도 같은 내용을 다시 지시할 수 없을 것이고, 세월호는 10:17:06경 108.1도로 전복되어 급속도로 침몰하고 있어 잠수를 통하여 승객을 구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해경청장에게 지시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통화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녹취록이 유일한데, 이 녹취록에 해경청장에 대한 특공대 투입 등 지시를 전달하거나 그 지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의 대화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을 밝히는 것을 끝까지 막지 못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자신이 대통령과 통화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통화하지 못한 발신자 표시를 핑계로 10:15경 거짓 주장을 한 것이었다. 그 주장은 청와대 캐비닛에 남겨진 최초 상황보고서가 발견된 뒤에 비로소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밝혀진 것이다. 결국 청와대 민정비서관 우병우가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해서 해경본청과 청와대가 통화한 내용이 상세히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면 민정비서관 우병우는 박근혜 전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의 청와대에 대한 핵심 감사대상은 최초 보고시간과 대통령의 지시내용, 국가재난 위기 상황에서 청와대(국가안보실)가 컨트롤타워인지였다. 감사원은 청와대의 보고와 대응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것을 이유로 사건불성립으로 처리했다. 사건불성립의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해경본청과 청와대(위기관리센터) 사이의 통화내용 전체를 확보했는지 알려지지 않는다. 감사원이 청와대(위기관리센터)의 통화내용을 모두 확보하여 정밀분석했다면 최초 보고시간과 대응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은 달라졌을 것이다. 감사원이 2014년 5월 말경 청와대(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실지 감사과정에서 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 보관되고 있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원본을 제출받았다면 어떠했을까? 감사원이 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발하겠다는 추상같은 모습을 보였다면 어떠했을까?. 감사원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컨트롤타워가 중대본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고려하지 않았음이 명백했다. 이*우도 재난안전법에 국한하여 재난 관련 정부 기관 사이에 중대본이 실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는 것일 뿐이라고 보고했다. 이*우도 재난 상황에서 최종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은 대통령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위기관리센터장 신인호에게 자신의 보고서를 청와대가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근거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고 증언했다.⁹³⁾ 감사원이 외압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강한 의구심까지 든다.

결국, 지연된 수사는 지연된 정의조차 말하기 어렵게 만든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93) 판결문 제100쪽 각주

7

**진실을 감춘 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가?
정의를 실현된 것인가?**

가. 처벌은 책임의 비례성에 맞는가?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 제출한 허위내용 기재 답변서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내용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행사죄이었다. 그러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허위의 내용으로 ‘VIP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및 답변 기조’ 문건을 만들어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 배포 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위하여 작성된 문건은 내부분건으로 공문서가 아니라는 것이고,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 배포 한 행위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행위에 대한 책임의 비례성이 한참 벗어났다. 국가위기대응 시스템이 무너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위기 대응의 최고 책임자의 무능함,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행위를 숨기고 왜곡하기 위해 허위의 내용을 만들어내었다. 허위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서실장의 지위를 맘껏 활용했다. 철저히 주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만들어냈다. 만들어진 허위내용을 활용하여 2014년 7월 7일 국회운영위, 같은 해 7. 10. 국조특위, 같은 해 10월 28일경 국정감사에서도 증언했다.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국민을 속였다. 희생된 304명의 유가족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비례원칙을 위반했다. 이것은 법원이 윗물을 맑게 해서 아랫물을 맑게 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나. 처벌되지 않은 이유가 정의로운가?

김장수는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0:00경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가 있었다는 내용도, 10:15경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는 시간도 모두 허위였다. 10:15경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도 허위였다. 모든 허위, 거짓을 최초의 발화자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다. 그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2014년 5월 23일 사임했고, 그 후인 같은 해 6월 초경 김장수를 이어서 국가안보실장이 되었더라도 무죄가 선고된 이유를 수궁하기 어렵다. 김관진은 김장수를 이어 국가안보실장이 되었기 때문에 전임자가 무엇 때문에 사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무엇을 조심해야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인지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7월 14일 국조특위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국가안보실)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지에 대해서 질타당하는 모습을 현장에 지켜보았다. 국가안보실 1차장 김규현이 자신 대신 해명하는 모습도 보았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조 제2호 등을 삭제하는 것을 보고받았고, 이를 승인했다. 조직폭력배 사건에서 법원은 고개만 끄덕여도 공모를 인정한다. 세월호참사 사건에서 청와대(대통령)의 국가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인지에 따라 정부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폭발성을 갖는 사안에 승인한 것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다. 국가안보실장의 승인이 없다면 그다음 절차는 진행도 되지 않는다. 법원은 절차를 잘 몰랐다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무능 코스프레에 속았다. 법률의 부지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법언에 근거한 판례도 무시했다.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표지 중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이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원본에 ‘삭선’을 긋는 데서 비난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은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비난을 벗어나는 출발이기 때문이다.

8

**재판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무엇이고,
정의 실현을 위한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국가위기 대응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무능했던 사람들이 국가 위기대응시스템도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들의 무능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대응했는지도 알게 됐다. 초기에 진실을 철저히 밝히지 않으면 얼마나 처벌이 어려운가도 알게 됐다. 원했던 정의 실현에 실패했다. 그런데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유죄선고는 진실 일부를 감출 순 있어도 모든 진실을 결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유죄선고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나쁜 짓을 하면 끝내 처벌된다는 확고한 관행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의 실현을 위한 남은 과제는 없는가?. 판결은 범죄행위의 유죄 여부를 가리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 공백도 많았다.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그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이다.

8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한 판결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한 판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8고30 및 2018고31 각 판결

이윤주 변호사

1 사건의 등장인물

이재수(2018. 12. 7. 사망)는 2013. 10. 26.경부터 2014. 10. 16.까지 국군기무사령부 41대 사령관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김대열은 2014. 1. 1.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2014. 5. 13.부터 2014. 7. 16.까지 세월호 TF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지영관은 2013. 11. 7.경부터 2014. 11. 11.까지는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이 사건 당시 세월호 TF에서는 정책지원팀장을 담당하였고, 손정수(1차장)는 2014. 5. 13.부터 2014. 7. 16.까지 세월호 TF 현장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박태규(1차 1차장)는 2014. 5. 13.부터 2014. 7. 16.까지는 세월호 TF 현장지원부팀장으로, 2014. 7. 17.부터 2014. 10. 12.까지는 세월호 TF 현장지원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자이고, 소강원은 이 사건 당시 광주·전남지역 관할 제610 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김병철은 이 사건 당시 경기·안산지역 관할 제310 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이들은 기무사령부 소속으로 위 세월호 TF 등에서 세월호 민간인 사찰업무를 지시하거나 이행하였던 자들이다.

본고에서 비평의 대상으로 삼은 각 판결문들은 위 등장인물 중 소강원과 김병철에 대한 것이다⁹⁴⁾.

2 사건의 소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피고인 소강원, 김병철에 대한 2018고30, 2018고31 각 판결 및 ‘기무사의혹 軍 특별수사단’(2018. 7. 16.자 출범)의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 등 관련 보도자료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연혁 및 법령상 직무범위

기무사령부는 1948. 5.경 대공 업무와 간첩 검거 등을 담당하기 위해 창설된 육군 정보국 특별조사과를 그 모태로 하는 특무부대로 창설되어,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작성·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였으나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지난 2018. 8. 21.경 해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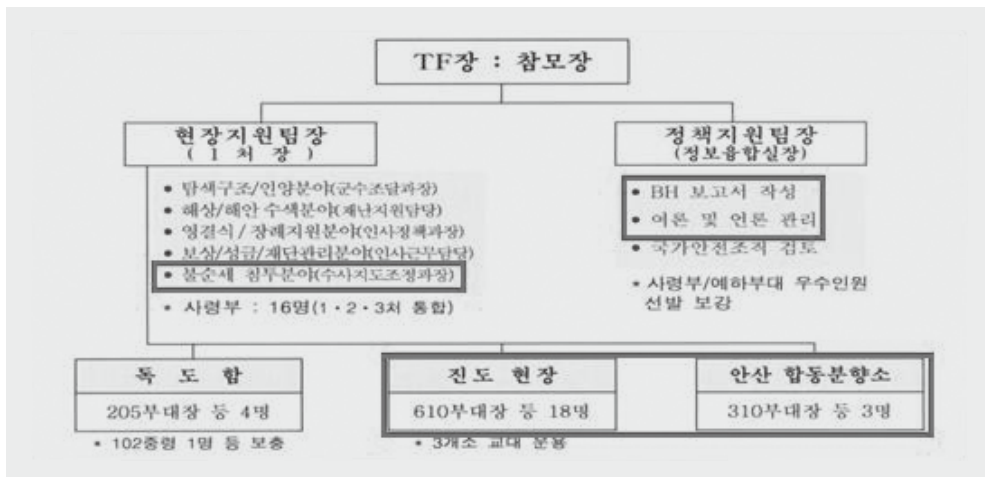
94) 현재 김병철은 2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피고인이 상고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소강원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 이외에도 손정수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2심이 진행 중이고, 지영관과 김대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기무사령부는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작성·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장관 소속 부대로, 기무사령부에 대해서는 국내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바 그 직무범위, 특히 첩보활동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국군기무사령부령(2018. 8. 21. 대통령령 제2911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군 및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에 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무사령부는 정보기관으로서 그 업무의 밀행적(密行的) 속성으로 인하여 그 본질상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사생활의 비밀을 비롯한 자유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큰바, 위 구 국군기무사령부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명시적으로 열거한 첩보와 무관한 첩보에 대해서는 관여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나. 기무사내 ‘세월호 TF’의 설치 및 운영

<세월호 TF 조직도⁹⁵⁾>



95) 국방부 보도자료 “前.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2018. 11. 6.) 인용.

기무사령관 이재수는 세월호 참사 발생 후인 2014. 4. 28.부터 사령부에 세월호 TF를 설치하게 하였고, 같은 해 5. 13.에는 이를 증편하여 2014. 10. 12.까지 세월호 참사 관련 군 첩보 등을 수집·작성 및 처리하게 하였다.

세월호 TF는 당시 참모장이었던 김대열을 TF장으로 하여 사령부 및 현장 기무부대원 총 60명으로 구성되었고, ① 유가족 지원, ② 탐색구조·인양, ③ 불순세력 관리 등으로 업무를 분장하였다⁹⁶⁾.

‘기무사의혹 軍 특별수사단’(2018. 7. 16.자 출범, 이하 ‘軍 특수단’이라고 합니다)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하여 수사하여, 위 기무사 내 세월호 TF는 세월호 참사 이후 6. 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정부의 국민보호의무 소홀, 초기대응 미흡 등의 사유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당시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와 같은 정국을 조기전환하기 위한 출구마련과 VIP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관련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⁹⁷⁾.

다.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기무사령관 이재수는 위와 같이 2014. 4. 중순경부터 기무사령부 관계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민간인 사찰을 계획하고, 제310부대·제610부대 등 예하 기무무대의 부대장들이 위 계획에 따라 부대원들에게 지시하여 민간인 사찰을 실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무사령부 및 제310부대, 제610부대 소속의 부대원들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실종자 가족들의 특이언동, 분위기 등을 수집·파악하기로 모의하였다.

96) 국방부 보도자료 “기무사의 세월호 사건 관여 문건 발견”(2018. 7. 2.) 인용.

97) 국방부 보도자료 “前.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2018. 11. 6.) 인용.

특히 제610부대장인 소강원과 제310부대장인 김병철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 4. 16.경부터 세월호 TF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예하 부대원들을 통해 진도(진도 실내체육관, 진도군청 등) 및 안산 지역에서 세월호 유가족 관련 첩보를 수집하여 기무사령부에 정기·수시 보고하였고, 안산 단원고등학교 분위기, 안산 가족대책위, 인천 가족대책위를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그 사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610부대의 민간인 사찰 내용

<세월호 유가족 사찰 주요 내용>

- 유가족의 분위기 파악(특정 조치에 대한 불만, 과격 등을 보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가족관계와 특이내용 등)
-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파악(‘진도 지역 실종자 가족들의 경우 가족들을 위한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하였다’ 등)
- 유가족 사생활 파악(TV 시청 내용, 일부 유가족의 야간 음주 실태 등)
- 유가족 성향 파악(‘강성, 중도, 온건’으로 분류 등)

가) 2014. 5. 9.경 ‘유가족 분위기 파악’ 관련

기무사령관 이재수를 비롯한 기무사 관계자들은 2014. 5. 9.경 세월호 TF 소속 부대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팽목항, 진도 실내체육관 등지에서 특정 조치에 대한 불만, 과격을 보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가족관계와 특이내용 등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제610부대원들은 “세월호 유가족 동정”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유가족이 “결국 언론 플레이 해서 유족들이 떼쓰고

난동 부리고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하려는 것 아니냐?”며 수중수색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시선을 의식했다’는 내용 등 희생자 유가족의 분위기를 각각 수집·파악하여 보고하였다.

나) 2014. 5. 20.경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파악’ 관련

기무사령관 이재수를 비롯한 기무사 관계자들은 2014. 5. 20.경 세월호 TF 소속 부대원들에게 유가족 관련 사항을 수집·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생일날 미역국 및 케이크 요구, 병원 진료시 가족출입증 발급 등 세월호 유가족의 ‘과하다 싶은 정도의 무리한 요구’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제610부대원들은 “세월호 관련 과도한 가족 요구사항 확인 결과”라는 제목으로 ‘진도 지역 실종자 가족들의 경우 가족들을 위한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을 수집·파악하여 보고하였다.

다) 2014. 6. 26.경 ‘유가족 사생활 파악’ 관련

기무사령관 이재수를 비롯한 기무사 관계자들은 2014. 6. 26.경 세월호 TF 소속 부대원들에게 유가족 관련 사항을 수집·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진도 실내체육관 내 잔류 유가족 현황, TV 시청 내용, 야간 음주 실태, 신경질을 내는 사례’ 등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제610부대원들은 유가족 일부가 야간에 음주를 하였다는 내용 등 유가족 개개인의 사생활 정보들을 수집·파악하여 보고하였다.

라) 2014. 7. 6.경 ‘유가족 성향 파악’ 관련

기무사령관 이재수는 청와대 비서·안보·경호실장에 대한 세월호 관련 주요 현안을 보고한 다음날인 2014. 7. 6. 기무사령부 본부 5층 기밀회의실에서 김대열, 손정수 등 기무사령부 내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직 실종자 학부모의 성향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작할 사항’ 등의 표현과 함께 회의 참석자들을 질책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성향, 영향력, 상태, 각각의 활동을 분석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김대열은 위와 같은 이재수의 지시사항을 강조하면서 위험성은 알고 있으나 유가족 성향 파악 등 부대원들의 활동을 기술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손정수는 박태규를 포함한 기무사령본부와 예하 부대원들에게 유가족의 직업, 성격, 활동내용, 언동사항 등 수집에 의한 성향 파악을 지시하였다. 이에 제610부대원들은 유가족 개개인의 성향을 ‘강성’, ‘중도’, ‘온건’ 등으로 분류하였고, 현장 정보 수집활동, 인터넷 검색 등을 이용하여 유가족의 성향 정보를 각각 수집하여 보고하였다.

2) 제310부대의 민간인 사찰 내용

가) 2014. 5. 9.경 ‘유가족 분위기 파악’ 관련

기무사령관 이재수를 비롯한 기무사 관계자들은 2014. 5. 9.경 세월호 TF 소속 부대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유가족의 여망, 불만, 과격 등과 같은 희생자 유가족의 분위기, 안산 지역 유가족 침묵시위 동정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제310부대원들은 관찰 또는 현장공무원 및 관계자 등으로부터 들어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독문)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첩보를 수집하였고, 2014. 5. 11.에는 ‘합동분양소 앞에서 피켓시위 및 서명운동을 지속 전개 중으로 마스크를 쓰고 피켓을 들고 있고 조문객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 피켓 시위

인원수가 다르다'와 같이 유가족 분위기와 안산 지역 유가족 침묵시위 동정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나) 2014. 5. 20.경 '유가족 요구 파악' 관련

기무사령관 이재수를 비롯한 기무사 관계자들은 2014. 5. 20.경 세월호 TF 소속 부대원들에게 생일날 미역국 및 케이크 요구, 병원 진료시 가족출입증 발급 등 세월호 유가족의 '과하다 싶은 정도의 무리한 요구'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제310부대원들은 앞서 보고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2014. 5. 21. '세월호 관련 유가족들의 요구 실태 파악 보고(310)'라는 제목으로 '교육청, 유가족 요청에 따라 화장장 및 장지까지 리무진으로 조치', '진도로 내려가는 버스와 시위에 필요한 피켓까지 요구', '유가족 증명서 등 발급 요구', '자녀 생일에 따른 미역국 등 지원 요구', '대입 특례 요청' 등 유가족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였다.

다) 2014. 5. 29.경 '안산 가족대책위 대표 및 대변인 파악' 관련

기무사령관 이재수를 비롯한 기무사 관계자들은 2014. 5. 29. 세월호 TF 소속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대표 및 대변인 관련 정보를 비롯한 안산 가족대책위 관련 정보를 수집·파악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제310부대원들은 앞서 보고한 자료에다가 인터넷 검색, 득문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여 2014. 5. 30. '세월호 유가족 대표 및 대변인 관련 확인 결과(310)'라는 제목으로 '유가족 대표 보습학원 운영경력 및 시흥에서 지게차를 운영하는 등 평범한 직업 출신이나 성향은 사회비판적임', '유가족 대변인 정의당 출신으로 인터넷 자료 참고' 등 세월호 유가족 대표 및 대변인 관련 정보를 수집·파악하여 보고하였다.

진도 여객선 침몰 관련 안산 단원고 일일 보고(43보)

● **유가족 관련 사항(여망사항)**

- 경찰 측, 유가족 대표(AM)은 보습학원 운영 경력 및 시흥에서 지게차를 운영하는 등 평범한 직업 출신이나 성향은 사회비판적이고
 - 대변인(AN)은 정의당 당원으로 '13.11월 SNS상 대통령님 비하 및 하야 주장 등 활동
 - 생존자 학부모 대표(BI)는 금속노조 출신으로 활동사항에 대해 주의깊게 확인 중
- 유가족 120여명, 국회 본회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 참관
- 유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4명,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면담
- 생존 학생 학부모 25명, 단원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 요구

라) 2014. 6. 25.경 '단원고 분위기 파악' 관련

기무사령관 이재수를 비롯한 기무사 관계자들은 2014. 6. 25.경 세월호 TF 소속 부대원들에게 안산 단원고 및 안산 지역 분위기를 수집·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제310 부대원들은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입수한 자료 및 추가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4. 6. 25. '충성!(310) 세월호 침몰 관련 안산 단원고 애도 분위기(수정)'이라는 제목으로 '희생된 학생들을 잊지는 않을 것임. 다만 너무 억지식 애도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불편함'이라고 보고하는 등 안산 단원고 분위기를 수집·파악하여 보고하였다.

마) 2014. 7.경 '인천 가족대책위 요구사항 파악' 관련

기무사령관 이재수를 비롯한 기무사 관계자들은 앞서 보고했던 자료 및 득문 등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보고한 첩보를 바탕으로 하여 2014. 7. 초순부터 같은 해 7. 중순까지 수회에 걸쳐 세월호 TF 소속 부대원들에게 인천 가족대책위 요구사항을 비롯한 가족대책위 관련 정보(구성 현황과 현 주요 관심사, 인천 합동분향소 분위기, 인천 가족대책위

요구사항, 기타 특이동정 등)를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제310부대원들은 앞서 보고했던 자료 및 득문 등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보고한 첩보를 바탕으로 하여 2014. 7. 1.에는 ‘충성! 가족대책위 구성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인 희생자 36명 중 22명 참여, 대책위원장(인천시민) 분향소 변경(인천시청 앞 미래광장 /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회의 분과위가 아닌 별도 위원회로 구성된 성격임’이라고, 2014. 7. 9.에는 ‘충성!(310) 인천 합동분향소 분위기 파악 보고’라는 제목으로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 뒤늦게 구성, 보상 위주 활동 중’, ‘안산 지역 가족대책위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 제기하며 보상 위주의 정부에 지속 건의’라고, 2014. 7. 6.에는 ‘충성!(310) 가족대책위 요구사항 확인 결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인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안산과 동일한 수준 지원 요구’라고 각 보고하는 등, 인천 합동분향소 분위기를 수집·파악하여 보고하였다.

3) 기무사령부 내 사이버 활동부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령관 이재수를 비롯한 기무사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 내 사이버 활동 부대인 000부대 정보 00반은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유가족 개인별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학적사항, 중고거래 내역, 인터넷 카페활동 등을 수집하여 보고함으로써 ‘사이버 사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4) 집회에 관한 정보 수집·작성 및 보수단체에 제공한 사실

기무사령관 이재수를 비롯한 기무사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 제310부대원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집회·시위나 세월호 유가족 등이 결성한 세월호 관련 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파악하여 보고하였다.

진도 여객선 침몰 관련 안산 단원고 일일 보고(10보)

- 희생자 가족 임시 회장단 구성 회의 소집
 - 학교 운영위원, 교육위원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안산시 거주 CA가 오늘(4. 26) 회의 소집
 - *유가족단과 마찰 많고 행보에 주의가 요망되는 인물로 경찰측 관찰 인물

진도 여객선 침몰 관련 안산 단원고 일일 보고(15보)

- 단원고, 희생자·실종자 유가족 162명, 진도 방문 피켓 시위
 - 단원고 희생자·실종자 유가족 162명은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구하여 버스 4대로 진도를 방문, 팽목항에서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등 정부 비판 구호를 외치며 불만 표출
- 단원경찰서 보안계장(CC), 촛불집회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
 - 안산시 지역 촛불집회가 초기 2,000여명까지 확산되는 추세였으나 점차 인원이 줄고 있고 내용 또는 현재까지는 순수한 촛불 집회 성격으로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

진도 여객선 침몰 관련 안산 단원고 일일 보고(20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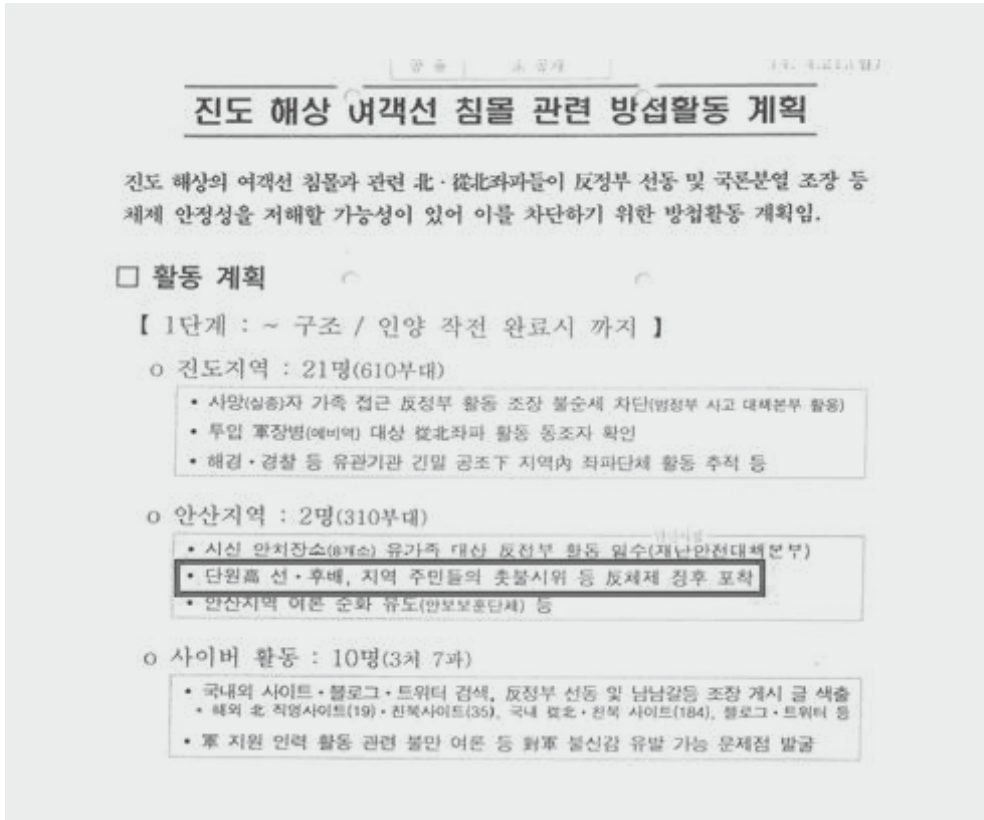
- 합동분향소 앞 진실규명 요구 피켓 시위 및 서명운동 지속(4일차)
 - 유가족 10여명 지난 5.3.부터 합동분향소 앞에서 피켓 시위 및 특별검사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지속 전개 중

진도 여객선 침몰 관련 안산 단원고 일일 보고(23보)

- **안산 교교생 등 1,500여명 희생 학생 추모 집회**
 - 5.9. 18:30부터 안산지역 24개 고교생 학생회 회장단(안산고교회장단연합회)에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 집결(18:30)하여 고잔동 문화 광장까지 2km 가량 침묵·추모 행진 및 집회 중
*경찰 2개중대 배치
- **안산시민사회연대, 내일(5.10.) 국민 촛불 행동 집회 예정**
 -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인터넷 등 공지를 통해 ‘손에 손잡고 5월 10일 안산으로 모입시다!’ 동참 유도 중

이외에도, 기무사령부는 2014. 4. 21.경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중북 좌파들이 반정부 선동 및 국론분열 조장 등 체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간첩을 방지하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중북세(력)’이 사망(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반정부 활동을 조장할 수 있는바, 중북좌파의 동정을 확인하는 것을 활동의 중점으로 두고, 진도 지역에 제610부대 21명, 안산 지역에 제310부대 2명을 각 배치하겠다는 활동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해당 문건에서 기무사는 안산 지역 단원고 선·후배, 지역 주민들의 촛불시위 등을 ‘반체제 징후’로 판단하였다.

<기무사 작성(2014. 4. 21.자),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활동 계획>



이후 기무사령부는 2014. 5. 13.경 작성된 문건에서도 지속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집회에서 반정부 여론이 조성된다는 취지로 중복세(력)의 활동실태를 기록하면서, 보수단체들에 ‘중복세(력) 준동 대비 언론기고·맞대응 집회 등 정부지지 활동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수단체들이 위 좌파집회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를 열 수 있도록 소위 ‘좌파집회’(시민단체 집회 등) 정보를 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세월호 사건 관련 시국 집회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기무사, 세월호 집회 대응 보수단체의 맞불집회 위한 시위정보 제공>

회장의 좌파 활동정보 요청 관련 협조 결과

□ 회장 요청 내용(3.5. 사령부 방문시)

- 는 좌파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여 중복세 맞불 집회 개회 중
- 한편, 보수단체임에도 관련 정보가 없어 적시적인 대응 곤란
- ※ 좌파 시위계획 등 좌파 대응을 위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 여망

• 기무사, 좌파집회 정보제공 협조 •

진보단체 집회 시위 관련

□ 관련 내용(1건)

- 세월호 추모 집회 예정
 - 일 시 : '14. 4.26.(토) 18:30~
 - 장 소 : 동화면세백화점 앞
 - 참석자 : 진보단체 회원 400~500여명

• 2014. 4. 26. 세월호 추모집회 정보제공 •

기무사령부는 는 2014. 5. 29.경 작성한 ‘중복세 촛불집회 확산 시도 차단 대책’ 문건에서, 중복세력이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와 연계하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000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바, 이를 대정부 총공세로 판단하고, 보수세(력) 결집을 통한 조직적 맞대응이 필요하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5)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언론에 공개하여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자 함

또한 기무사령부는 전 부대 차원에서 세월호 정국 관련 의견을 수집하였는데, 그 방안의 하나로 실종자 수색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이 청와대에 보고되기도 하였다. 당시 기무부대원들은 ‘세월호 관련 투입비용, 또는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언론에 공개하여 수색 및 인양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 ‘보수층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경제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가경제의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게 하고, 이후 보수단체 주관 국민대상 여론조사 실시를 유도’, ‘정부는 지속 수색을 하겠다는 표면적 입장을 취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이용하여 유가족의 수색 포기를 압박함’ 등의 정국 조기전환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사건의 쟁점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으로 의율됨

본 사안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으로 의율되었다. 즉 기무사령관 이재수를 비롯한 기무사 관계자들 공모하여 그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이들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기무사령부의 적법한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 첩보를 수집·파악하게 하고, 그 파악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구조이다(이러한 구조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아래 4.항에서 부연하여 이야기하겠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소강원, 김병철을 비롯하여 본 사안과 관련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기무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아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 ① 실종자 수색·구조를 위하여 군의 인력과 장비가 대거 투입된 상황으로, 기무사령부 지휘부는 실종자 수색 작전에 관한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군 수뇌부에 제공할 목적으로 기무부대원들에게 실종자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게 한 것이다(목적의 정당성).
- ② 세월호 참사 직후 군 병력과 장비가 대거 투입되어 수개월 간 실종자 수색 구조 등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기무사령부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군의 실종자 수색작전 등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필요성).
- ③ 피고인들은 부대원들에게 해킹이나 도청, 미행 등과 같은 불법한 수단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활동관들 역시 관찰이나 득문 등 적법한 방법으로 실종자 가족들의 동향을 평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지시나 그에 따른 부대원들의 활동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상당성).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령부가 장기간 조직적으로 민간인인 실종자 가족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여 이를 각종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 이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므로, 그것이 군 방첩이나 군사보안 등 국가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소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실종자 가족들의 동향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무부대원들에게 실종자 가족들이 기거하던 진도 실내체육관 등으로 가서 실종자 가족들의 동향을 살펴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실종자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측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입수하여 이를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수개월 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실종자 가족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위법·부당하다.

기무사령부는 군 방첩이나 군사보안, 수사 등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 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집회·시위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김병철은 참모장이 세월호 관련 첩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무부대원들에게 민간인인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정보, 세월호 유가족 등이 조직한 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정보,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의 집회·시위 동향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수집·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는 부대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대원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계속하게 한 것인바, 명백히 위법·부당하다.

4 평가 및 한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기무사령관 이재수를 비롯한 소강원, 김병철 등 기무사관계자들이 자행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행위에 관하여,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 상당성이 모두 없는 행위로 명확하게 판단하였는바, 이에 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양형과 관련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 등 이들이 저지른 범행이 매우 중함에도, 죄질에 비하여 낮은 징역형이 선고된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기무사령부는 일찍이 ‘윤석양 사건’, ‘쌍용차 파업 사건’, ‘조선대 이메일 해킹 사건’ 등을 비롯하여 본연의 대공·방첩 업무를 벗어나 다수의 민간인을 사찰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이라는 행태의 연쇄를 끊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판결의 한계보다도 검찰의 반복적인 수사미진에 대해 목소리를 높힐 필요가 있다.

기무사령관 이재수로부터 직접 세월호 유가족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 받았던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에 대한 수사는 왜 진행되지 않았는가? 최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관련하여,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는 국군기무사령관 이재수로부터 직접 세월호 유가족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받았다. 박근혜는 위 보고서를 대면 또는 서면의 형식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이 본건 범행을 지시 내지 승인하였다고 단정하게 어렵다’,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불기소이유를 반복적으로 개진하였다.

과연 이러한 수사결과가 최선이었을까? 현재까지 공개된 관련 사건의 판결문, ‘기무사의혹 軍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만 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⁹⁸⁾.

마지막으로 ‘진짜 피해자’는 왜 항상 호명되지 않는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형법 제123조). 검찰은 유독 직권남용죄의 적용과 관련해서 조문을 반쪽짜리로 활용한다. 그것이 수사편의를 위한 것이든, 무엇이든 이 과정에서 진짜 피해자인 ‘세월호 유가족들’은 다시 장막 뒤의 존재가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실을 알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이 무수한 권리들을 침해한 그 범죄에 대한 것일 테다.

98) 위 자료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이 청와대 내부 분위기 등을 파악한 후 2014. 4. 18.경 “지휘참고자료”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기무사령관 이재수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BH에서는 세월호 사고가 국정(지방선거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등 청와대 분위기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기무사령관 이재수는 2014. 4. 23.경 부대원들에게 “청와대 보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니 각 예하 기무부대에서는 실종자 가족의 반항 등을 토대로 민·관·군 차원의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총 망라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던 사실, ③ 기무사령관 이재수는 2014. 4. 25. 청와대 주요직위자를 만나 세월호 참사 수습 방안을 보고한 후 기무부대원들에게 세월호 TF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지시한 사실, ④ 2014. 4. 28. 작성된 “세월호 침몰 관련 TF 운용계획” 문건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하는 상황을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기무사령부에서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사실, ⑤ 세월호 TF 대외제공 첩보처리팀에서 2014. 5. 초에 작성한 “정보보고” 문건에는 아래와 같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난여론을 우려하는 내용, 이와 같은 비난 여론을 치밀하게 관리하면서 대통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⑥ 기무사령관 이재수는 2014. 5. 13.경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을 상대로 한 보고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세월호 사고 관련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령부의 전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면서 세월호 TF를 확대 재편성하기도 한 사실, ⑦ 위와 같은 세월호 TF 증편 취지에 따라, 2014. 5. 13.부터는 1차장 박태규를 팀장으로 한 세월호 TF 현장지원팀에서 “세월호 관련 조치 동정” 문건을 매일 작성하여 이를 사령관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이미지 제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등 정치적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⑧ 세월호 TF 관계자들이 작성하여 기무사령관 이재수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보고한 문건에는 실종자 가족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 세월호 참사 후 진행된 각종 집회·시위에 관한 정보 등이 다수 기재되어 있던 사실, ⑨ 세월호 TF ‘군 내외여론관리팀’ 등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⑩ 기무사령관 이재수는 “정보보고” 문건의 내용을 검토한 뒤, 일주일여 약 1~2회씩 청와대 주요직위자를 만나 “정보보고” 문건을 전달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하였던 사실, ⑪ 기무사령관 이재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6. 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정부의 국민보호의무 소홀, 초기대응 미흡 등의 사유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당시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와 같은 정국을 조기전환하기 위한 출구마련과 VIP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관련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던 것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의 본건 범행에 대한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이 넉넉히 추단된다.

9

해경지휘부의 구조 책임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건 판결



해경지휘부의 구조 책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이정일 변호사

1 사건의 등장인물⁹⁹⁾

김석균(경찰공무원 경력¹⁰⁰⁾ 약 17년)은 2013년 3월경 해양경찰청장으로 근무하였다. 김석균은 세월호 사고 당시 수난구호법상 중앙구조본부의 본부장이었다. 중앙구조본부장은 수난·구호¹⁰¹⁾대책을 총괄·조정하는 임무를 담당했고, 이 임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 활동과 관련해서 광역·지역구조본부를 지휘·통제하고, 상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최상환(경찰공무원 경력 약 22년)은 2013년 4월경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서울고등법원 2019노1880 판결문(이하 '판결문'이라고 합니다) 제 17쪽에서 제 22쪽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또한, 이 원고는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한 것이고, 읽고 이해의 도움을 주기 위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하 필요한 경우에만 판결문을 인용합니다.

100)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이 된 시점에서 세월호참사 당시까지 근무한 기간을 계산한 것이고, 이러한 경력에 비추어 수난·구조 활동 관련하여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01) 수난·구호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를 하는 업무를 말한다. 구조는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수난구호법 제2조, 제3호, 제7호)

최상환은 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역할이므로 참사 당시 김석균 중앙구조본부장의 임무를 보좌하였다.

이춘재(경찰공무원 경력 약 21년)는 2013년 4월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이춘재는 세월호 사고 당시 중앙구조본부의 구성에 따라 중앙조정관¹⁰²⁾이자, 상황반장으로 종합상황실을 지휘·통제하는 등 김석균 중앙구조본부장을 보좌하였다.

여인태(경찰공무원 경력 약 23년)는 2014년경부터 해양경찰청 경비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여인태는 이춘재를 보좌하면서 중앙구조본부 구성에 따라 상황반원으로 해양사고 구조를 위한 정보 수집·전파 등의 활동을 담당하였다.

임근조(경찰공무원 경력 약 25년)는 2013년 12월경부터 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으로 근무하였다. 임근조는 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으로 김석균 중앙구조본부장과 중앙조정관이자 상황반장인 이춘재를 보좌하면서 상황처리와 총괄 관리하고, 소속 청 및 예하 기관의 상황실을 지휘·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김수현(경찰공무원 경력 약 33년)는 2012년 7월경부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근무하였다. 김수현은 세월호 사고 당시 수난구호법상 광역구조본부의 본부장이었다. 광역구조본부장은 수난·구호업무를 총괄·조정·지휘하며,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구조대 편성·운영과 구조 활동을 지휘·통제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김정식(경찰공무원 경력 약 25년)는 2014년 1월경부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으로 근무하였다. 김정식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사고에 따른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연안 해상교통관제(VTS) 업무했다. 김정식은 광역구조본부 구성에 따라

102) 임무조정관(SMC)은 수색 구조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로 수난구호법에 따라 해상치안상황실 상황담당관이 맡게된다. 임무조정관이라고도 한다. 중앙구조본부에는 중앙조정관(SMC), 광역구조본부에는 광역조정관(SMC), 지역구조본부에는 지역조정관(SMC)이라고 불린다. 임무조정관(SMC)은 조난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정확한 작전계획수립, 구조 자원의 효과적 배치와 조정능력이 요구된다.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중앙조정관(SMC)은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이춘재이고, 광역조정관(SMC)은 서해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김정식이고, 지역조정관(SMC)은 상황담당관 조형근이다.

구난조정관¹⁰³⁾으로서 김수현 광역구조본부장을 보좌하면서 그의 명에 따라 소속 구조대와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유연식(경찰공무원 경력 약 34년)는 2013년 1월경부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으로 근무하였다. 유연식은 상황담당관으로서 김수현 광역구조본부장을 보좌하면서 광역구조본부의 주요 상황처리 등 상황을 총괄·관리하고, 소속 청과 예하 기관의 상황실을 지휘·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김문홍(경찰공무원 경력 약 28년)는 2012년 12월 3일경부터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다. 김문홍은 세월호 사고 당시 수난구호법상 지역구조본부의 본부장이었다. 지역구조본부장은 관할해역에서의 수난구호업무를 소속 구조대 편성운영과 구조 활동을 지휘·통제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조형곤(경찰공무원 경력 약 31년)은 2014년 2월경부터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담당관으로 근무하였다. 조형곤은 상황담당관이면서 지역구조본부 구성에 따라 지역조정관으로서 지역구조본부의 주요 상황처리와 함께 총괄·통합 관리하고, 김문홍 지역구조본부장을 보좌하면서 그의 명에 따라 소속 구조대와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사건소개

세월호가 08:52경 왼쪽으로 넘어졌다.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은 2014년 4월 16일 08:54경(이하 ‘시각만 표시한다’) 세월호 승객인 고등학교 최00와 전화가 연결되어 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였다.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은 상황정보 문자전송시스템(KOSNET,

103) 구난조정관은 광역조정관(SMC)이라고 보면 된다.

이하 ‘코스넷’이라고 한다)으로 09:01경 해양경찰청 본청 상황실, 09:02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09:03경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09함에 ‘세월호 여객선 300여명 승선 침몰 중’이라는 사고 발생사실을 전파했다. 100톤급 연안경비정 123정은 08:57경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장 이병윤의 출동지시를 받았다. 123정은 09:32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계속 기울던 세월호는 09:47경 3층 왼쪽 갑판이 침수되었다. 10:10경 77.9도로 선체가 기울면서 전복되기 시작했다. 완전히 전복되기 직전인 10:17경 승객 박**은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 후 세월호는 10:30경 뱃머리(선수부)만 남긴 채 침몰했다. 그 결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고 있었던 단원고 학생과 일반 승객을 포함하여 304명의 생명이 희생됐다.

해경구조본부가 123정 또는 사고현장에 도착한 항공구조세력을 통해 퇴선명령을 지시하는 지휘를 하였다면 세월호 승객 모두가 살 수 있었다. 이 사건은 해상에서 여객선의 침몰 사고를 접수받은 해경구조세력이 무엇을 하여야 했는지를 다루는 것이다. 해경구조본부가 무엇을 하였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자 한 사건이다.

3 피고들의 기본적인 임무는 무엇이었는가?

구조본부장인 김석균, 김수현과 김문홍은 구조업무를 총괄·조정·지휘하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구조본부에서 보좌하는 것이었다. 임무의 내용은 선박의 침몰·침수·전복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사불란한 구조 활동을 위해 먼저 실시간 구조 상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파악된 정보는 구조본부와 출동한 구조세력에 공유·전파하며, 현장에 도착한 구조세력으로 하여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 한다¹⁰⁴⁾. 주변해역 대형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실시간 구조 상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신설정·유지하고(‘평상시 채널을 확보, 운영’), 파악된 정보를 공유·전파하는 것이었다.

4 세월호 사고가 접수된 후 출동한 구조세력은 누구이었가?

08:57경 123정은 세월호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123정은 09:32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100 톤의 123정에는 김경일 정장을 포함해서 13명의 승조원(1명 촬영 전담, 3명 의경 포함)이 타고 있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항공대 소속 B511 헬기(이하 ‘511 헬기’라고 한다)는 09:02 출동해서 09:26경 세월호 사고현장 상공에 최초로 도착했다. 511 헬기에는 기장 이외에 항공구조사 2명이 타고 있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항공대 소속 B512 헬기(이하 ‘512 헬기’라고 한다)는 09:10 목포항공대로부터 출동지시를 받고 09:45경 세월호 사고현장 상공에 도착했다. 512 헬기에는 기장 이외에 항공구조사 1명이 타고 있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항공단 소속 B513 헬기(이하 ‘513 헬기’라고 한다)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을 위해 09:00경 이륙하였다가 세월호를 구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09:32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513 헬기에는 기장 이외에 항공구조사 1명이 타고 있었다.

104) 판결문 제29쪽에서 제30쪽, 검사의 공소장 기재 내용이다.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CN-235 B703 초계기(이하 ‘초계기’라고 한다)는 09:10경 VHF 채널을 통해 진도VTS로부터 ‘병풍도 인근에 여객선 사고가 있으니 구조에 참여해 달라’는 교신을 듣고 09:28경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그밖에 09:18경 민간선박 둘라에이스호, 09:40경 어업지도선 전남 707호, 09:42경 민간선박 드래곤에이스 11호가 세월호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5 구조본부가 일사불란하게 현장지휘 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었는가?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이 가지고 있던 교신수단에는 코스넷, 주파수 공용통신 방식의 무선통신인 TRS(Trunked Radio System, 이하 ‘TRS’라고 한다)¹⁰⁵, 초단파(Very High Frequency) 무선통신기(이하 ‘VHF’라고 한다)¹⁰⁶, 경비전화, 어선공통망(Single Side-Band, 이하 ‘SSB’라고 한다)¹⁰⁷ 등이 있었다.

해양경찰청 본청 상황실 내부에는 전면에 멀티큐브(대형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상황실과 위기관리회의실에는 멀티큐브 등을 통해 코스넷 화면을 확인할 수 있고, TRS 단말기, 경비전화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105) TRS는 휴대전화와 무전기가 결합된 형태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같은 채널을 설정한 각급 해경관서 상황실, 경비함정과 헬기 사이에 그룹통신을 하는 방식의 교신수단이다.

106) VHF는 같은 채널을 설정한 해상교통관제센터(Vessel Traffic Service System, 이하 ‘VTS’라고 한다), 경비함정과 상선 등 사이에 그룹통신을 하는 방식의 교신수단이다. 통신 가능 거리는 약80해리~200해리이며 해경과 관제센터, 선박, 비행기가 수신·청취할 수 있다.

107) SSB는 중단파(파장 50~200미터의 전파)를 이용한 통신 장비로 교신 범위는 약100해리다. 어선들이 주로 사용한다. 국제조난주파수 2183.4킬로헤르츠에 맞추면 해경, 항만관제센터, 인근을 지나는 선박 모두 교신을 들을 수 있다. 세월호에도 SSB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세월호는 SSB로 제주VTS와 교신하였다. 해경지휘부 상황실에도 SSB가 설치되어 있었다. 교신수단으로 SSB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 내부에는 전면의 멀티큐브에서 코스넷 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고, TRS단말기, 경비전화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내부에는 전면의 멀티큐브에서 코스넷 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고, VHF 무전교신기, TRS단말기, 경비전화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3009함 조타실에서도 코스넷 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고, VHF 무전교신기, TRS단말기, 경비전화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한 123정에는 VHF 무전교신기, TRS단말기, 경비전화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상송출시스템(ENG 카메라)과 코스넷은 없었다. 구조헬기에는 VHF 무전교신기, TRS단말기 등이 비치되어 있었고, 초계기에는 VHF 무전교신기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6

각급 구조본부 또는 상황실이 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가. 구조본부 또는 상황실에 전달된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는가?

1)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지역구조본부 상황실에 해당)

08:54경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은 세월호 승객인 고등학생 최00와 전화가 연결되어 세월호가 기울었고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고를 접수했다.

09:04경 세월호 여객부 영업직원 강혜성으로부터 ‘배가 45도 기울어 움직일 수 없고,

상황파악 및 구명동의 착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았다. 09:06경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은 불상의 세월호 승객으로부터 ‘물에 잠기기 일보 직전으로 구명 동의를 입을 상황도 못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09:12경, 09:14경 및 09:22경 세월호 승객 등으로부터 ‘배가 지금 바로 넘어간다. 50도 이상 기울었다.’라는 내용의 122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은 다른 구조본부나 구조세력에게 그 신고내용을 전파하지 않았다¹⁰⁸⁾.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은 해상사고에 대응한 구조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침몰 중인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하지 않았다¹⁰⁹⁾.

2)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광역구조본부 상황실에 해당)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진도VTS는 09:07경부터 09:037경까지 VHF 채널 67번으로 세월호와 교신하였다. 진도VTS가 VHF 교신으로 알게 된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¹⁰⁾.

- (1) 너무 기울어져 있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09:10)
- (2) 지금 배가 많이 기울어져가지고 사람이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탈출시도가 어렵 습니다(09:14)
- (3) 지금 한 50도 이상 좌현으로 기울어져 사람이 좌우로 움직일 수 없다. 라이프자켓을 입었는지 확인 불가, 선원들도 브리지에 모여 지금 거동이 움직일 수 없다(09:17)
- (3) 좌우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서 벽을 잡고 겨우 버티고 있는 상태이 다(09:18)
- (4) 본선이 승객들을 탈출시키면 저희 다 구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09:24)
지금 탈출시키면 되면, 지금 탈출을 시키게 되면 구조가 바로 되겠습니까?
- (5) 선장님이 직접 판단하셔서 인명 탈출시키세요.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선장님께서 최종 판단을 하셔서 승객 탈출시킬지 빨리 결정을 내리십시오(09:25)

108) 판결문 제60쪽

109) 판결문 제68쪽에서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은 09:03경 및 09:04경 VHF 16번 채널로 세월호를 호출하였으나 교신이 되지 않았다.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요원 고성은은 09:10경 운항관리실을 통하여 선장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확인한 뒤 두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그 후 진도VTS에 전화하여 진도VTS가 세월호와 교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정확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110) 판결문 제45쪽~46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은 09:25경 진도VTS로부터 경비전화로 ‘세월호가 50도 정도 좌현으로 기울었고, 선장이 승객들의 비상탈출 여부를 해경에 문의한다’를 보고를 받았다. 유연식은 승객들의 퇴선 여부는 선장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¹¹¹⁾.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은 세월호 승객들의 퇴선 준비상황이 어떠한지, 결국 선장이 비상탈출을 결정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진도VTS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은 세월호와 교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 교신내용을 전파하지 않았다.

재판부도 초기 각급 구조본부가 112신고를 한 승무원이나 진도VTS를 통하여 선내 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하였더라면 대부분의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¹¹²⁾. 승객의 퇴선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정을 알았을 것이고, 지체없이 해상으로 투신하도록 하는 조치를 실행할 수 있었다는 이유이다.

3) 해양경찰청 본청 상황실(중앙구조본부 상황실에 해당)

해양경찰청 본청 상황실장 황영태¹¹³⁾는 09:19경~09:20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과 경비전화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세월호가 좌현으로 약 40~50도 기울어진 상황임을 인식하였다.

김경일은 09:36~09:37경 경비전화로 해양경찰청 상황요원 김남진에게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고, 구명벌도 투하한 것도 없고 아마 선박 안에 있나 봅니다.’라고 보고하였다. 09:38경 여인태에게 ‘갑판 위에 사람들이 한명도 안 보인다. 바다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

111) 판결문 제48쪽, 66쪽~67쪽, 재판부가 위와 같은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VHF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진도VTS 담당자(김민철)은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고, 유연식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 진술했다. 09:24경에 이어 바로 09:25경에 이루어진 교신 시각에 비추어도 보고하고 지시받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112) 판결문 제63쪽, 그러나, 재판부는 결론에 가서 해경구조본부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13) 검찰은 황영태를 기소하지 않아서 사건의 피고인은 아니다.

구명동의, 구명정, 구명벌은 그대로 다 있고, 하나도 투하 안했다. 배는 좌현으로 50도 기울었고, 지금 계속 더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다. 여인태는 김경일에게 ‘지금부터 모든 상황은 TRS로 다 실시간 보고하세요.’라고 지시하였다. 여인태는 본청 지휘에 그 보고내용을 전달하였을 뿐, 다른 구조본부는 물론 본청 상황실 내부에도 그 내용을 전파하지 않았다.

4) TRS와 코스넷으로 구조본부가 공유할 수 있었던 구조상황에 관한 정보

재판부는 TRS 등 무선통신망은 통화량이 급증하거나 주변 소음이 개입될 경우 교신 내용을 청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구조업무 지휘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¹¹⁴⁾. 그러나 위와 같은 재판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항공기를 실제로 타서 TRS, VHF 교신 상황을 검증한 경험과 상당히 다르다. 조사기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09:01~02경 코스넷으로 ‘침몰 중이라는 신고 관련입니다. 세월호 여객선 약 300여명 승선’이라고 사고 발생사실이 전파됐다.

09:04경 TRS로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은 ‘전남 관매도 남서 2.7마일에서 여객선 침몰 중’이라고 전파했다.

09:14경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은 코스넷으로 ‘신고내용은 침수되어 침몰 중이라는 사항’, 09:18경 ‘세월호 관계자 전화통화결과 현재 침수 중이며 침몰 위험으로 구조요청 한다는 사항’이라고 전파했다.

09:26경 최초로 사고현장에 도착한 511 헬기 부기장 김태호는 09:28경 TRS로 ‘배 우측 45도 기울어져 있고, 지금 승객들은 대부분 선상, 선상과 배안에 있음. 해상 위에는 지금 인원이 없고, 인원들이 선상 중간에 다 있음’이라고 보고했다.

114) 판결문 제81쪽

09:29경 123정장 김경일은 TRS로 세월호 사고현장 2마일 앞 해상에서 ‘좌현으로 45도 기울어져 있고 기타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보고했다.

나. 구조본부가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구조본부가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주변 해역 대형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른 구조본부의 기본적인 임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임무로 구조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세월호 등과 교신을 설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은 08:54경 세월호 사고를 접수하였다. 상황담당관 조형곤은 코스넷으로 09:01경 해양경찰청 본청 상황실, 09:02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09:03경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09함¹¹⁵⁾에 ‘세월호 여객선 300여명 승선 침몰 중’이라고 전파하였다. 이때부터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세월호와 VHF로, 출동 구조세력 상호 간에는 TRS 등으로 교신을 설정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었다. 해양경찰청 본청 상황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구조상황에 관한 파악된 정보를 서로 공유·전파하고, 관련 정보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구조지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은 09:04경 세월호 여객부 영업직원 강혜성으로부터 ‘배가 45도 기울어 움직일 수 없고, 상황파악 및 구명동의 착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정보를 공유·전파하지 않았다.

115) 목포해양경찰서장 김문홍은 09:00 512헬기를 타고 3009함 도착하였고, 09:03경 3009함 부장 박경채 경감으로부터 ‘맹골도 근해에서 여객선이 침몰 중입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은 09:06경부터 09:37분경까지 사이에 진도VTS가 세월호와 교신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09:24~25경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은 세월호와 교신하고 있다는 사실, 승객들의 비상탈출 문의를 한 사실 등을 공유·전파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 본청 상황실(여인태)은 세월호 사고현장에 도착한 09:36~09:37경 123정장 김경일로부터 경비전화로 ‘갑판 위에 사람들이 한명도 안 보인다. 바다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 구명동의, 구명정, 구명벌은 그대로 다 있고, 하나도 투하 안했다. 배는 좌현으로 50도 기울었고, 지금 계속 더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구조상황에 관한 결정적인 보고를 받고서도 공유·전파하지 않았다.

09:32경부터 09:44분경 사이에 450여 명의 승객들이 세월호 선내에 있다는 것과 세월호가 약 45~50도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세월호가 침몰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승객들이 선박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익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방송 장비 등으로 퇴선명령의 지휘를 해야 하는데도 해경구조본부장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피고인들은 그 누구도 퇴선명령을 지휘하지 않았다¹¹⁶⁾.

7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본부가 가동되었는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과 선박의 침몰·침수·전복 등의 각종 해상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되는 수난구호법령, 해상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주변해역 대형 해상 사고 대응 매뉴얼,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등을 종합하면, 수난구호 활동은 경중에 따라

116) 현장구조 세력으로 출동한 123정장 김경일에 대해서 광주고등법원(2015노177 판결문 제7쪽~제9쪽)은 사고현장에 도착한 2014. 4. 16. 09:30경부터 09:44경까지 사이에 123정 방송장비나 세월호 갑판에 승선한 123정 승조원을 통해 승객퇴선유도를 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유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해경으로서 이행하여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2015도610 판결문 제2쪽)은 이를 확정하였다.

상황대응반 운영 방식과 구조본부를 가동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수난구조법 제17조는 조난현장에서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중앙구조본부의 수난구조활동 관련 현장 지휘를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재판부는 09:10경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었다고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 09:10경 중앙구조본부장으로 김석균, 현장지휘자를 김수현과 김문홍, 상황반장을 이춘재, 상황반원을 여인태 등으로 하는 중앙구조본부를 가동하였다는 것이다¹¹⁷⁾.

그러나 세월호 사고 접수와 보고 후에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중앙구조본부를 가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도 많다.

우선 결정적인 구조상황에 관한 정보가 서로 공유·전파되지 않았다.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은 09:04경~09:12경까지 사이에 세월호 승객 등으로부터 얻은 ‘배가 45도 기울어 움직일 수 없고, 상황파악 및 구명동의 착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정보를 공유·전파하지 않았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은 진도VTS가 세월호와 교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유·전파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 본청 상황실(여인태)은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09:36~09:37경 123정장 김경일로부터 경비전화로 얻은 세월호 구조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전파하지 않았다. 출동한 구조세력, 특히 항공세력에 대한 지휘가 전혀 없었다. 또한 퇴선명령 등 구조지휘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누구도 퇴선명령 등 구조지휘를 하지 않았다.

둘째, 중앙구조본부를 09:10경 가동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구조 관련 지휘가 없었다. 중앙구조본부장 김석균은 09:28경 중앙구조본부 상황실에 입장한다. 지역구조본부장으로서 현장지휘를 맡은 김문홍은 3009함에서 09:57경까지 어떠한 지휘도 하지 않았다. 김문홍은 09:05경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으로 ‘123정장에게 직원들이 여객선에 직접 승선하여 구명벌 투하하고, 여객선 선내 방송으로 승객에게 퇴선명령 실시’를 지휘하였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김문홍은 자신의 지휘사항을 정당화하기

117) 판결문 제24쪽(검사 공소장), 판결문 제42쪽(재판부)

위해 3009함 함정일지에 기재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역구조본부장으로서 현장지휘를 맡은 김수현도 퇴선 명령이 유효적절한 마지막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 09:50경까지 어떠한 구조지휘를 하지 않았다.

셋째, 중앙구조본부장 김석균의 지시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중앙구조본부를 가동했다고 했던 09:10경보다 매우 늦었다. 09:28경 해양경찰청 상황실장 황영태가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상황지휘는 지방청에서 직접 하랍니다.’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09:34경 코스넷으로 다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현장지휘 바람’이라는 지시가 전달됐다. 해양경찰청 상황실은 09:37경 코스넷으로 ‘목포서장도 현장 복귀 지휘할 것’이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차례로 350여명에서 450여명의 승객을 승선한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고, 일사불란한 구조지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09:10경보다 너무 늦은 시각에 지시사항이 내려졌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넷째, 09:10경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었다고 본 증거자료인 ‘세월호 침몰 사고 중앙구조본부 운영계획’문서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앙구조본부가 구성되었다면 중앙구조본부의 구성에 따라 중앙조정관인 이춘재를 보좌할 임무가 있었던 여인태는 재판과정에서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된 사실이 없고, 그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세월호 사고 접수와 보고 후 해양경찰청 본청 등에 상황대응반이 운영되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조난현장에서 가동되어야 할 수난구호법 제17조가 말하는 구조본부(중앙, 광역, 지역)가 실제로 가능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 보아야 한다. 실제로 구조본부(중앙, 광역, 지역)가 가동되지 않았다면 피고들의 책임을 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구조상황에 관한 정보가 다른 구조본부에 서로 공유·전파되지 않았던 사정, 출동 구조세력에 대해서 구조상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거나 공유·전파가 필요한 상황에서

구조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 등은 구조본부(중앙, 광역, 지역)가 가동되지 않았다고 볼 때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8

123정은 09:16경 현장지휘관(OSC)로 지정되었는가?

해상수색구조 메뉴얼에 따르면 현장지휘관(OSC)은 ① 조난선박으로부터 선박 위치, 승객 수, 희생자 수 등 정보 수집, ②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 장비의 지속적인 청취, ③ 조난 선박 퇴선여부, 구명조끼 착용여부 파악 등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고현장으로 이동 중 09:16경 123정이 현장지휘관으로 통보받았다고 보았다. 검사가 123정장 김경일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특별한 고민 없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탓이다. 09:16경 현장지휘관(OSC)으로 지정되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123정장 김경일은 하지 않았다. 무능을 넘어서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23정장 김경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장지휘관을 통해 구조임무를 부여한 임무조정관 등 구조본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과 연결된다.

해상수색구조 메뉴얼에 현장지휘관(OSC)에 관한 지정권한은 임무조정관에게 있다. 09:10경 구조본부(중앙, 광역, 지역)가 가동되었다면 임무조정관(SMC)으로 중앙조정관(SMC) 이춘재, 광역조정관(SMC) 김정식, 지역조정관(SMC)은 조형곤이있었다. 이들은 123정장 김경일을 현장지휘관(OSC)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현장지휘관(OSC)의 역할은 구조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지정 되도록 해야 하고, 다른 구조본부 또는 출동 구조세력에게도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따라서, 09:16경 123정장 김경일이 현장지휘관(OSC)으로 지정되었는지는 좀 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은 09:16경 123정 김경일을 현장지휘관(OSC)으로 지정한 것 이외에 구조지휘와 관련해서 특별히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09:16경 123정장 김경일이 현장지휘관(OSC)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구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세력이 현장지휘관(OSC)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해상수색구조메뉴얼에 따라 09:32경부터 123정 김경일은 현장지휘관(OSC)이 된 것은 맞다.

9

검사는 피고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물었는가?¹¹⁷⁾

첫째는 피고들은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세월호와 교신하여 상황을 파악·전파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승객들을 퇴선 시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123정장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09:32경부터 구조가능성이 상당한 09:50경까지, 세월호와 교신하거나 세월호에 123정 승조원을 승선시켜 승객들을 퇴선하도록 조치하거나, 123정 대공마이크로 퇴선명령을 내려 세월호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승객들을 퇴선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118) 판결문 제70쪽~71쪽

10 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재판부는 사고인지 이후 123정이 현장에 도착한 09:32경까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123정이 현장에 도착한 09:32경부터 09:50경까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이것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맞추어 판단한 것이다.

가.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은 세월호 선장의 연락처로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3009함 조타실은 세월호와 사이에 통달 거리가 멀어 VHF가 교신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었다.

진도VTS는 09:07부터 09:37경까지 세월호와 VHF 67번으로 교신하여 세월호 구조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서해해양경찰청 상황실(유연식)에게 보고하였고, 09:24경 세월호 탈출 문의에 선장이 결정할 문제로 답변하였다. 결국, 진도VTS와 서해해양경찰청 상황실은 세월호에서 어느 정도의 퇴선준비가 이루어졌고 퇴선 여부의 결정만이 남은 상태였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서해해양경찰청 상황실 유연식 또한, 09:25경 즉각적인 퇴선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사고인지 이후 123정이 현장에 도착한 09:32경까지 세월호와 교신을 통하여 자세한 선내 상황을 파악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TRS 교신을 통해 구조헬기 등이 세월호의 승선원 수나 침몰상태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각급 구조 상황실과 구조세력 사이에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항공구조세력을 통한 인명구조에 한계를 가져왔다.

따라서 123정과 항공구조 세력 등 개별 구조세력과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기술적 수단 및 제도적 보완책을 촉구함을 넘어서서 구조 임무와 관련한 피고들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나. 구조세력 현장 도착 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09:37경 진도VTS에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 시도하라고 방송하였다’라고 교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방송을 하지 않았다. 세월호 선장은 그 이후에 진도VTS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고, 09:46경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임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세월호에 접안한 123정 구조단정에 탑승하여 탈출하였다.

09:28경 511 헬기 보고, 09:29경 사고현장 도착 전 2마일 지점에 이르러 한 123정장 김경일의 보고 등은 구체적인 현장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고만으로 피고들은 세월호의 승객들이 퇴선준비를 하지 않은 채 선내에 잔류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기는 어려웠다. 09:28경 511헬기의 교신내용에 의하면 승객들이 선상 중간에 집결해 있거나 선내에서 퇴선을 위한 대기하고 있다고 오인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123정장 김경일이 09:44경 TRS로 ‘승조원을 세월호에 승선시켜 퇴선을 유도하겠다’라고 보고하고도 그 후 세월호가 침몰에 이르기까지 승소원들에게 세월호 갑판에 올라갈 것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09:48경 TRS로 ‘50명 정도가 본함에 승선하였고, 계속 구조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123정의 승조원들이 선내에 진입하여 승객들을 차례로 퇴선시키고 있다고 상황을 오인하였을 것이다.

구조세력들이 현장에서 구조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한 데에는 평소 해경에서 대형 선박의 조난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침몰하는 선박에 진입하여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해본 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조직 상급자로서 관리책임에 관한 질책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구조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 결국, 형사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 책임의 근거가 없다.

또한 세월호의 복원성 부족, 고박 불량, 과적뿐 아니라 수밀문 개방 등 선체 내부결함으로 인하여 구조세력 현장 도착 후 불과 20분 만에, 특히 123정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보고한 09:38~09:44경부터 약 10분 남짓한 시간 만에 선내진입을 통한 구조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하고 대비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다.

11 재판부 판단의 잘못은 무엇인가?

가. 침몰상황의 급박성에 대한 인식

전복사고 발생 시 선박 내에 잔류하는 인명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인명 구조 작업은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전복상태에 따라 유효적절한 구조계획이 수립되고 일사불란하게 지휘통솔되어야 한다.

09:01경 이후에 코스넷으로 전파된 정보는 순차로 350명에서 450명이 승선한 세월호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는 것이었다. 09:18경 코스넷으로 ‘세월호 관계자 전화통화결과 현재 침수 중이며 침몰 위험으로 구조 요청한다는 사항’이라고 전파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100톤급 경비정인 123정에 승선시키는 구조활동이 펼쳐지더라도 450명 이상의 승객을 123정에 모두 태울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침몰상황에서 450명을 구조할 수 있는 구조방안을 강구해야 했었다.

09:26경 최초로 사고현장에 도착한 511 헬기가 09:28경 TRS로 ‘배 우측 45도 기울어져 있고, 지금 승객들은 대부분 선상, 선상과 배안에 있음. 해상 위에는 지금 인원이 없고, 인원들이 선상 중간에 다 있음’이라고 전파했다. 세월호가 45도로 기울어져 있고, ‘선상

과 배안에 있다. 해상 위에는 인원이 없다'라는 정보는 퇴선조치를 하지 않으면 세월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시키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구조상황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123정장 김경일의 재판에서 광주지방법원은 즉각적인 퇴선명령이 유효적절한 조치라고 보았다. 피고들에게도 적용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침몰상황의 급박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이다.

각급 구조본부가 사고 접수 직후부터 교신을 설정하고 교신을 유지하였다면 선내에 잔류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피고들은 인식할 수 있었다.

123정장 김경일 재판에서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이 모두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 책임으로 인정한 근거는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즉, 123정장 김경일은 09:02경 VHF 16번 채널로 세월호를 3회 호출하였다가 교신이 되지 않자 더 이상 호출하지 않았다. 교신이 되지 않는다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 회신한 후에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다. 반면에 세월호가 09:26경과 09:29경 VHF 16번 채널로 해경을 호출하였는데, 당시 123정은 3마일 이내라서 통신상태가 양호하였을 것인데도 세월호 호출을 수신하지 못했다.

123정장 김경일이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이라면 다른 강구책을 시도해야 됨에도 피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09:06경부터 09:37경까지 진도VTS가 세월호와 교신하고 있으므로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담당관 조형근과 3009함에 승선한 지역구조본부장 김문홍은 진도 VTS가 파악한 정보에 따라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피고들은 인식할 수 있었다.

나. 구조상황에 관한 정보가 공유전파된 경우에 침몰상황의 급박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 외면

피고들에게 묻는 책임은 마땅히 해야하는데도 하지 않는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지휘를 하거나 이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피고인들이 이행했다면 알았을 정보를 토대로 침몰상황의 급박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었는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23정장 김경일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보고한 09:38~09:44경부터 약 10분 남짓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침몰상황의 급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고려했다.

그러나 현장으로 출동하는 123정장 김경일과 달리 피고들은 123정, 출동한 구조 인력, 관제센터 등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전파하며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할 수 있었다.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09:04경 세월호 여객부 영업직원 강혜성으로부터 ‘배가 45도 기울어 움직일 수 없고, 상황파악 및 구명동의 착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정보를 공유·전파하였다면, 퇴선명령만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판단이 가능했고, 세월호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123정에게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퇴선조치와 관련한 지휘를 할 수 있었다. 진도VTS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이 세월호와 교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09:24경까지 파악된 퇴선문의 등 그 교신내용을 전파하였다면 피고들은 침몰상황의 급박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었다. 피고들이 마땅히 해야 됴에도 하지 않는 결과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의 책임이다.

다. 오인가능성에 대하여

재판부가 언급하는 오인가능성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재판부의 논리대로 라면, 해상에서 생명·안전에 위기에 처한 승객들은 구조세력의 오인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된다. 다른말로 하면, 구조지휘를 하는 책임있는 구조세력이 퇴선 명령 등이 필요한지 오해할 수 있으므로, 위기에 처한 승객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123정장 김경일 재판에서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123정장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세월호가 45~50도로 기울어져 있었고, 해상에 아무도 없었다면, 승객들이 선내에 있으며, 퇴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가능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09:29경 511헬기가 TRS ‘세월호가 45~50도로 기울어져 있고, 해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침몰상황의 급박성**이 전파되었으므로, 피피고들은 퇴선명령을 포함한 구조지휘를 했어야 한다.

설령 09:44경 123정장 김경일이 TRS로 ‘승조원을 세월호에 승선시켜 퇴선을 유도하겠다.’라고 보고하였더라도 즉각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등의 지휘했어야 했고, 09:48경 123정장 김경일이 TRS로 ‘50명 정도가 본함에 승선하였고 계속 구조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더라도 123정의 규모에 비추어 해상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확인해서 오인가능성을 없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라. 소결

국민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접수하고서도 구조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교신설정과 교신을 유지하는 등의 노력으로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정적인 구조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전파하였다면 피고들은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파악한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전파하지 않았다. 09:29경 511헬기가 TRS‘세월호가 45~50도로 기울어져 있고, 해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침몰상황의 급박성**이 전파되었고, 중앙구조

본부는 09:38경, 광역과 지역구조본부는 09:44경에는 승객들이 선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였는데도 123정의 대공마이크로 퇴선명령을 지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123정장이 09:32경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도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이 없고, 현장에 도착한 09:32경부터 구조가 가능한 09:50경까지 퇴선명령 등 구조지휘를 하지 않았던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가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요 근거로 내세운 ‘오인가능성’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일사불란에게 구조지휘를 해야 할 해경(출동세력 또는 지휘부)에게 면책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명·안전의 위기를 가져오는 재난 상황에서 빠진 국민이 구조세력의 오인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당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II

국민고소고발 추진단

1

경과보고



경과보고

민변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경과 및 대리인단의 활동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민변은 세월호참사대응TF를 개설하여 진상규명과 피해 가족 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정식으로 고소고발 하자는 취지로 2019년 9월경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요청 및 내부논의를 통해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 소속 변호사들과 기타 민변 회원 변호사들이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속)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고소고발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고소고발 대리인단은 이정일 변호사(단장), 문은영, 서채완, 조세현, 전다운, 오민애, 서성민, 조은호, 황호준, 전범진, 이윤주, 류하경, 조영관 변호사다(이상 13명).

참사 이후 5년 동안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던 가족들로서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서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미 언론, 각종 국회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수사과제가 드러나 있었기에 별도의 고소고발을 계획하지 않았었다. 여전히 국가를 어느 정도는 믿었다. 그러나 촛불정국 이후 문재인 정부 역시 세월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조사 활동에 미온적이었다. 그래서 유가족과 국민이 당사자가 되는 정식 고소고발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 법리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고소고발장을 수사기관의 턱밑에 가져다주어 이제는 누구도 진실을 피할 수 없도록 하자는 의미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등은 2019. 11. 2. 광화문 광장에서 ‘11.2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를 열고 △ 대통령, 청와대, 정부책임자 △ 현장구조, 지휘자 △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세력 △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 세월호 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 등 5개 분야에서 각 가해자들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위 고소고발인 대회 며칠 뒤인 2019. 11. 11.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을 출범했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고소고발은 총 3차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 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 고소고발]

- **접수일** : 2019. 11. 15.
- **고소고발인** : 총 54,416명 (피해자 가족(고소인) 377명, 대표 고발인 113명, 국민고발인 5만 3926명)
- **피고소고발인** : 박근혜, 황교안, 김기춘 등 40명 (△ 대통령, 청와대, 정부책임자 △ 현장구조, 지휘자 △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세력 △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 세월호 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 등 5개 분야에서 이 1차로 선별한 40명)
- **적용혐의** : 살인(미필적고의),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작성 등

[2차 고소고발]

- 접수일 : 2019. 12. 27.
- 피고소고발인 : 기무사 참모장, 박근혜, 조대환 등 47명 (△ 기무사 불법사찰 책임자
△ 감사원 감사보고서 조작 책임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자 △ 선내방송 책임자)
- 적용혐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3차 고소고발]

- 접수일 : 2020. 7. 13.
- 피고소고발인 : 남재준, 이병기, 김수민, 기타 국정원 직원들 (△ 국정원 불법사찰 책임자)
- 적용혐의 :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책임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수차례 진행했다 (기무사, 국가기록원, 기재부, 행안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대검, 해경 등 구조책임 경찰 기구 10여곳 등).

수사결과 현재까지 기소된 사안은 아래와 같다.

- 김석균 외10 (2020고합128) 구조책임자들
- 김영석 외9 (2020고합412)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자들

고소고발 대리인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관련 사건들 13건에 대하여 팀을 나누어 방청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기록화 하고 있다. 이미

선고가 된 세월호 관련 판례들에 대해서는 분석작업을 하여 세미나 형식으로 연구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은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충분히 완료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

고소고발요지



고소고발요지

세월호참사 국민 고소·고발 내용 요지

1 제1차 국민 고소·고발(2019. 11. 15.)의 요지

가. 대통령, 청와대, 정부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대통령, 청와대, 정부 책임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순간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대통령은 참사 당시 8시간 동안이나 국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국가안보실, 비서실 등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대응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함으로써 세월호 참사를 야기하였다. 이에 국민고소고발인 54,416명은 2019. 11. 15. 대통령, 청와대, 정부 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고발을 진행하였고,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순번	피고소·고발인	고소·고발 행위 및 죄명
1	박근혜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상구조법위반죄(수난구호 방해)
2	김기춘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수상구조법위반죄(수난구호 방해)
3	김장수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수상구조법위반죄(수난구호 방해)
4	우병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5	황교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소·고발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당일인 2014. 4. 16.경에는 물론이고,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시점 이후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어떠한 회의도 주재한 적이 없음. -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을 지휘 및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고, 최초보고 당시 세월호 참사의 결과 발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기 충분했음에도 그 역할을 하지 않음. -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피고소인의 약속에 반하여, 대통령으로서 행정 각부의 지휘 통할하는 지위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강제해산 조치에 관해 총괄적으로 지시하고 묵인함. - 세월호 사고 당일 09:20경부터 세월호가 침몰한 10:30까지 약 3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국가안보실은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명목으로 구조현장을 볼 수 있는 영상을 여러 차례 요구함으로써 현장 구조작업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19경 YTN 보도를 통해 세월호 사고를 인지하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청와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가 계속 전파되고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국가위기상황실에 입장하도록 권유하거나 국가위기평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일체의 위기대응 역할을 하도록 보좌하지 아니함. -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을 지휘 및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고, 최초보고 당시 세월호참사의 결과 발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기 충분했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그 역할을 하지 않음. -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약 3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명목으로 구조 현장 영상을 요구함으로써 현장 구조작업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세월호참사 관련 보고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위기관리 기구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아니함. - 세월호참사 당일 09:20경 국가안보상황실-해경 핫라인을 통해 해경본청 상황실로부터 사고 발생 상황을 확인하였음에도, 초동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세월호 침몰상황과 선내진입, 퇴선유도(퇴선명령 포함) 준비가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퇴선명령이 필요한 상황에서 퇴선명령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아 304명이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함.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세월호 사고 당일 약 3분 간격으로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에 대통령 보고 명목의 구조현장 영상을 여러 차례 요구함으로써 현장 구조작업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함. 피고소인 김장수는 국가안보실의 장으로서 위 수난구조 방해행위를 직접 지시하고 실행한 책임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6.경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역임하던 중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위 검찰 수사팀들의 수사를 방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7.경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구속영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였음.

나. 현장 구조, 지휘 세력에 대한 고소·고발

국민고소고발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생명을 구조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초동조치의 중요성, 적극적인 구조활동에 전념할 의무 등을 상기시키고자 고소·고발을 진행하였고,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순번	피고소·고발인	죄명 및 고소·고발 요지
1	김석균	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순번 1~6, 14, 15) - 광주고등법원 제6형사부(2015노1776)는 “해경지휘부나 사고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정. - 해경지휘부는 ① 적극적으로 구조지휘에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고, ② 적극적으로 세월호 선내진입 지시 또는 퇴선명령 지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304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결과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함.
2	이춘재	
3	김수현	
4	유연식	2. 3009함, 청장 헬기 등 응급조치 미이행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순번 1, 3, 5) - 해경지휘부가 해경지휘부를 위해 출동한 헬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단원고 학생에 대해 긴급이송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3009함에서 P정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해경지휘부는 응급처치 ¹¹⁹⁾ 등의 응급의료행위가 중단되거나 목포한국병원에 늦게 도착하게 되어 위 학생이 사망한 결과에 책임이 있음.
5	김문홍	
6	조형근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순번 1, 5) - 목포해양경찰서장 김문홍과 해양경찰청장 김석균은 2014. 4. 28. 123정장과 승조원들로 하여금 「방송장치로 승객 여러분 총원 바다에 뛰어내리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를 수회 실시했습니다.」라는 허위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함, 이는 허위내용으로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것임.
7	김경일	
8	양희철	

119) 환자응급처치: 단순한 정서적 지원에서부터 심폐소생술, 제세동까지 포함된다.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을 다루고 환자소 생을 돕기 위해 훈련을 받고 이를 수행하는 행동이다(응급구조사 업무지침 제 16쪽).

9	김재전	<p>4. 허위공문서작성죄(순번 1, 2, 5,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5. 30경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이춘재가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해양경찰청장 김석균이 결재함. 위 문건 내용에는 퇴선 명령이 있지도 않았는데도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가공됨. 123정장 김경일은 허위공문서작성행위에 적극적으로 간여한 공동정범임. - 김문홍은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에 예상되는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에 대응하려는 등의 의도로 3009함 항박일지에 “선장이 퇴선방송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대공 스피커로 퇴선방송 실시”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토록 함. <p>5. 직무유기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순번 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청의 직속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 피고소인 이주영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고받은 09:05경부터 10:06경까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에 관한 수사가 필요함.
10	고영주	
11	강두성	
12	이교민	
13	이재두	
14	최상환	
15	고명석	
16	이주영	

다. 세월호참사 조사방해 세력에 대한 고소·고발

국민고소고발인들은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지닌 신원권을 바탕으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방해한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 위원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의 특조위 강제해산은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를 처벌을 중단하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순번	피고소·고발인	고소·고발 행위 및 죄명	
1	김영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2	유기준		
3	최경환		
4	유일호	세월호특별법위반죄	
5	연영진		
6	김남규		
7	박근혜	업무방해죄	
8	황교안		
9	성명불상 정무직 공무원		
10	성명불상 일반직 공무원		

고소·고발요지

-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일반적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하여 파견 공무원 복귀, 인원감축 및 조정 통보, 예산 미편성 및 사용제한, 사무실·홈페이지 폐쇄 등의 방법(이하 ‘강제해산 행위’)으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잔여 활동기한(약 보고서 작성기한 포함 약 11개월) 간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피고소인 유기준은 특별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위법하게 축소해석하고, 피고소인 최경환은 위 유기준의 발표를 토대로 특조위가 2016. 6. 30. 종료된다는 전제 아래 편성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피고발인 김영석, 유일호는 피고발인 유기준, 최경환의 부당한 특별법 해석 및 예산 배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통해 특조위에 대한 강제해산행위를 집행하였음.
- 피고소인 박근혜는 강제해산행위 과정에서 언론 등에 특조위가 2016. 6. 30. 종료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피고소인 황교안 또한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2016. 6. 30. 종료되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특별법 제43조 제1항 및 제51조는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특조위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피고소인들이 특조위에 대해 활동을 종료하지 않을 시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거나, 2016. 6. 30. 이후 기존의 배정된 예산도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고지는 특조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협박 행위에 해당함. 나아가, 피고발인들의 특별법에 대한 부당한 해석과 집행은 특조위 소속 공무원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하는 행위로 위계행위에 해당함.
- 피고소인들은 중앙행정기관을 통할하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 국무총리 특조위의 운영,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들로, 지위에 의한 압박을 통해 특조위의 직무집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음.
-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규율하는 업무에 ‘공무’를 포함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에 의한 압박도 포함됨.

라.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 고소·고발

언론인은 진실 보도·공정 보도의무를 그 사명으로 하고, 특히 재난 상황에서 언론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 상황과 구조상황을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세월호참사 당일 이러한 언론인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방기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원구조’오보를 속보로 내보냄으로써 현장 상황 파악과 이를 통한 구조 업무의 방해로 초래한 언론사의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으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순번	피고소·고발인	고소·고발 행위 및 죄명	고소·고발 요지
1	안광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구조’라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304명의 희생자들이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구조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위계에 해당함. - 현장취재 기자가 전원구조가 오보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묵살(MBC- 안광한, 박상후, 김장겸, 이진숙). - 현장 상황을 알 수 없는 해경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마치 현장의 상황을 파악한 것처럼 왜곡하여 전원구조의 오보를 하였던 책임(KBS- 길환영, 김시곤)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최초로 ‘전원구조 오보’를 하여, 이후 관련 보도가 지속하도록 함(MBN- 장승준, 이동원).
2	박상후		
3	김장겸		
4	이진숙		
5	길환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같은 위계로 인하여, 형성된 허위사실이 유포됨으로써 참사 당시 인근 어선 등 민간 구조 세력의 구조 업무, 그리고 타 방송사의 사실관계 파악 및 보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
6	김시곤		
7	장승준		
8	이동원		

마. 세월호참사 피해자 비방, 모욕 관련 고소·고발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은 피해당사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당연히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진실을 밝혀 그 진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경련 등은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에게 비방, 모욕, 조롱을 일삼았고, 이는 공동체의 유대와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인권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에 국민고소고발인들은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하는 단체들 및 그 단체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전경련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하였고,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순번	피고소·고발인	고소·고발 행위 및 죄명	고소·고발 요지
1	허창수	업무상배임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경련은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엄마부대의 활동과는 그 설립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법인 명의의 계좌로 2012. 1월경부터 2015. 5월경까지 사이 어버이연합으로 총 5억 2,3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단체들의 위법행위를 지원하였는바, 전경련 등은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함.
2	심인섭		
3	주옥순		

2 제2차 국민 고소·고발(2019. 12. 27.)의 요지

가. 기무사 관련 책임자 고소·고발

피고소인들은 그간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부 책임자에 대해서만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법적 판단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는 단순히 소속 부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①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여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② 이를 첩보문건으로 만들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까지 보고하였으며, ③ 유가족 사찰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보수단체에게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일시 등을 제공하여 ‘맞불 집회’를 독려하는 등 광범위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다.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고발 요지는 아래와 같다.

순번	피고소· 고발인	고소·고발 행위 및 죄명	고소·고발 요지
1	박근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민감정보 처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소인들은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정하여진 기무사 직무범위의 한계를 벗어나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기 위하여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의 성명과 직업, 소속, 정치적 성향, 정당의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를 수집, 기록, 저장, 이용, 제공 등의 행위를 하였음. - 위 개인정보 중 정치적 성향, 정당의 가입 여부 등은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의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그 처리가 엄격하게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처리함. - 나아가 위와 같은 첩보를 문건으로 정리하여 청와대 관계자들(피고소인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지휘·감독을 받음.
2	김기춘		
3	김장수		
4	김관진		

5	한민구	업무방해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고소인들은 안산지역 단원과 선·후배 및 지역 주민들의 촛불추모제 등을 ‘반체제 징후’로 보고,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자 전개한 1,000만 명 서명 운동 등을 중복세력이 연계된 ‘대정부 총공세’로 여겨, 보수세(력) 결집을 통한 조직적 맞대응을 지시함. - 세월호 추모집회 등 ‘좌파’ 및 진보단체들의 집회·시위 첩보를 수집하여 보수세력에게 제공하면 보수세력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 -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덧붙인 채 언론에 유포하는 방법으로 수색 및 인양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며, ‘부정적 여론을 이용하여 유가족의 수색 포기를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진상규명 등 업무를 방해함.
6	김대열		
7	지영관		
8	소강원		
9	김병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10	손정수		
11	박태규		
12	성명 불상 부대원 ¹²⁰⁾		

나. 대통령, 청와대, 정부 책임자 고소·고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김기춘 비서실장은 모든 사정 기관을 동원하여 정부 및 청와대의 책임이 제기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된 헌법기관

120) 국군기무사령부 1처, 정보융합실, 정보보안반, 예하 제610 및 310 부대의 소속 부대원들

으로서, 공정한 감사결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구조업무를 해태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적절한 징계를 요구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대한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고발 요지는 아래와 같다.

순번	피고소·고발인	고소·고발 행위 및 죄명	고소·고발 요지
1	김기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기춘 비서실장은 해경 구조책임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되어 2014. 10. 6.경 수사 발표를 앞두고 있었고, 감사원도 세월호 사고 관련 감사를 진행하여 2014. 8. 말 최종 감사결과 발표가 예정되고 있었음. 이에 피고소인 김기춘은 2014. 8.경 감사원으로부터 2014. 7. 8.경 발표한 중간 감사결과보다 더 진전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입수하였고, 2014. 9. 1. 황찬현 감사원장으로부터 이를 보고 받은 뒤에 정부·청와대의 책임으로 제기될 수 있는 감사내용에 대해서 제외하라는 외압을 행사함. 세월호 감사와 관련하여 2014. 9. 1. 감사보고 과정에서 황찬현 감사원장과 김기춘 비서실장은 정부·청와대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는 감사내용을 빼기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아 해당 부분의 수사를 촉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7. 8.경 발표한 중간감사결과보다 더 진전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정부·청와대의 책임으로 제기될 수 있는 감사내용을 빼고, 2014. 10. 2. 최종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허위공문서 작성죄	
2	황찬현	국회증언 감정법위반 (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고소인 황찬현은 2014. 7. 4. 서면으로 수시 보고한 적은 있으나, 그 외에 세월호 감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보고한 적이 없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함. 그러나 2014. 9. 1.자 故 김영한 업무일지에 “長 ◦ 감사원장 報告 -off the Record로 할 것”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허위의 증언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세력 고소·고발

참사 시점에서 시간이 경과 할수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사 및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소·고발인들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독립기관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강제해산 시킴으로써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방해행위를 통해 유가족들의 신원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고발 요지는 아래와 같다.

순번	피고소·고발인	고소·고발 행위 및 죄명	고소·고발 요지
1	박근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고소인 김재원은 2019. 1. 16. 특조위 설립준비단 내부에서 확정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설립 추진현황’문건을 발표하며 특조위가 ‘세금도둑’이라 발표하였고, 피고소인 조대환, 연영진, 김남규는 위 문건을 피고소인 김재원에게 유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소인의 위 발표행위에 적극 가담함. -김재원의 위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특조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그 과정에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피고소인 조윤선 등 청와대 비서실이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2	김재원		
3	조대환		
4	연영진		
5	김기춘		

6	조윤선	공무상 비밀누설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고소인 조윤선, 김재원, 조대환,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김남규, 연영진 등은 2015. 1. 19. 플라자 호텔 회동을 통해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을 “슬림화” 함으로써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축소하기로 결의하고, 특조위 해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당시 청와대 및 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직제·예산안을 추진하는 등 특조위의 설립준비를 방해하였음. - 위 플라자 회동은 피고소인 조윤선이 주재한 회의로,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 축소를 통한 특조위 무력화는 청와대의 방침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박근혜, 김기춘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병기, 현기환, 한정택 등도 위와 같은 방침 아래 특조위의 무력화를 각 정부 부처에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 - 위 결의 내용의 실행행위로는 당초 특조위의 정원이 120명임에도 이를 90명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등 특조위 의사에 반하는 시행령의 제정, 국무회의 의결과정에서의 예산 삭감, 활동기간 축소 행위 등이 있음. 위 행위를 구체적으로 집행한 자는 유기준, 김영석, 차경환, 유일호임.
7	고영주		
8	석동현		
9	차기환		
10	이헌		
11	김남규	세월호 특별범위반 (위계에 의한 직무집행방해, 비밀누설)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조위가 2015. 8. 4. 출범하기 전후로 특조위가 의사결정과정을 하거나 청문회를 진행할 때 보수단체가 지속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였음. 이는 정무수석비서관의 지위에 있던 조윤선, 현기환 등이 보수단체에게 특조위의 조사방해 및 조기 해체를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지원, 독려한 것으로 추정.
12	현기환		
13	현정택		
14	이병기		
15	김영석		
16	최경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음. 가령, 특조위 내부자료를 유출하거나, 홈페이지 강제폐쇄 등 특조위의 원활한 행정업무 운영에 협조를 하지 않는 등 특조위의 조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함.
17	유일호		
18	유기준		
19	임현택		
20	성명불상 공무원		

라. 해경 등 구조세력 고소·고발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현장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직무상 책임을 수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이들이, 자신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방기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당시 구조의무를 부담하는 이들 중 극히 일부만 기소되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름하지 못하였기에, 국민 고소고발인들은 해경 등 당시 구조의무를 부담하였던 자들을 고소·고발하였고,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순번	피고소· 고발인	고소·고발 행위 및 죄명	고소·고발 요지
1	임근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청 및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관계자 - ‘해상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여객선(세월호) 침몰 관련 광역구조대책본부 운 영계획’,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매뉴얼’ 등에 의하면, 해양경찰청(임근조), 서해지방해양경찰청(김정식, 류명호, 김민철), 목포해양경찰서(백남근, 이병운, 박신영, 문명일)의 상황실 책임자 및 담당자들은 상황실을 관장하면서 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보고 및 전파할 의무를 부담함. -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교신을 통해 세월호가 급속히 기울고 있고 선체 밖에 승객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퇴선 명령을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30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함.
2	김정식		
3	김종인		
4	박성삼		
5	이형래		
6	박상욱		

7	김형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 VTS 센터 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TS 센터는 관제구역 내에 선박의 이동 경로를 수시로 추적, 확인하고, 상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당일 오전 7시 8분경 관제구역 내에 세월호가 진입하였을 때 세월호로부터 진입보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동선 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위와 같이 진도 VTS 센터 관계자들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해경 상황실, 지휘부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는 등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 • 123정 승선자(부장, 항해팀장, 전기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정은 당시 현장지휘함으로 지정되었고,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전파하여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123정은 이동 중 한차례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한 후 응답이 없자 이후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교신하지 않았고, 세월호로 진입한 이들 또한 선내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거나 퇴선 지시를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함.
8	정영민		
9	황영태		
10	류명호		
11	김민철		
12	백남근		
13	이병윤		
14	박신영		
15	문명일		

마. 선내 구조 방해세력 고소·고발

세월호 선원인 강혜성은 수난구조법 제18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해 세월호 승객을 구조해야 할 법률상 의무, 세월호 승객을 출발지인 인천항에서 목적지인 제주항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계약상 의무, 해운법에 근거한 청해진해운의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항상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강구하고, 충돌·좌초나 퇴선 시 여객을 담당하고 여객의 유도하는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아울러, 강혜성의 학력, 그리고 세월호를 1년간 탔던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세월호 침몰로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혜성은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한 채 “현재 위치에서 안전하게 기다리시고,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선내대기방송을 하여 피해자들의 구조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강혜성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피해자들의 구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 있고, 최소한 세월호 선원으로서 가지는 법률상·계약상 의무 등을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고소고발인들은 세월호 선원인 강혜성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며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였다.

3 제3차 국민 고소·고발(2020. 7. 13.)의 요지

국가정보원이 2014. 4. 16.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세월호 피해가족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가족들을 사찰하였다는 점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제일 먼저 보고할 기관으로 국정원 인천지부와 제주지부)’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고 받았는지와 관련한 의혹, 2014. 6. 22. 11:40경 세월호에서 인양된 노트북에서 약 100가지의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발견된 이유에 관한 의혹 등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고소고발인들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무해야 할 국가가 군과 정보기관을 통해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였다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소·고발을 진행하였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순번	피고소·고발인	고소·고발 행위 및 죄명	고소·고발 요지
1	남재준	국정원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의 최고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하부 국정원 직원들은 2014. 4. 16.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 사찰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등을 수집하였음.
2	이병기		
3	김수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감정보 처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복을 착용한 성명 불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이 세월호 선원 손지태에 대하여 ‘특별한 심리분석 수사’의 명목으로 진술을 받은 수사행위는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권한이 없는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수사 권한을 남용하여 주요 참고인 손지태를 조사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임.
		신용정보법위반	
4	성명불상 국정원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의 성명불상 국가정보원 직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의 정보를 수집하여 목포해양경찰서 박모 경사의 집에서 이준석 선장으로부터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을 가능성 및 그 이후 출입 사실이 촬영된 아파트 CCTV 영상이 삭제된 점에 관한 수사를 촉구함.

III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수사의뢰 내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관련

1 수사요청 및 특검요청 내용

● 세월호 CCTV DVR 수거과정 의혹 관련

-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14.6.22.)한 DVR과 세월호 DVR이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 발견

* 수중영상에서 나타나는 DVR의 잠금상태와 손잡이의 패키지가 수거 이후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태 등과 상이

→ 해군 및 해경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등 검찰수사 요청 ('19.4.24.), CCTV 데이터 및 수거 조작혐의 특검 요청('20.9.23.)

● 세월호 참사 희생자 구조 지연 관련

- 참사 당일 17:24경, 세 번째로 발견된 참사 희생자는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되어 22:05경에야 병원에 도착하는 등 구조과정에서 이송 지연으로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 판정

→ 해경 지휘부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검찰수사 요청 ('19.11.13.)

● 세월호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 관련

- 123정보다 일찍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도착한 해경 헬기 등의 항공세력은 적절한 승객 구호조치 미흡
- 세월호 선원과 교신하거나 선체로 내려간 항공구조사를 통한 상황파악 후 승객퇴선을 유도 미실시

→ 항공기 기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검찰수사 요청('20.7.1.)

● 세월호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 발표 및 증거보전 관련

- 참사 당일 해수부 세월호 항적 발표가 오후 4시 이전 상황실에서 표출된 세월호 AIS 항적과 상이한 사실 확인
- 해경, 증거보전 재판 과정에서 진도 VTS VLR*에 세월호 AIS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거짓 설명하여 증거 소실

* VTS Logging & Replay. 레이더물표 및 VHF 교신 음성 저장장치

→ 세월호 항적 발표 및 증거보전 관련 조사결과 공개('20.12.17.)

●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 등 관련

- 기존에 알려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최초 인지(09:19) 및 초동 조치(09:24) 시각이 허위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 발견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문자 발송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와대는 2014.4.16. 09:19경 세월호 참사 발생 소식을 전파함

- BH 비서실장 등, 참사 당시 최초 인지(09:19) 및 초동조치(09:24) 시각을 허위 작성하여 세월호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에 제출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관계자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 등 검찰수사 요청 ('20.5.14.)

* 청와대 작성 보고서 및 진술자료, 사참위 조사보고서 등 135건의 증거 및 참고 자료를 특수단에 제공

* 특수단 수사결과 : 불기소(혐의없음)처분

●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 관련

-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시설자금(100억 원)과 운영자금(19.5억 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 발견

- 하나은행이 청해진해운에 운영자금(10억 원) 불법 대출 정황도 확인

→ 산은·청해진해운 관계자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검찰수사 요청('19.10.7.)

● 前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청와대 등의 사찰 지시 혐의 관련

- 관련 법령상 기무사는 군 관련 첩보를 수집·처리해야 하고, 수사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불법
-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공식절차가 아닌, 군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기무사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
 - 청와대 및 전 기무사 등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검찰수사 요청 ('20.1.8.)

●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관련

- 유가족 사찰 의혹 조사 결과, 다수의 국정원 직원에 의한 사찰 및 개인정보 수집 등의 활동 진행 확인
 - * 국정원 일일 동향보고서 등 자료, 개혁발전위TF 수사자료, 진술조사 등 활용
 -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조항 위배 판단, 검찰수사 요청('20.4.27.)

● 前 청와대와 인사처 등의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관련

- ※ 기존 수사는 해수부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 이병기·조윤선·안종범·김영석·윤학배 등 소수만 기소(1심 '19.6.25.)
- 세월호특조위가 '당시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기로 하자 전·현직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 10개 부처에 대응 지시**한 사실 확인
 - *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현기환), 정책조정수석(현정택), 경제수석, 인사수석(정진철), 해수부 장·차관, 인사혁신처장(이근면) 등

**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국장 미임명, 공무원 미파견 등

→ 사참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찰 수사 요청('20.4.23.)

→ 검찰 세월호 특수단, 前 BH 비서실장·수석, 관계 장·차관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20.5.28.)

● 김문홍과 이재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관련

• 목포서장 김문홍, 3009함장 이재두는 3009함 승조원 김성민으로 하여금 해경 지휘부가
퇴선방송 등을 지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 확인

→ 사참위, 특수단에 수사참고자료 제공('19.12.30.)

→ 특수단의 해경 지휘부 등 11명 기소시 김문홍, 이재두의 해당 내용 포함
(‘20.2.18.)

● 참사 당일 해수부 상황실에 노출된 두 개의 항적 관련

• 참사 당일 세월호 ‘사고 지점’이 기관마다 다르게 전파되었으며, 해수부 상황실
대형 화면에 노출된 세월호 항적이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03:37~09:30 동안의 항적이 자정되지 않았다는 해수부의 공식 입장이 사실과 다른 것
으로 조사됨

→ 사참위, 관련 조사를 언론에 공개('21.12.17.)

→ 특검 구성 시 위 사안을 CCTV 데이터 조작 사안과 함께 수사 해 줄 것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차원에서 요청할 예정

2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가. 세월호참사에서 구조구난의 적정성 조사

- 해경 및 유관기관 초동조치의 적정성

- 해경 및 유관기관 출동 단위별 조치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의 적정성, 해경 상황실 및 지휘부 조치의 적정성 등 조사

- 세월호 선원 및 유관기관 조치의 적정성

- 선내대기방송 경위, 선원들이 승객 구호조치 없이 탈출한 과정과 탈출 이후의 행위 및 세월호 급변침 이후 선사의 조치 등 조사

- 정부의 수색구조 및 구난작업의 적정성

- 세월호 전복이후 정부 수중 수색구조의 적정성과 선체 인양업체 선정 및 인양 지연 관련 의혹 조사

나. 세월호참사에서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

- 세월호참사에서 청와대 등 대응의 적정성

- 세월호참사 대응과 사후 수습, 후속조치 등에 대한 청와대의 역할과 대응조치 관련 주요 인물에게 전달된 정보의 생산 경위, 대통령의 구체적인 대응조치가 없었던 이유 조사
- 청와대와 각 부처간 지시 및 보고·이행 상황 등 조사

- **세월호참사 수습과정에서 해경 등 대응의 적정성**

- 해경의 선원 수사과정, 공식 수사 외 다른 기관 등의 선원 조사여부 및 참사 당시와 이후의 구조구난 상황 은폐과정 등 조사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 방해**

- 정부의 세월호특조위 활동 축소 및 경찰 등 정보기관의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행위와 진상규명 방해 목적의 보수단체집회 등의 배경·경위 및 유가족 사찰 등 조사

다. 세월호 선체 침몰원인 조사

- **AIS의 데이터 신뢰성 및 자이로컴퍼스 방위 변화 검증**

- 입수한 AIS* 데이터, 사고 당시 VMS 자료, 각종 교신 기록, 사고 당시 조류 분석결과 등 종합 분석, 정부의 AIS 데이터 신뢰성 검증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약자. 즉, 선박자동식별장치

- **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

- AIS 데이터와 조타장치 특성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세월호의 급선회가 조타기 조작으로 발생한 것인지 조사
- 선적 화물, 증·개축 작업 분석, 평형수량 조사 등을 통한 출항 당시와 사고 당시의 복원성 값 재조사

● 세월호의 변형·손상부위 확인 및 원인 조사

- 세월호의 전체적인 변형상태, 국부 변형상태를 확정하고 관련 작용하중 평가
- 핀 안정기 회전 변형의 원인(외부충격 또는 침몰과정)을 검증하고, 침수 경로 및 과정 정밀조사를 통해 초기 침수 원인 및 침몰과정 규명

● 세월호 급선회와 횡경사 원인 검증 및 복원성과의 관계 분석

- 선적 화물, 증·개축 작업 분석, 평형수량 조사 등을 통한 출항 당시와 사고 당시의 복원성 값 재조사
- 세월호의 항적, 조타 양상, 횡경사, 조류의 영향, 외력의 영향, 초기 침수 경로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 도출

라. 정보기관의 개입여부 등에 대한 조사

● 정보기관(국정원 기무사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

-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피해자 가족과 국민 사찰에 대한 추가 조사
- 정보기관 사찰의 보고 지시 여부에 대한 조사

● 정보기관(국정원 기무사 등)의 세월호 참사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

- 참사 직후 일부 선원과 참고인에 대한 해경의 수사 관련 국정원 개입 정황과 기무사나 국정원 등과 선사의 연계, 협력 과정 조사
- 2017국정원 개혁TF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 **세월호참사 발생시각 관련 조사**

- 정부기관 보고서 중 세월호참사가 2014. 4. 16. 08:49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기재된 보고서가 일부 있어 정확한 참사 시점 조사

● **세월호참사 자료 조작·편집 의혹 등에 대한 조사**

- 관련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 및 TRS** 등 통신자료와 AIS 데이터 등 증거자료 원본의 진위여부 및 세월호 선내 CCTV 관련사항 등 조사

* 해경과 해수부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당시 여러 번에 걸쳐 상이한 자료를 제출

** Trunked Radio Service의 약자. 즉, 주파수공용통신

참고2 직권조사 목록 (14건)

사건번호	사 건 명	소 관
직나-1	세월호참사에서 해경 및 유관기관 초동조치의 적정성 조사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국
직나-2	세월호참사에서 선원 및 유관기관 조치의 적정성 조사	
직나-3	세월호참사에서 정부의 수색구조 및 구난작업의 적정성 조사	
직나-4	세월호참사에서 청와대 등 대응의 적정성 조사	
직나-5	세월호참사 수습 과정에서 해경 등 대응의 적정성 조사	
직나-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 방해 조사	
직나-7	AIS의 데이터 신뢰성 및 자이로컴퍼스 방위 변화 검증	
직나-8	조타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현상 검증	
직나-9	세월호의 변형·손상부위 확인 및 원인 조사	
직나-10	세월호 급선회와 횡경사 원인 검증 및 복원성과의 관계 분석	
직나-11	정보기관(국정원 기무사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	
직나-12	정보기관(국정원 기무사 등)의 세월호 참사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	
직나-13	세월호참사 발생 시각 관련 조사	
직나-14	세월호참사 관련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제출 의혹 등에 대한 조사	

IV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비평

1

수사결과 요지



이 보도자료는 2021. 1. 19.(화) 14:3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검찰 PROSECUTION SERVICE</p>	<h2>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h2> <p>전문공보관 박세현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p>	<p>보 도 자 료 2021. 1. 19.(화)</p>
<p>제 목</p>	<p>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p>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의 불기소 처분 사건(제10조 제1항 제2호)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제10조 제2항)
 -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제2호내지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 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0조 제3항)
- 사건관계인이 공적 인물인 경우 사건관계인의 실명 및 구체적인 지위 중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2조 제1항 제2호)
 - ※ '19. 12. 9./'21. 1. 18.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

I 수사 개관

1. 수사착수 경위

- 세월호 사고는 2014. 4. 16.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시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하여 총 476명의 탑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하여 304명(학생 250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대규모 재난이자 참사였음

- 기존 검찰과 해경의 합동수사, 감사원 조사, 국회 국정감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 위원회’(이하 ‘특조위’라고 함) 조사, 후속 검찰 수사 등 여러 수사와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여론과 함께 언론, 시민단체, 유가족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던 점, ‘기습기 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라고 함)의 임경빈 군 구조 지연 관련 수사 의뢰 등 여러 수사의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 1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게 되었음

2. 수사 진행 내용

- 특별수사단은 지난 1년 2개월여에 걸쳐 ‘이번 수사가 세월호 관련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경, 감사원, 대검찰청(이하 ‘대검’이라고 함), 법무부, 대통령 기록관 등 17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자료와 대통령지정 기록물 등을 압수하고, AIS 항적자료, 해군의 잠수 영상장치 등을 임의 제출 받아 분석하였음
- 또한, 청와대, 해경,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함),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라고 함), 법무부, 대검 관계자 등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음

II 수사 결과

1. 수사 대상 및 범위

- 수사단은 우선 기존 검찰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사가 미진하였던 부분을 살피는 한편, 유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참위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 사항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음

△ 유가족(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고소·고발 (11건)

- 해경지휘부 구조책임(3건) / 특조위 활동방해(2건) / 법무부의 수사외압 / 전원구조 오보 /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 감사원 감사외압 / 국정원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2건)

△ 사참위 수사의뢰 (8건)

- 임경빈 군 구조 지연 / DVR 조작 /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 국정원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2건) / 진상규명국장 임명보류 등 특조위 활동방해 /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 전파시각 조작 / 해경 항공구조세력 구조실패 사건

- 이에 따라 수사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의 구조 책임, 진상규명 방해, 증거조작·은폐, 정보기관의 유가족 사찰 등 사건 유형별로 나누어 중요도를 감안하여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음

- 다만 기존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상당부분 규명되었고, 그와 같은 침몰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 등의 공동과실 혐의가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침몰 원인에 대한 수사는 제한적 일 수밖에 없었음(아래와 같이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부분은 검토하였음)

※ 세월호 침몰 원인이 추가로 밝혀지더라도 동일인을 추가로 기소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상 불가능(일사부재리의 원칙)

2. 수사결과 요약

- 수사 결과,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라고 함) 등 정부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혐의자들 총 20명을 기소하였음
- 비록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조사,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하였음

유형	사건 요지	수사 단서	수사 결과
세월호 침몰 원인	①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유가족 의혹제기	➢ 혐의 미확인
해경 구조 책임	②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등	유가족 고소	➢ 11명 불구속 기소 등
	③故임경빈 군 구조 방기	유가족 고소, 사참위 수사의뢰	➢ 혐의 없음
	④ 항공구조세력 구조책임	유가족 고소, 사참위 수사의뢰	➢ 혐의 없음
진상 규명 방해	⑤ 특조위 활동 방해	유가족 고소, 사참위 수사의뢰	➢ 9명 불구속 기소 등
	⑥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유가족 고소	➢ 혐의 없음
	⑦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외압	유가족 고소	➢ 혐의 없음
증거 조작 은폐 관련	⑧ DVR 조작 의혹	사참위 수사의뢰	➢ 처분 보류 (특검 인계 예정)
	⑨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시각 조작	사참위 수사의뢰	➢ 혐의 없음
	⑩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유가족 고소	➢ 혐의 없음
정보 기관 사찰	⑪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유가족 고소, 사참위 수사의뢰	➢ 혐의 없음
	⑫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유가족 고소, 사참위 수사의뢰	➢ 혐의 없음
	⑬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유가족 고소	➢ 혐의 없음
기타	⑭ 전원구조 오보	유가족 고소	➢ 혐의 없음
	⑮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사참위 수사의뢰	➢ 혐의 없음
	⑯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문서변조	특조위 부위원장 고발	➢ 혐의 없음
	⑰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유가족 고소	➢ 재배당 예정

3. 각 사건별 수사결과 요지

사건 요지	수사 결과
세월호 침몰 원인 관련	
<p>①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p> <p>- 세월호의 침몰 원인 관련,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 AIS 항적자료의 진위, 조작 여부</p> <p>※ 유가족 의혹제기</p>	<p>- 해수부 제출 원본 AIS 및 민간 상선 두우패밀리호의 AIS, 해외 AIS 수집업체 MADE SMART사의 AIS 등 데이터를 대상으로 항적과 AIS 원문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초기 해수부가 분석 발표한 항적이 7개 VTS의 23개 AIS기지국에서 확인되는 AIS 항적 및 원문과 일치하고, 민간에서 수집한 AIS 항적 및 원문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혐의 미확인)</p> <p>※ 항적자료 조작을 위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출처의 AIS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p>
해경의 구조책임 관련	
<p>②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p> <p>- 김석균(前해양경찰청장), 김수현(前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前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前해양경찰청 차장) 이춘재(前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11명</p> <p>※ 유가족 고소</p>	<p>-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 최상환, 이춘재, A1○, B1○, C1○, D1○, E1○) 공동하여, '14. 4. 16. 세월호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하여 즉각 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p> <p>- (김문홍, F1○) 공모하여,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14. 5. 3.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고 이를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p>

해경의 구조책임 관련

<p>②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석균(前해양경찰청장), 김수현(前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前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前해양경찰청 차장) 이춘재(前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11명 ※ 유가족 고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문홍) '14. 5. 5.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전자 문서를 작성하고, 해양경찰청 본청에 송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前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20. 2. 18. 불구속 기소 -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21. 2. 15. 판결 선고 예정) <p>□ 허위 기자회견 관련, 김문홍(前 목포해양경찰서장), 김석균(前 해양경찰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의사실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 4. 1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123정 승조원들로 하여금 허위 기자회견을 하도록 직권 남용 <p>(수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회견을 하였던 123정 정장 김경일은 세월호 사고 당일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초동 조치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하고자 기자회견 이전에 퇴선 방송 여부를 확인하는 본청 직원 등에게 퇴선방송을 실시했다고 허위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기자회견에서도 '퇴선방송을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고, 해경 지휘부가 퇴선방송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기자회견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

해경의 구조책임 관련

②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 김석균(前해양경찰청장), 김수현(前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前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前해양경찰청 차장) 이춘재(前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11명
- ※ 유가족 고소

□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 문건 작성 관련, 이춘재 (前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석균(前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피의사실 요지)

- ‘14. 5. 30.경 사실은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출동한 123정이 퇴선방송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퇴선방송을하였다고 기재된 공문서인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쟁점’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수사 결과)

- 초동조치 문건은 본청에서 123정장 김경일로부터 ‘퇴선방송을 실시했다’는 허위 보고를 받고 그 보고 내용에 따라 답변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상황구조반장 및 실무자들이 퇴선방송에 관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위 문건에 대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퇴선방송에 관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해경의 구조책임 관련

③ 故임경빈 군 구조 방기

- 김석균(前해양경찰청장),
 김수현(前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前목포해양경찰서장),
 A20(前목포해양경찰서 3009함장)
 등 4명
 - 14. 4. 16. 17:24경 세월호 사고에서 구조된 승객인 피해자 임경빈이 생존하여 있었음에도 헬기를 이용해 신속히 병원 이송하지 않고 일반함정으로 지연 이송하여 살인 또는 과실치사
 [살인, 업무상과실치사]
 ※ 유가족 고소/사참위 수사의뢰

- 해경지휘부의 지시·승인에 따라 피해자가 헬기가 아닌 일반 함정으로 병원 이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 피해자가 약 7시간 동안 바다에 빠져 있었고, 발견 당시 해경 문자대화방(코스넷), 3009함 항박일지에서 피해자를 ‘시신’, ‘사체’로 지칭하고, ‘호흡, 맥박 및 동공 반응 없으나(입가 포말형성) 심폐소생술 지속 실시’ 등으로 기재하는 등 생존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해경은 ‘구조 당시 얼굴은 물 속에 잠겨 있었고, 몸이 이미 굳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시 몸속에 물이 있어 심장부위를 누를 때마다 물소리가 났다. 전신에 시반이 발생하여 이미 사망하였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의사는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았다면 심폐소생술을 그만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 심폐소생술 실시 중 바이탈사인(Vital Sign) 화면에 피해자의 맥박 48, 산소포화도 69%로 일시 나타난 부분 관련,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인위적인 혈액 박출과 이로 인한 말초 순환으로 맥박과 산소포화도 수치에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대한응급의학회,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문기관 회신결과 등을 종합하면,
- 피해자는 최초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경지휘부가 임경빈 군이 살아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혐의없음)

해경의 구조책임 관련

③ 故임경빈 군 구조 방기

- 김석균(前해양경찰청장),
김수현(前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前목포해양경찰서장),
A2O(前목포해양경찰서 3009함장)

등 4명

- `14. 4. 16. 17:24경 세월호 사고에서 구조된 승객인 피해자 임경빈이 생존하여 있었음에도 헬기를 이용해 신속히 병원 이송하지 않고 일반함정으로 지연 이송하여 살인 또는 과실치사

[살인, 업무상과실치사]

※ 유가족 고소/사참위 수사의뢰

□ 3009함 헬기 착함과 피의자들의 과실 여부

(의혹 사항)

- 사고 당일 3009함 항박일지에는 ‘17:43 B515호 헬기 착함’, ‘17:44 B515호 헬기 서해지방해경청장 김수현을 태우고 이함’, ‘18:37 B517호 헬기 착함’, ‘18:40 임경빈군 P22정으로 이송’, ‘19:00 B517호 헬기 해경청장 김석균을 태우고 이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고, 유가족 등은 피해자가 3009함에 있는 동안 헬기가 착함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헬기로 이송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이라고 주장

- 일부 언론에서는 임경빈 군이 3009함에 있는 동안 소방헬기가 착함하였음에도 그냥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

(수사 결과)

- 현장 채증 영상에 의하면 임경빈 군을 3009함에서 P22정으로 이송하기 전 B517호 헬기는 착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응급구조사 진술도 일치하는바, 항박일지에 임경빈군을 P22정에 태운 시점과 B517호 헬기 착함의 선후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임

- 당시 소방헬기를 부른 소방방재청 소속 응급구조사 및 소방헬기 조종사 조사 등 수사결과 소방헬기가 3009함에 착함한 사실이 없어 해당 의혹제기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

해경의 구조책임 관련

④ 항공구조세력 구조책임

- A30(前B703 초계기 기장),
B30(前B511 헬기 기장) 등
5명
- `14. 4. 16.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의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치사상
또는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
※ 유가족 고소 / 사참위 수사의뢰

- 초계기 기장, 헬기 기장 등 피의자들이 눈에 보이는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구조 작업만 진행하였을 뿐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 피의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미 123정장이 현장지휘관(OSC)로 지정되어 있었고, 각급 구조본부 및 123정장이 항공구조세력을 지휘·감독하는 상황이었으며, 피의자들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구조를 요청하는 승객들을 설 새 없이 구조하고 있었으므로, 피의자들에게 지시·하달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도록 할 임무나 주의의무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진상규명 방해 관련

⑤ 특조위 활동 방해

- 이병기(前대통령 비서실장),
 현정택(前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前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前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前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前인사혁신처장)
 김영석(前해수부 장관)
 윤학배(前해수부 차관)
 조대환(前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

※ 유가족 고소 / 사찰위 수사의뢰

- (이병기, 현정택, 현기환, 안종범, 정진철, 이근면, 김영석, 윤학배)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모하여, `15. 11.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케 하고,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
- (이병기, 현정택, 현기환, 안종범, 김영석, 윤학배)계속하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점을 '15. 1. 1.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16. 6. 파견공무원 복귀, '16년 하반기 예산 미집행 등을 실행함으로써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
- (이병기, 현정택, 현기환, 안종범, 김영석, 윤학배)공모하여, `15. 11.~`16. 1. 청와대 행적조사안건의 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5명 여당추천위원 사퇴방침을 정하였으나 부위원장 이현이 사퇴를 거부하고, 해수부차관 윤학배가 사퇴를 요구하였으나재차 거부하자,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하여금 직권면직 방안 검토, 보상제시를 통한 사퇴추진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추진 및 문건 작성, 보고하도록 함
- (조대환) '15. 1. 김영석과 공모하여,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복귀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김영석은 일방적으로 공무원 3명을 복귀 조치하여 특조위 설립준비행위를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前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의율하여 '20. 5. 28. 불구속 기소
-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진상규명 방해 관련

⑥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 우병우(前민정비서관)
황교안(前법무부장관)
- '14. 7.~10.경 해경 123정
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 청
구 범죄사실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
하도록 지시하고, 구속영
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계
속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상) 혐의 재검토를 요구
하는 등 직권남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유가족 고소

- (피의자 황교안)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법리검토와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들었을 뿐,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제외된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

(피의자 우병우) 당시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123정장의 주의의무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법무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법리에 충실하게 주의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에 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나 대검 등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없었다고 주장

- (구속영장청구서의 죄명 관련 법무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당시 대검 형사2과장 등은 대검 형사1과장으로 부터 ‘법무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빼고 청구하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나, 법무부와 접촉한 대검 형사1과장은 법무부로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과연 법무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움

-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법무부의 의견 제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에 비추어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대검에서 먼저 법무부에 123정장 관련 보고를 하여 그에 따라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에서도 다각도의 법리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인 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에 있어 대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며, 법무부에서 의문을 제기한 사항이 대검 및 광주지검 수사팀에서도 상당 정도 고려되었고 실제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었었던 점, 법무부의 의견 제시 후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무부의 의견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혐의없음)

진상규명 방해 관련

⑦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외압

- 김기춘(前대통령 비서실장), 황찬현(前감사원장)
- `14. 6.~10.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를 중단시키거나 청와대 감사 결과를 최종 감사결과 발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 ※ 유가족 고소

- (인정되는 사실) `14. 5. 29. 청와대 실지감사 당일까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채 감사를 종료한 사실, 보고관계 확인을 위한 8~9매 분량의 질의서에 대해 1매 분량의 답변서만을 회신 받고도 추가 답변서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 `14. 10. 최종 감사결과에 청와대 감사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보고서면 미확보 관련) 청와대 실지감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보고서면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던 상황에서 피감기관인 청와대의 협조 거부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실지감사 실시
- (질의서 부실답변 관련) 감사관들은 감사반 자체 판단에 따라 확보한 다른 자료를 통해 대통령 보고 관계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달리 추가답변 요구를 중단하고 감사를 종료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 없음
- (청와대 감사결과 미포함 관련) 감사결과는 통상 위법·부당함을 전제로 감사결과 보고 대상을 결정하는데, 달리 위법·부당함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의자들이 감사관들에게 청와대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할 정도로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혐의없음)

진상규명 방해 관련

⑦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외압

- 김기춘(前대통령 비서실장),
황찬현(前감사원장)
- `14. 6.~10.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를 중단시
키거나 청와대 감사 결과를
최종 감사결과 발표에서 제외
하도록 지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 ※ 유가족 고소

□ 최종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이 임의로 축소되었
다는 주장 관련

- 고소인 등은 감사원에서 2014. 7. 8.자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이후 2014. 8.말경까지 보다 진전된 감
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진전된 감사결과
보고서에 정부 및 대통령비서실 등의 책임이 제
기될 수 있는 부분을 축소시켜 최종 감사결과보
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익명의 사정당
국 고위관계자 등의 진술, 前 민정수석 업무일지
등을 근거로 제시
- 그러나, 익명의 사정당국 고위관계자의 진술은
언론 기사 상 주장으로 그 내용도 추측에 불과할
뿐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前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기재 부분만으로 피의자들
이 감사결과를 축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감사원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확인한 각종 감
사서류 검토결과, 정부 및 대통령비서실 등의 책
임을 축소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증거 조작·은폐 관련

⑧ DVR 조작 의혹

- 성명불상(DVR 회수·관리자)
 - `14. 4.~6. 세월호 선장 등의 살인죄 등 사건,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증거인 CCTV 영상이 저장된 세월호 '원본 DVR'을 몰래 수거하여 CCTV 영상을 조작한 후 은닉하고, 세월호에 몰래 가져다 놓은 '별도 DVR'을 '원본 DVR'인 것처럼 인양하게 한 후 '원본 DVR'과 바꿔치기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 사참위 수사의뢰

- 해군 및 해경 관계자 조사,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털포렌식, 영상 감정 결과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하였음
 - 다만, 특검 도입에 따라 추가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수사단의 처분을 보류하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할 예정임

증거 조작·은폐 관련

⑨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 김기춘(前대통령 비서실장), A4○(前국가안보실 1차장), B4○(前국가안보실 위기관리 센터장) 등 4명
 - 사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 당일 09:19 이전에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09:19 전파한 것임에도, `14. 7. ‘사고 당일 09:19경 YTN 뉴스를 통해 인지하고, 09:24경 전파 했다’는 허위 문건을 작성, 국정감사 등에 제출하고 허위 증언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증]
 ※ 사참위 수사외뢰

- 위기관리센터 문자동보(동향보고) 발송기록 화면 캡처에 의하면 세월호 사고전파 관련 문자동보 발송 시각은 09:19로 확인됨에도, 국가안보실에서는 ‘09:19경 YTN 뉴스를 통해 인지하고, 09:24경 전파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 위기관리센터 행정관은 당시 국가안보실에서는 09:19경 뉴스를 통해 사고발생을 인지한 직후 해경에 연락하여 상황 파악하고, 문자동보를 발송 했다고 진술하고, 해경 본청과 청와대의 통화 녹취록에서 09:22경 청와대가 해경을 통해 문자 동보와 동일한 내용[08:58분 전남진도 인근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신고 접수, 해경 확인 중]을 파악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진술에 부합하고,
 - 문자동보 발송시각은 당시 문자동보시스템을 운용하던 컴퓨터에 설정된 시각으로 대한민국 표준시와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국가안보실이 09:19 이전에 사고를 인지하였다 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⑩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 A50(前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 B50(前목포 122구조대장) 등 9명
 - `14. 4. 27.경 목포해경 122구조대의 최초 잠수시각을 약 1시간 앞당겨 허위 기재 및 보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 유가족 고소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 등 각종 공문서에 목포해경 122구조대의 최초 잠수시각이 실제보다 약 1시간 가량 이른 시각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 목포 122구조대의 잠수시각을 허위 보고하라는지나 논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목포해양서 상황 보고서 등 다른 공문서에는 122구조대의 정확한 잠수시각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춰 피의자들이 고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정보기관 사찰 관련

⑪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 박근혜(前대통령), 김기춘(前대통령 비서실장), A60(前기무사 참모장) 등 18명
- 14. 4.~10. 기무사 부대원들을 동원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여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개인정보 불법처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 유가족 고소/사참위 수사의뢰

[박근혜, 김기춘 등 청와대, 국방부 소속 피의자들 관련]

- 피의자들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 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 기무사 내부자료, 대통령기록관 압수물 등에 의하더라도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 피의자들이 제공받은 보고서에는 세월호 관련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들도 다수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이들에게 대면 보고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사망하여 구체적인 보고·지시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기무사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혐의없음)

[A60 등 기무사 소속 피의자들 관련]

- 기무사 참모장 A60 등이 故 이재수 사령관 등과 공모하여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되나,
- 직권남용 관련,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되었다거나, 획득한 유가족 동향을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가족들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유가족들의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 ※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등)
- 업무방해 관련 동향 파악에 위력,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은 피의자들이 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주체가 되지 못함 (혐의없음)

증거 조작·은폐 관련

⑫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 남재준·이병기(前국정원장), 김수민(前국정원 2차장), A70(前국정원 직원), B70(前국정원 직원), C70(前국정원 직원), D70, E70(前국정원 직원) 등 8명
- (A70) `14. 8.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하다가 입원한 유가족 F70의 건강상태, 주치의 G70의 정치적 성향, 성격, 업무능력 등을 수집, 관련 보고서 작성하여 F70 G70의 권리행사 방해, 개인·신용정보 불법 처리
- (B70) `14. 4.~11. 세월호 유가족 동향 등을 수집하여 유가족들의 권리행사 방해, 개인·신용정보불법처리
- (C70) `14. 8. 세월호 유가족 F70 관련 보고서 2건을 작성함으로써 F70의 권리행사방해, 개인·신용정보 불법 처리
- (D70, E70) `14. 5.~6. 여론 조작 목적으로 영상물 3편을 인터넷에 배포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들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진실을 추궁할 권리 등 권리행사 방해 등
- (남재준·이병기·김수민) 위법행지사·승인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용정보법위반]
※ 유가족 고소/사참위 수사의뢰

[A70의 국정원법위반]

- 피의자가 F70(세월호 희생자 유가족)·G70(F70의 주치의)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 F70 건강상태는 주치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 정보로서 이를 수집하는 행위를 두고 직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 F70·G70의 정보수집 과정에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되었다거나, 획득한 동향을 언론에 유포하거나 F70·G70를 압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F70·G70의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 ※ 수사 초기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법원은 범죄사실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B70, C70의 국정원법위반]

- B70은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수색·구조 등 정부의 대응조치와 관련한 유가족 전반의 반응, 요청 내지 민원 사항 등을 파악하고, C70은 F70에 대한 보수권의 규탄시위 예정사항, 온라인 상 F70에 대한 비난상황, F70의 극단선택시 보수권의 의견 등 보수권의 동향을 파악한 것에 불과함
- 정보수집 과정에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되었다거나,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족들을 압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증거 조작·은폐 관련

⑫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 남재준·이병기(前국정원장), 김수민(前국정원 2차장), A70(前국정원 직원), B70(前국정원 직원), C70(前국정원 직원), D70, E70(前국정원 직원) 등 8명
- (A70) `14. 8.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하다가 입원한 유가족 F70의 건강상태, 주치의 G70의 정치적 성향, 성격, 업무능력 등을 수집, 관련 보고서 작성하여 F70 G70의 권리행사 방해, 개인·신용정보 불법 처리
- (B70) `14. 4.~11. 세월호 유가족 동향 등을 수집하여 유가족들의 권리행사 방해, 개인·신용정보불법처리
- (C70) `14. 8. 세월호 유가족 F70 관련 보고서 2건을 작성함으로써 F70의 권리행사 방해, 개인·신용정보 불법 처리
- (D70, E70) `14. 5.~6. 여론 조작 목적으로 영상물 3편을 인터넷에 배포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진실을 추구할 권리 등 권리행사 방해 등
- (남재준·이병기·김수민) 위법행지시·승인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용정보법위반]
- ※ 유가족 고소/사찰위 수사의뢰

[D70, E70의 국정원법위반]

- 국정원에서 세월호 관련 영상물 3편을 제작하여 국정원에서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배포하고, 피의자들이 이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 영상물의 내용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추모와 위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으로 유가족들의 개인정보와 무관하고, 국정원에서 제작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가족들의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남재준·이병기·김수민의 국정원법위반]

- 국정원 직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승인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위와 같이 A70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 (혐의없음)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신용정보법위반]

- 세월호 유가족 등의 일부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가 단순한 집합물을 넘어 개인정보파일로 볼 수 없고, 피의자들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혐의없음)
- 신용정보법위반은 5년의 공소시효 도과 (공소권 없음)

증거 조작·은폐 관련

⑬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 성명불상(국정원 직원)
 - `14. 4.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원 A80를 조사하고, 이준석이 머문 해경의 주거지(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삭제하여 유가족들의 권리 행사 방해
 - `14. 4. 국정원 직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B80 변호사로 하여금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원 C80, D80를 접견하여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수집된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여 유가족들의 권리 행사 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 ※ 유가족 고소

[세월호 선장 조사 등 관련]

- 세월호 선원 A80가 처에게 “국정원 취조 받으러 간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A80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생각한 조사자는 해경이었고, A80가 착각한 것이었으며, 관련자들은 일치하여 국정원 직원이 선원들을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 세월호 선장 이준석과 함께 있었던 해경은 이준석이 해경의 집에 머물 당시 국정원 직원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CCTV에 불상의 국정원 직원이라고 주장되는 사람은 언론사 기자와 해경으로 국정원 직원이 아님
- CCTV는 이준석이 아파트를 떠난 이후 부분이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이준석이 머문 기간과는 무관하고, 고의적으로 CCTV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 (혐의없음)

[B80 변호사 관련]

- B80 변호사가 `14. 4. 21. 목포해경 민원실에서 이준석 등을 접견한 사실은 인정되나,
- B80은 변호사로서 세월호 선장 등이 불이익한 일을 당할까 우려되어 접견하였고, 접견 직후 사고 원인과 관련되어 국론 분열의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이며,
- E80 변호사와는 친분 관계가 없고, 국정원 2차장으로 내정될 것도 몰랐다고 진술
- 이준석, C80, D80의 조사 내용에도 B80 변호사로부터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진술이 없는 등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음 (혐의없음)

기타

⑭ 전원구조 오보

- A9○(前MBC 사장),
B9○(前MBC 전국부장),
C9○(前KBS 사장),
D9○(前MBN 사장) 등 8명
- 세월호 승객 전원이 구조되지 않았음에도 `14. 4. 16. 11:01 경부터 세월호 승객의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허위보도를 함으로써 해경 및 민간 구조 세력의 구조업무를 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수난구호법위반]
- ※ 유가족 고소

- MBN이 11:01경, MBC가 11:01경, KBS가 11:26경 각각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보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 10:55경 단원고 학부모들 사이에 학생들이 전원 구조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11:00경 단원고 측에서는 강당에서 전원구조 되었다고 발표
- MBN이 별다른 검증 없이 위 발표를 근거로 가장 먼저 전원구조 자막을 내보낸 이후 각 언론사들은 타 언론사의 보도, 언론보도를 인용한 경기교육청의 메시지 등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원구조 오보 양산
- 이후 MBC는 11:24경, MBN은 11:27경, KBS는 11:33경 각각 정정보도를 하여 오보 후 정정보도까지 7~26분 상당 경과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 전원구조 오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고, 언론인들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의자들에게 전원구조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 유포 또는 구조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혐의없음)

기타

⑮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 A10(前산업은행 영업부장) 등 산업은행 직원 4명, 감정평가사 1명, 청해진해운 직원 1명
- (산업은행 등) `12. 5. 허위 감정 등 부실한 대출심사를 진행하여 청해진 해운에 세월호 구입자금 100억원 대출하고, `13. 5~11. 같은 방법으로 세월호운영자금19.5억원대출하여 배임
- (청해진해운) `12. 11.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원 편취 [특경법위반(배임, 사기)]

※ 사참위 수사외뢰

[산업은행의 부실대출 관련]

- 산업은행에서 영업부장 전결로 시설자금 100억 원 및 운영자금 19.5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은 인정되나,
- (세월호 구입자금) 피의자들 공히 규정에 따라 대출이 진행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여신지침 등에 따라 전결권 범위가 결정되었고 수익성 평가에 근거하여 대출한도가 결정된 점, 피의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이상 본건 대출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대출을 회수하지 못한 것만으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운영자금) 기업신용평가에서 비재무등급을 상향평가하여 의도적으로 전결권 범위를 영업부장으로 낮추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해진해운 선박의 담보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피의자들이 임무를 위배하여 산업은행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청해진해운의 대출금 편취 관련]

- 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 본건 대출 이후에도 산업은행으로부터 19.5억원의 대출을 받은 점,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점 등을 종합하면,
- 피의자들이 하나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기타	
<p>⑩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문서 변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석태(前특조위 위원장) - `14. 12.경 ‘세월호특조위 사무처 설립준비단 구성 운영계획(안)’ 문건에서, 조직 명칭을 사무처 설립준비단에서 특조위 설립준비단으로 임의 변경 등 [사문서변조·행사] <p>※ 특조위 부위원장 조대환 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진상규명법은 법 시행 전 ‘특조위 사무처’가 아닌 ‘특조위’ 자체에 대한 설립준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 - 해당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한 해수부 직원은 조대환이 조직명칭 변경 및 문건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 취지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 조대환의 주장과 같이 이석태가 무단으로 조직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혐의없음)
<p>⑰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1(前전경련 회장), B11(어버이연합 회장), C11(엄마부대봉사단 대표) - 공모하여, 전경련 회장의 임무에 위배하여 `12. 1.~5. 어버이연합에 5억 2,300만원, `16. 1.~10. 엄마부대봉사단에 5,000만원 각각 지급 [업무상배임] <p>※ 유가족 고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 등이 고소한 부분을 포함하여 전경련의 여러 보수단체의 지원행위에 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서 이미 상당부분 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해당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인계(재배당) 할 예정

4. 유가족 언론 등 의혹제기 사항 확인 결과

-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았으나, 유가족 진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 사항들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 유가족 제기 주요 의혹사항

의혹 사항 1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 AIS 항적 자료의 진위, 조작 여부

[확인 결과]

- 「3. 각 사건별 수사결과 요지」 중 ①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수사결과 참조

의혹 사항 2

DVR 수거과정 조작 및 CCTV 영상 편집/조작 여부

[확인 결과]

- 「3. 각 사건별 수사결과 요지」 중 ⑧ DVR 조작 의혹 수사결과 참조(특검 인계 예정)

의혹 사항 3

해경 123정이 조타실과 기관실에 있는 선원들만 이른바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구조한 경위

[확인 결과]

- 123정장 및 탑승 해경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선박 전도로 인한 침몰 가능성을 보다 잘 알 수 있는 선원들이 먼저 선 밖으로 나와 구조를 요청한 상황에서, 123정의 미숙한 상황 판단 및 승객 퇴선 유도 소홀, 해양 안전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훈련 부재 등이 복합된 결과, 눈에 보이는 선원들만 우선적으로 구조하게 되고, 선내에 있던 승객들에 대한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의도적으로 선원들만 구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의혹 사항 4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 사고 후 9시 45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옷도 입지 못하고 급히 빠져 나왔던 것인지 당시 행적 확인 필요

[확인 결과]

- 선장 이준석은 사고 당시 옷을 갈아입던 중 사고가 발생해 넘어져 다친 사실이 병원 진료 차트에 의해 확인됨
- 세월호 항해사들 진술에 의하면 이준석은 사고 직후 조타실에 임장은 하였으나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승객 구조를 위한 조치를 전혀 지시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속옷 바람으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 밖으로 나가 해경에 구조된 것으로 확인됨

의혹 사항 5

세월호 여객부 사무장 사체 발견 당시 평소 착용하던 제복이 아닌 검정색 상·하 일체형 작업복(일명 ‘스즈키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경위

[확인 결과]

- 일명 ‘스즈키복’에 방수·방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침몰 상황 등에 대비하여 망인이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그 외의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음

의혹 사항 6

임경빈 군이 생존하여 있었음에도 헬기가 아닌 일반 함정으로 지연 이송하게 한 해경지휘부의 구조책임

[확인 결과]

- 「3. 각 사건별 수사결과 요약」 중 ③ 故임경빈 군에 대한 구조 방기 사건 수사결과 참조

의혹 사항 7

참사 당일 오전에 소집한 청와대 NSC 관련 기록과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당일 행적 확인 필요

[확인 결과]

- 참사 당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08:00경 출근하여, 17:15경 대통령과 함께 중대본을 방문한 사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07:10경 출근한 후 09:19경 집무실에서 사고 최초 인지 후 10:00경 위기관리센터에 임장한 사실이 확인됨
- 제10차 NSC 실무조정회의는 참사 당일 08:30경~ 09:30경 청와대 서별관에서 진행되었으나, 김기춘, 김장수는 참석하지 않았고, 세월호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의혹 사항 8

검찰수사 외압 의혹

[확인 결과]

- 「3. 각 사건별 수사결과 요지」 중 ⑥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사건 수사결과 참조

의혹 사항 9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확인 결과]

- 「3. 각 사건별 수사결과 요지」 중 ⑤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수사결과 참조

의혹 사항 10-1

세월호 참사 직후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들 직접 심문 여부와 심문 이유

[확인 결과]

- 「3. 각 사건별 수사결과 요지」 중 ⑬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사건 수사결과 참조

의혹 사항 10-2

국정원이 세월호에 대해 보안측정 전 예비조사를 한 이유와 상호 관계

[확인 결과]

- 국가정보원법 제3조, 보안업무규정 제35조, 제36조,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제34조 등에 의거하여 2,000톤급 이상 여객선인 세월호는 국정원으로부터 보안측정을 받아야 함
- 국정원은 세월호 보안측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준비 절차의 일환으로 세월호 보안측정 전 예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의혹 사항 10-3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상 국정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위

[확인 결과]

-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선박은 화재, 폭파, 파손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시 국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세월호는 국가보호장비에 해당하고,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는 위 지침에 근거하여 ‘해양 사고 보고 계통도’의 통보 대상기관에 국정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14. 8. 검찰 수사에서 A호 선박 내 부착된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도 국정원이 포함되어 있음 이 확인되었고, ’17. 8.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14. 4. 당시 국가보호 장비로 지정된 여타 선박 9척의 비상연락망에도 국정원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의혹 사항 10-4

청해진해운 직원이 국정원에 세월호 사고를 보고한 경위

[확인 결과]

- 보안업무규정,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청해진해운 직원과 국정원 보안 업무담당자 사이의 연락체계 유지
- 청해진해운 직원은 정보기관이니까 같이 알고 있는게 좋겠다 싶어서 문자를 보냈을 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위 국정원 직원도 국정원 보안상황실 직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아 사고를 인지한 후에 위 청해진해운 직원으로부터 문자가 와서 어떤 상황인지 묻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진술함
- 결국 청해진 해운 직원이 평소 업무 협조 관계에 있던 국정원 직원에게 세월호 사고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됨

의혹 사항 11

사참위 수사의뢰 사안 철저 수사 및 사참위와 실질적인 공조 요청

[확인 결과]

- 사참위와 정기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 협조하였고,
- 사참위 수사의뢰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해경 지휘부 사건, 특조위 활동방해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였고, 그 외 사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였음

의혹 사항 12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 용역의 낙찰 과정, 비용의 추가지급 과정, 인양 공법 변경 과정 등에서 발생한 관련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범행 의혹

[확인 결과]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인양업체 평가과정의 적정성과 상하이셀비지 선정의 적정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음
- 감사원 감사 결과 해수부가 세월호 추가 인양 비용 329억원의 지급을 결정한 근거와 지급 특약 체결 내용의 위법 부당함이 확인되지 않음
- 기타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 부족

• 언론 등 기타 의혹사항

의혹 사항 1

전남도지사 등을 태우기 위해 헬기 출동이 지연되었는데, 이들을 불기소하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의혹

[확인 결과]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전남도지사 등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등에 해당하여 소방헬기를 타고 사고해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 광주지검은 '14. 5. 전남도지사 등이 구조헬기를 돌려세워 탑승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14.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와 같은 판단을 반복할 만한 사정변경은 확인되지 않음

의혹 사항 2

현 정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세월호 문건을 파기하였는지, 파기하였다면 그 경위 확인 필요

[확인 결과]

- 군검찰에서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세월호 문건 파기 관련 혐의로 수사하였고, '20. 3. 파기 문건 불특정 등을 이유로 전부 혐의없음 처분

의혹 사항 3

중대본의 368명 구조 오보 경위

[확인 결과]

- 중대본은 ‘12:00경 진도군청 문화관광과장은 190명이 구조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190명이 목포 이송 중 회항하여 팽목항으로 이송중 이라고 방송 → 12:00경 해남소방서 예방계장의 팽목항 현황판 기재 → 그 무렵 팽목항에 있던 전남지방경찰청 정보1계장의 팽목항 현황판 사진 촬영 → 전남지방경찰청 정보1계장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있던 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장에게로 전달 → 12:50경 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장이 위 사진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에게 보여줌 → 13:03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이 해양경찰청 본청 수상레저과장을 통해 해양경찰청 본청 경비안전과장에게 보고 → 13:12경 해양경찰청이 중대본에 기존 집계된 구조 인원 178명에 190명을 더해 전달 → 14:00경 중대본이 구조인원 368명이라고 발표’의 과정을 통해 오보를 발표하였음
- 위 오보는 보고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무렵까지의 구조자 숫자 178명과 해경으로부터 확인한 구조자 190명을 중복 산정한 결과로 추정됨

□ 사고 당일 B703호 초계기 부기장이 ‘대부분의 승객들이 구조된 상황’이라고 인터뷰한 경위

- B703호 초계기 부기장과 KBS 기자와의 인터뷰 녹취록에 의하면 부기장이 ‘지금 현재 선체의 선수 부분, 조금만 지금 물 위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인원들은 현재 출동해 있는 함정, 그리고 지나가던 상선, 그리고 해군 함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조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수면 아래에 사람이 갇혀 있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됨
- B703호 초계기 부기장이 KBS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시청자가 승객 전원이 구조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부 지시나 고의로 허위 내용으로 인터뷰 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III

향후 계획

1. 공판 활동에 주력 및 추가 의혹 계속 수사

-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책임이 있던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前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활동 종료 이후에도 유가족 고소·고발 사건, 사참위 수사의뢰 사건 등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임

2. 사참위 및 DVR 특검의 자료 제공 요청시 적극 협조

- 수사자료 등을 사참위 및 DVR 관련 특검에 제공하여 국민적 의혹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임

- 별첨 1: 기존 검찰 수사 및 재판 경과
- 별첨 2: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 경과

별첨1

기존 검찰 수사 및 재판 경과

- 기존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여러 수사를 진행한 바 있음
- 검찰은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후 2014. 4.~10. ①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 선박안전 관리 감독 부실 책임, ③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④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99명을 입건하고 그 중 154명을 구속 기소하였음
- 이후 검찰은 2017. 10.~2018. 3.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각을 조작하고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혐의로 김기춘 前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2017. 12.~2018. 3.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前해수부장관 등 2명을 구속 기소, 이병기 前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또한, 검찰과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2018. 6.~12. 기무사령관, 참모장 등 지휘부가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여 前기무사 참모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대장 등 지휘부 3명을 구속 기소하였음(이재수 前기무사령관은 사망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 이후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살인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 형이 선고되는 등 세월호 침몰 사고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구조의무를 위반한 관련자들에게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었고, 일부 사건은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음

유형별 수사현황	주요 수사·재판 결과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검경합수부, 광주지검 수사팀, `14. 4.~10.)	
<p>선장 등 세월호 선원의 구조의무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장, 선원 15명에 대해 살인·살인미수·유기 치사상·특가법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죄 등으로 구속 기소 • (1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준석(선장) : 징역 30년 - 1등 항해사1 : 징역 20년 - 2등 항해사 : 징역 15년 - 3등 항해사, 조타수1 : 징역 10년 - 1등 항해사2 : 징역 7년 - 조타수2, 조타수3, 1등 기관사, 3등 기관사, 조기장, 조기수 1, 조기수2, 조기수3 : 징역 5년 - 기관장 : 징역 30년 ※ 승객들의 사망·상해 관련, 이준석, 기관장 등에 대해 살인·살인미수죄 등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1심에서 기관장의 승무원(조리원) 2명에 대한 살인죄만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유기치사상죄로 유죄선고(살인·살인미수 등은 무죄) • (항소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준석(선장) : 무기징역 - 1등 항해사1 : 징역 12년 - 2등 항해사 : 징역 7년 - 3등 항해사, 조타수1 : 징역 5년 - 1등 항해사2, 조기장 : 징역 1년 6월 - 조타수2, 조타수3 : 징역 2년 - 1등 기관사, 3등 기관사, 조기수1, 조기수2, 조기수3 : 징역 3년 - 기관장 : 징역 10년 ※ 2심에서 이준석에 대해서만 살인·살인미수죄가 인정되었고, 기관장 등은 유기치사상죄 등으로 유죄선고(살인·살인미수 무죄) • (대법원) 항소심 판결 확정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검경합수부, 광주지검 수사팀, `14. 4.~10.)	
청해진해운 등의 세월호 불법 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해진해운 대표 등 임직원 7명 기소 (5명 구속) - 대표이사 징역 7년 등
하역업체 부실고박, 운항관리자 부실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고박업체 관계자(2명), 운항관리자(2명) 구속 기소 - 화물고박업체 현장팀장 금고 2년 - 운항관리원 징역 3년 - 나머지 무죄
해경의 구조의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죄로 불구속 기소 • (1심) 징역 4년(업무상 과실로 56명 사망케 한 부분 유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무죄 : 업무상과실로 248명 사망, 142명 상해 부분 관련, 퇴선유도 조치를 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이 세월호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거나 탈출과정에서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항소심) 징역 3년(급변침 당시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한 1명 외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부 유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심에서 부인된 퇴선유도 조치와 사망 및 상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 (대법원) 항소심 판결 확정
해경의 관제의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VTS 센터장 등 13명 기소(5명 구속) - 벌금 200~300만원(직무유기 등 혐의는 무죄)
해경, 언딘 유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VTS 센터장 등 13명 기소(5명 구속) - 벌금 200~300만원(직무유기 등 혐의는 무죄)
구명뗏목 점검업체 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설비업체 임직원 4명 기소 (3명 구속)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벌금 500만원
세월호 증톤 및 안전 검사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체검사원 1명 구속 기소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검경합수부, 광주지검 수사팀, `14. 4.~10.)

<p>세월호 복선화 면허인가 및 운항관리규정 승인관련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물공여 청해진해운 前 상무 등 임직원 4명 기소 (2명 구속) • 뇌물수수 인천항만청 관계자 2명 구속 기소 • 뇌물수수 인천해경 관계자 2명 불구속 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해진해운 임직원 징역 1년 6월 ~ 징역 8월 - 인천해경 관계자 징역 4월 등 - 인천항만청 관계자 2명 무죄
--	--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비리 (검경합수부, `14. 4.~10.)

<p>청해진해운, 계열사 자금 횡령, 배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 등 계열사 임직원 14명 구속 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병언 부인 :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 유병언 장남 : 징역 2년 등 • 해외로 도피했던 유병언의 장녀는 징역 4년, 유병언의 금고지기는 징역 1년 6월 ※ 유병언 차남은 현재 미국 도피 중
<p>유병언 일가 등 도피 사범 추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병언 일가의 도피를 도운 비호세력 15명 구속 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신처 관리자 징역 6월, 집유 2년 등

청와대의 사고 인지 및 보고시각 조작, 대통령 훈령 변조 (서울중앙지검, `17. 10.~`1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기춘(前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위증죄로 불구속 기소 • (1심, 항소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기춘 : 징역 1년, 집유 2년 - 김장수, 김관진은 각 무죄 ※ 대법원 재판 계속 중

특조위 활동방해 (서울동부지검, `17. 12.~`18. 3.)

- 이병기(前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 김영석(前 해수부장관) 등 2명 직권남용죄로 구속 기소
 - (1심)
 - 이병기 : 징역 1년, 집유 2년
 - 안종범 : 무죄
 - 조윤선 : 징역 1년, 집유 2년
 - 김영석 : 징역 2년, 집유 3년
 - 윤학배 :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 (항소심)
 - 이병기, 안종범, 조윤선, 김영석은 각 무죄
 - 윤학배 : 징역 6월, 집유 2년
- ※ 바이버(Viber) 채팅방을 이용하여 해수부 소속 특조위 파견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조위동향을 보고하게 한 직권남용죄만 유죄
- ※ 대법원 재판 계속 중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보통검찰부, `18. 6.~`18. 12.)

- 前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
 - 前 기무사 1처장, 前 기무사 610 부대장, 前 기무사 310 부대장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구속 기소
 - (1심)
 - 1처장 : 징역 1년 6월
 - 610 부대장 : 징역 1년
 - 310 부대장 : 징역 1년, 집유 2년
- ※ 참모장 1심, 1처장, 610 부대장, 310 부대장 2심 각 진행 중

별첨2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경과

1. 주요 수사·공판 진행 경과

- '19. 11. 7. 세월호 특별수사단 구성
※ 단장 임관혁 등 검사 9명, 수사관 약 20명
- '19. 11. 14. 사참위, 임경빈 군 구조 방기 혐의 수사의뢰
- '19. 11. 15.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1차 고소장(총 5건) 접수
※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언론사의 전원구조 오보, 법무부 등 수사외압, 전경련의 세월호 반대 단체 지원,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방해 사건 관련
- '19. 11. 17. 수사단, 목포신항의 세월호 선체 실황조사 및 검증 실시
- '19. 11. 18. 사참위가 수사의뢰한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서 이송받음
※ 사참위는 '19. 10. 4. 대검에 산업은행 대출비리 사건 수사의뢰하여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
- '19. 11. 20. 사참위가 수사의뢰한 DVR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단으로 재배당
※ 사참위는 '19. 4. 24. 서울중앙지검에 DVR 조작 의혹 사건 수사의뢰
- '19. 11. 22. 해경 본청 등 압수수색(해경지휘부 구조 책임 등)
※ 해양경찰청 본청(11. 22. ~ 12. 19.집행),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완도 해양경찰서, 여수 해양경찰서, 3009함, P112정, 목포한국병원, 소방청 본청 등 압수수색
- '19. 12. 12. ~ 13. / 12. 19. 감사원 압수수색(해경 감사 시 확보한 자료 등)
- '19. 12. 27.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2차 고소장(총 5건) 접수
※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항공 구조세력 구조책임, 세월호 선원의 구조책임,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사건 관련

- '20. 1. 6.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하여 승객 303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해양경찰청 경비
과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등 6명
- '20. 1. 7. 세월호 유가족(임경빈 군 부모) 고소장 접수

※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사건 관련
- '20. 1. 8. 법원,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각 구속영장 기각

※ 기각 사유: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사고 발생 시기, 사고 이후 수사 및 조사
진행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피의자들의 현재 신분이나 지위, 주거관계 등
여러사정과 아울러 '조난사고 구조 담당자의 상황판단 및 대응조치'에 관한 법적 평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의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
다고 보기 어려움
- '20. 1. 9. 사참위,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수사의뢰
- '20. 2. 18. 해경 지휘부 등 11명 각 불구속 기소

※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 '20. 2. 24. 세월호 유가족 고소장 접수

※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사건 관련
- '20. 3. 2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의 의혹사항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접수

※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DVR 조작, 법무부 등 수사외압,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방해 등 사건 관련
- '20. 4. 7. 前특조위 부위원장 조대환의 고발장 접수

※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문서변조 사건 관련

• '20. 4. 7. ~ 4. 14. / 4. 29. / 6. 4. ~ 6. 5.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3회)

- **(압수수색 대상 자료)** 특조위 방해 사건,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과 관련된, 비서관 회의, 장·차관 회의, 국무회의 자료, 일일 동향 파악 및 업무보고 자료, 대통령 국정발언록 등 대통령과 피의자들의 지시사항, 발언내용, 보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록,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기간의 전체 지정기록물 목록 등
- **(압수수색 자료 범위)**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14. 11. 7. ~ '16. 9. 30.까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은 '14. 4. 16. ~ '14. 7. 31.까지 각각 생산·접수된 자료

• '20. 4. 22. 기재부, 행안부, 인사혁신처 압수수색

※ 특조위 방해 사건 관련

• '20. 4. 23. 사참위, 특조위 방해 추가 혐의 수사의뢰

• '20. 4. 27. 사참위,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혐의 수사의뢰

• '20. 5. 4. 세월호 유가족 고소장(총 2건) 접수

※ 전원구조 오보 사건 관련

• '20. 5. 14. 사참위,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시각 조작 혐의 수사의뢰

• '20. 5. 28. 이병기 前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 각 불구속 기소

※ 특조위 방해 사건 관련

• '20. 6. 18. ~ 6. 19.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 법무부 수사외압 사건 관련

• '20. 7. 1. 사참위, 항공구조세력 구조책임 혐의 수사의뢰

• '20. 7. 15.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3차 고소장 접수

※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사건 관련

• '20. 8. 13. 국정원 압수수색영장 기각(국정원 사찰 사건 관련)

※ 기각 사유 :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

- '20. 4. 20. ~ 현재 해경지휘부 구조책임 관련 공판준비기일 4회, 공판기일 6회 진행
 ※ '21. 2. 15. 1심 선고 예정
- '20. 6. 30. ~ 현재 특조위 활동방해 관련 공판준비기일 3회, 공판기일 2회 진행

2. 사건 관계인 조사 등

● 유가족 등 조사

- '19. 12. 27.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부터 유가족들의 고소·
 고발 취지 확인
- '20. 9. 15. 국정원 사찰 대상자인 유가족을 상대로 피해 사실 확인

● 관련자 조사(서면조사 포함)

- 청와대, 해경, 국정원, 국방부 등 각 부처 관계자 등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조사함
- 청와대 관계자 : 前대통령 비서실장, 前안보실장, 前정책조정수석비서관, 前정무수석 비서관, 前경제수석비서관, 前경호실장, 前민정비서관 등 18명 조사
- 해경 근무자 : 前해양경찰청장, 前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前목포해양경찰서장 등 89명 조사
- 국정원 근무자 : 前국정원장, 前2차장, 前정보관 등 9명 조사
- 국방부, 해군, 기무사 등 군 관련자 : 前국방부장관, 前기무사 과장, 前난구조전대 잠수사 등 10명 조사
- 법무부 및 검찰 관계자 : 前법무부장관, 前검찰국장, 前광주지검장 등 9명 조사

- 감사원 관계자 : 前감사원장, 前과장 등 4명 조사
- 인사혁신처 관계자 : 前인사혁신처장, 前인사혁신처 차장 등 10명 조사
- 해수부 관계자 : 前해수부장관, 前해수부차관 등 8명 조사
- 청해진해운 관계자 : 前세월호 선장, 前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 8명 조사
- 세월호특조위 근무자 : 前위원장, 前부위원장 등 14명 조사
- 산업은행 관계자 : 前부행장, 前영업부장 등 8명 조사
-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소방청 등 관련 기관 인사 : 前행정자치부 인사기획팀장, 前
소방청 헬기 조종사 등 14명 조사

3. 압수수색 등 관련 자료의 수집

● 압수수색

- 해경, 감사원, 법무부, 대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디지털 자료와 모바일 분석
- 3회에 걸쳐 9일간 진행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국무회의 자료, 선임비서관
회의 자료, 세월호 관련 자료 등 지정기록물 압수 및 분석

●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털포렌식

- 해군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잠수 영상장치 2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잠수 영상을 복원하여 총 517개 298GB 상당의 동영상을 확인 및 분석

● 해수부 AIS(선박자동식별시스템) 항해 정보 자료 분석

- 해수부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원본 AIS 및 민간 상선 두우패밀리호의 AIS, 해외 AIS 수집업체 MADE SMART사의 AIS 자료 등 분석

● 세월호 사고 관련 기록 확보

- 광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세월호 관련 사건 기록, 세월호 사고 관련 감사원 감사 기록, 해양심판원 세월호 특별조사 보고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보고서 등 관련 자료 확보

● 그 외 '19. 11. ~ '20. 11. 청와대(국가위기관리센터), 사참위, 감사원, 국무조정실, 법무부, 해수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인사혁신처, 해양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응급 의학회 및 산업은행 등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자료를 입수

-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문자동보시스템 관련 사항, 문자동보 발송기록 등
- 대통령기록관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발송한 문자동보시스템 주소록, 청와대 출입 기록
- 사참위의 임경빈군 영상 원본, DVR 관련 법영상분석연구소 감정결과, 관련자 조사 자료 등
-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학회 등의 임경빈 군 생존 가능성 회신 결과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관련 적폐청산 TF 자료, 내부 규정 등
-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기무사령관 출입 내역, 국방부와 기무사 간 지시/보고 자료 등
- 해경의 현장지휘본부 생산 문서, 함정일지, 함정운영규칙 등
- 특조위 활동방해 관련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파견보류, 진상규명국장 임용보류 등 인사 관련 내역
-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강요 관련 법무부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2대 이사장 임명 관련 자료 등
- 산업은행의 대출취급검토표 등

2

세월호참사
특조위 조사방해
사건 판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비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 처분에 대한 항고 개요 -불기소처분의 부당성

1 항고 경위

-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2021. 1. 19. 수사결과를 발표
- 이후 대리인단(세월호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은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처분 결과를 ‘불기소 결정서’로 통지를 받음
- 대리인단 2021. 2.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함
* 검찰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등)에 대해 상급의 검찰청에 불복하는 제도임
- 오늘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접수하고 이를 설명하려 함
- 항고인 : 장훈 외 376명

2 항고의 대상 범위와 주요 대상

- 대통령, 청와대, 정부 책임자(감사원 감사 무마 책임자 포함)
- 해경 구조세력 책임자
- 세월호참사 조사방해세력 책임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행위 책임자
-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행위 책임자
- 세월호참사 전원구조 오보 관련 책임자

3 항고의 대상 범위와 항고 이유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승객 구조와 관련한 해경 구조본부 책임자와 관련하여 김석균 등 11명 불구속 기소,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 방해 책임자 관련 이병기 등 9명을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혐의 처분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수사결과 처분 이유를 설명하지 않음

가. 대통령, 청와대, 정부 책임자(감사원 감사 무마 책임 포함)

1) 주요 행위

- 세월호 사고를 인지하고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후 5시까지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청와대가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아 304명 승객의 생명을 잃게 하고,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살인(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

-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승객 구조에는 전념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만을 이유로 끊임없이 영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구조방해로 수난구호법 위반책임
-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해경 책임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외압을 행사하였거나 해경 123정장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빼도록 외압행사 책임
- 세월호참사 직후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 핵심은 ①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인지와 ② 대통령께서 사고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았는지 여부였는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외압을 행사하고,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위 감사 내용을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지 않는 과정에서 외압행사 책임

2) 주요 항고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살인죄, 수난구호법 위반, 직무유기죄**

-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이고, 군사력, 경찰력,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다.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승객 구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과 희망이 됨
-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집무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최초 상황보고를 받고서도 오후 5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후 5시까지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청와대가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재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보고에만 집중하느라 스스로 역할을 저버렸고, 국가의 재난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유효하게 작동시키지 않았음
- 그 결과 304명 승객의 생명을 잃게 하고,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박근혜 대통령 등 컨트롤타워 역할 책임자는 살인(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묻는 수사가 성역 없이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았음

• (살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판단 부분)

2004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04. 5. 14. 자 2004헌나1 결정) 결정과 모순점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국가재난 상황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음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은 2014. 6. 5. 해경본청과 청와대 사이의 통화기록 압수수색영장 집행 광주지검 수사팀장에게 전화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했고, 실제로 최초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지 못했고, 5시간 이상 영장 집행을 방해 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
- 그런데도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였고(미수인데 처벌규정 없다는 이유), 종래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 결정을 했으므로 이번에도 혐의없음으로 부당한 결론을 내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 법무부가 2014. 7. 29. 해경 수사를 담당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해경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빼도록 한 것은 확인 되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당시 해경수사팀 보고·지휘 라인을

무시하고 해경수사팀 보고·지휘 라인이 아닌 대검 형사 1과장을 통해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해경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빼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권리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임

-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해경수사팀인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해경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빼도록 지시하기 어려움
그렇다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조사 해서 사실관계를 탄핵해야 하는데도 서면조사에만 그쳐 외압을 실체를 철저히 파헤치지 못한 부실수사임
- 불기소 이유서에 마치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해경 책임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 치사상’에 관한 법리 검토가 있으므로 외압이 아니라는 것이나, 이것은 외압 실체를 희석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변명 논리에 불과함. 왜냐하면 해경 123정장 김경일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올리기 전에 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음
-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조사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한 다음에 혐의 없다고 한 것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부당한 수사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부분

-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에 관한 사건에서 국가안보실의 최초 보고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최초 지시시간과 지시내용 등이 조작된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14회(대통령비서실 11회, 국가안보실 3회)에 걸쳐 실시간 보고 사실은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6 판결문)
- 2014. 5. 23. 청와대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강력한 자료 확보수단(감사원법 제51조)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고, 청와대의 답변서 2장이 감사원의 질의 사항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추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음

- 2014. 5. 23. 청와대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강력한 자료 확보수단(감사원법 제51조)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고, 청와대의 답변서 2장이 감사원의 질의 사항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추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음
- 감사원은 2014. 7. 8. 중간발표 때 ‘대통령께서 사고 상황을 제대로 보고 받았는지 여부’에 최종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사건 불성립의 편법으로 반영하지 않았음
-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제출 불응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국가안보실 담당자에게 위법·부당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는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안보실 담당자에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죄에 해당, 그런데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부당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제출된 국가안보실의 답변서 1장)
감사원의 8매 분량의 질의서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은 20매 상당의 구체적인 답변서 초안을 작성했는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안보실 담당자에게 질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1매 분량의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위법·부당하게 지시하였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됨. 그런데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국가안보실장을 대신하여 지시할 수 없는데도 1매 분량의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마치 국가안보실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는 위계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 그러나 범죄행위를 인지하여 수사하지 않음
-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 2014. 5. 23. 감사원은 청와대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청와대비서실에서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는 서면보고서 11건과 국가안보실에서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서 3건의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그 당시 자료를 제출받았다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음. 그 결과 보고서 조작의 기회를 제공한 것임

- ①‘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인지 여부’와 ②‘대통령께서 사고 상황을 제대로 보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그 내용을 알게 되도록 했어야 했음. 그런데, 감사원은 2014. 10. 10. 사건 불성립으로 처리하는 꼼수를 통해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은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서 비로소 확인된 것임
따라서 ‘사건 불성립’이라는 형식적인 방법으로 감사결과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 누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관한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철저하게 파헤치지 못한 부실수사임
- 2014. 7. 8. 중간감사 결과 발표에서 감사원 제1 사무처장 정길영이 청와대의 대응과정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중에 최종 감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도 사건 불성립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를 파헤치지 못함
- 전 감사원장 황찬현이 최종 감사결과에 관한 의결(2014. 10. 6.)을 앞둔 2014. 9. 4. 청와대에 들어가 왜 수사보고를 했는지, 이것이 사건 불성립 처리와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나. 해경 구조세력 책임자

1) 주요 행위

- 해경 헬기 구조세력은 출동하는 과정에서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고, 현장 도착 후 세월호가 45도 이상 기울어져 있었고, 갑판이나 해상이 아무도 없었으며, 당시 헬기에는 해양구조 전문요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도착 직후 세월호 선내로 진입하여 퇴선 유도 등을 하는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책임
- 참사 당일 17:24경 고(故) 임경빈을 발견하여 직후 3009함에 이송되어 생명 활력 징후가

있어 생존하여 있었는데도 응급 구조 헬기 등 헬기로 이송하지 않고 P정으로 지연 이송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

- 해경 123정장이 방송 장비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해경지휘부가 해경 123정과 승조원으로 하여 김문홍 등 해경지휘부가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로 퇴선명령을 내리게 하였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책임

2) 주요 항고 이유

-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발견되었을 당시부터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전제하고 최대한 빠르게 구조하여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어야 함에도, 더욱이 피해자의 발견 시점과 발견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사망 여부에 대해 임의로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사의 진단과 판단을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책임을 포함하여 당일 구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이루어진 것임
- 피해자 발견 당시 시각과 선체로부터의 거리는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현장구조세력의 경우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과실이 존재함. 특수단은 세월호참사 당일 해경 항박일지와 교신내역에서의 표현을 근거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항박일지의 작성 시간(당일 20시 전후), '익수자'로 표현된 기록 등에 비추어보면 당일 사용된 표현을 근거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 해경 등 관계자들의 사참위 조사 당시 진술과 특수단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에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해당 진술의 번복 가능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였음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여, 특수단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짚고 재수사를 요청하고자 함

다. 세월호참사 조사방해세력 책임자

1) 주요 행위

-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종료 혐의) 특조위의 2015. 11. 23.자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한 후 활동기간 기산점을 2015. 1. 1.로 부당하게 앞당기고, 파견공무원 복귀, 2016년 하반기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조기에 강제 종료시킨 것에 대한 책임
- (특조위 세금도둑 발언 및 내부자료 유출 혐의) 특조위 여당 측 위원과 관계자들의 “세금도둑 발언” 및 특조위 내부자료의 지속적 유출을 통한 특조위의 독립성 훼손 및 조사방해에 대한 책임
- (특조위 여당추천위원 조사방해 혐의) 특조위 여당추천위원들이 표결, 청문회, 전원회의 등에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는 등 특조위의 의결 및 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
- (부당한 시행령 및 예산 삭감·미편성 혐의) 부당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삭감·미편성 행위에 따른 특조위 조사방해 및 강제해산에 대한 책임
- (행적조사 안건 의결 방해혐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방해를 통한 특조위 조사 방해에 대한 책임
- (보수단체 이용 특조위 조사방해 혐의) 보수단체 지원을 통한 특조위 조사방해 및 보수단체 사주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 위원 고발에 대한 책임

2) 주요 항고 이유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종료 혐의 관련 책임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의자 박근혜, 황교안, 김기춘, 조운선, 최경환, 유일호, 유기준, 김남규, 성명 불상 정무직 공무원, 성명 불상 일반직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부처 내 고위공무원 등의 지위에 있었던 자들로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를 최종적으로 지시,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자들임
- 원처분 검사는 이병기 등 청와대비서실 소속 일부 책임자들의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 종료 관여를 인정하면서도, 위 피의자들의 특조위 조기 강제종료에 대한 공모, 가담 및 본질적 기여를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음
- 그러나 위 피의자들은 국무회의, 예산승인 과정, 근무처 등에서 원활하게 의견을 교환 할 수 있었으므로 정황상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종료를 실현하기 위한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 가담이 인정될 수 있음
- 그리고 위 피의자들은 실제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시키는 다양한 행정절차를 직접 승인 하거나 결정한 자들로, 이는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야 함
- 나아가 경험칙상 이병기 등 청와대비서실 소속 일부 책임자들이 국무를 조정할 권한을 가진 박근혜, 황교안 등의 승인 또는 지시 없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구인 특조위 활동을 조기 강제 종료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원처분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부당한 법리 해석과 수사미진으로 피의자들의 암묵적, 순차적 공모관계와 본질적 기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존재함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종료 혐의 관련 책임자들의
세월호진상규명법위반, 업무방해, 직무유기**

- 그러나 피의자들이 특조위 구성원들로 하여 활동 종료일에 관한 오인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위계행위는 인정되고, 피의자들은 정치적 지위 등 권세에 의한 압박을 통해 특조위를 조기 강제종료시켰으므로 위력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세월호진상규명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 피의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장받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원권과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따른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보장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특조위의 강제해산을 방치한 것은 직무의 의식적 포기에 해당함. 따라서 피의자들에게 직무유기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원처분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함

**특조위 세금도둑 발언 및 내부자료 유출 혐의 관련 책임자들의
세월호진상규명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서는 것임, 피의자 김재원은 특조위 내부자료를 해수부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비공식적인 경로로 특조위 의사에 반하여 수집하였고, 이를 공개하며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 비난하였음. 이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지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해수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특조위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
- 고 김영한 비망록에 따르면 청와대비서실과 김재원은 계속 소통해온 정황이 있음. 즉 세금도둑 발언 혐의에 피의자 김기춘, 조윤선 등의 지시와 관여가 의심되는 상황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피의자 김기춘, 조윤선 등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짐

- 피의자 조대환, 연영진, 김남규는 공개되지 아니한 특조위 내부자료를 피의자 김재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세금도둑 발언 혐의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기 때문에 공모공동점범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짐
- 원처분 검사는 피의자 김재원, 조대환, 연영진, 김남규의 특조위 내부자료 유출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음
- 그러나 특조위 내부자료는 내부 논의를 위해 철저히 비공개가 유지되고 있었던 비밀에 해당하고, 피의자 김재원에게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또한 피의자 조대환은 이석태 전 특조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위원들에게 어떠한 언질도 없이, 특조위 예산협약과는 관련 없는 상임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에게 내부자료를 전달하였는데 이를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의자 김재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피의자 조대환, 연영진, 김남규에게는 각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 이상과 같이 원처분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함

**특조위 여당추천위원들의 조사방해 혐의 관련 책임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직무유기**

- 조대환, 고영주, 차기환, 석동현 등 여당 추천위원들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퇴장 및 단순히 의견표명에 그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문회나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이 단순히 의식적 포기에 그치지 않았음
- 여당 추천위원들의 특조위에 대한 비협조 및 조사방해행위는 피의자 조운선 등과 플라자 호텔에서의 회동 이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 즉 피의자 김기춘과 조운선의 관여를 추정해볼 수 있음

- 더불어 여당추천위원들은 특조위 설립준비단 해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등 특조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특조위 운영을 방해하고 운영에 협조하지 아니하였음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할 여당추천위원들의 직무를 고려했을 때, 이는 직권을 남용한 방해행위 이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함
- 이성과 같이 원처분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함

**부당한 시행령 및 예산 삭감·미편성 혐의 관련 책임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직무유기**

- 특조위 시행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 규정한 인원을 부당히 감축하도록 하는 위법한 시행령에 해당함. 특조위의 예산을 축소하고 미편성한 행위의 위법성 내지 부당성은 실질적으로 특조위의 정상적인 진상규명 업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 보아야 함. 특히 특조위는 2016년 하반기 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특조위는 하반기에 강제적으로 활동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음. 이러한 관점에서 특조위에 대한 예산 축소 및 미편성행위는 위법 부당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나아가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2016년 12월경까지 보장되어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6년 하반기 예산을 미편성한 것은 결국 특조위의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임. 따라서 피의자들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어야 함
- 이성과 같이 원처분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함

**특조위 행적조사 안건 의결 방해 혐의 관련 책임자들의
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 피의자 박근혜 이병기, 현기환, 현정택, 김영석, 이현, 고영주, 차기환, 석동현, 임현택, 김남규가 공모하여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기자회견 개최, 사퇴 결의, 안건 철회 요구 등으로 영향력을 미친 혐의에 대하여 이현, 고영주, 차기환, 석동현의 위 행위들이 단순한 의견표명에만 그친 것이 아님
- 이현 등이 기자회견 개최 등으로 안건 의결에 반대한 것은 그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이병기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현 등에 대한 피의자 박근혜 등의 지시를 추정할 수 있고, 이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이현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피의자 박근혜, 이병기, 현기환, 현정택, 김영석에게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죄가 성립함
- 이상과 같이 원처분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의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함

**보수단체 이용 특조위 조사방해 혐의 관련 책임자들의
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 피의자 김기춘, 이병기, 조운선, 현기환, 현정택이 특조위 반대 집회 시위를 개최하고 특조위 전원회의에 난입한 보수단체를 지원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나,
- 2014-2016년 정보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 등에 보수단체를 이용하여 특조위를 방해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최소한 문제가 되는 보수단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졌어야 함. 그러나 보수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이루어지지 않았음. 즉 원처분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수사미진의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함

- 한편 원처분 검사는 ‘태극 의열단’ 간부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할 것을 종용한 피의자 임현택에게 무고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음. 나아가 피의자 김영석, 이병기, 현기환, 현정택이 세월호 유가족 고발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음. ‘태극 의열단’ 간부의 고소가 명백히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고소이지만, 허위가 아닌 사실에 대한 고소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임
- 그러나 무고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의자 임현택에게는 고위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일반적 직권을 남용하여 ‘태극 의열단’ 간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피의자 임현택이 ‘태극 의열단’ 간부에게 마치 특조위가 협조를 구하는 것처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자격 사칭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세월호진상규명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음
- 나아가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피의자 임현택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당시 피의자 임현택에게 지시를 할 수 있었던 피의자 이병기, 현기환, 현정택, 김영석의 가담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함
- 이상과 같이 원처분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의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함

라.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행위 책임자

1) 주요 행위

-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예하 부대원을 활용하여 세월호 피해가족들의 동향,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여 유가족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책임

2) 주요 항고 이유

공모 부분

- 청와대가 사찰 보고서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지 않은 부실수사의 결과임
- 국군기무사령부가 획득한 정보의 최종 사용자는 국방부 장관임, 국방부 장관이 보고하지 않고 국군기무사령관이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 보고하였고, 보고한 후에 국군기무사령부 산하에 세월호 TF팀이 만들어져 활동하였으며, 활동의 결과물인 보고서가 모두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것은 지시 또는 승인의 구체적인 근거임
- 특히 2015. 5. 14.자 세월호 관련 조치 동정(7보)에는 ‘대국민 담화 시 감성적인 모습 시현 필요’라고 기재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5. 19.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명백한 공모의 근거임
- 국군기무사령부의 전통적인 활동 방식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우호적인 여론을 적극 직원 활용하고,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이었음.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대통령비서실 수석회의 등에

참석하였음, 이러한 전통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통령 등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사찰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공모관계를 부정한 것은 부당함

권리침해 등이 없다고 본 결론 부분

- 이미 군사법원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지휘관들이 부대원들에게 유가족사찰행위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죄로 유죄를 인정했음. 이와 달리 판단한 불기소는 기본적으로 부당함
-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의 주요 목적이 진상규명 여론을 잠재우고, 박근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었는데,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내는 유가족들에 대해서 중복세력, 정부비판 세력으로 호도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특히 수집된 정보를 보수단체 등의 추모집회에 제공하는 등 유가족의 진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함
- 세월호 유가족, 가족협의회 등의 진상규명 활동이 당연한 권리이며 당연한 업무인데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어묵 사건’ ‘폭식투쟁’, ‘맞불집회’ 등으로 진상규명 활동이 위축되는 등 방해를 받았음
- 개인의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파악된다는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 자유와 자기 정보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국군기무사령부의 부대원들이 파악한 첩보 등 첩보관리시스템(TIS)에 등재되어 관리되었으므로 ‘개인정보 파일운용’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함
-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무시한 불기소처분은 부당함

마.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행위 책임자

1) 주요 행위

-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농성, 서울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한 경위, 건강상태, 주치의 정치적 성향 등을 사찰한 행위, 진도체육관에서 유가족의 동향 등을 사찰한 행위에 대한 책임
- 위와 같이 국정원 직원이 사찰하도록 지시한 전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 등에 대한 책임
- 국가정보원 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한 조사 및 지시 의혹들에 대한 책임

2) 주요 항고 이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

① 유가족의 권리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

- 개인의 정보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집, 이용된다는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 자유와 자기 정보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임. 즉 피의자들의 사찰행위 및 문서작성행위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음. 따라서 피의자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

②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

- 원처분 검사가 제시하는 내부지침은 대외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지침이고,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국내 보안 정보로 한정됨
- 국내 보안 정보는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 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 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를 의미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동향이 위 국내 보안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함. 따라서 피의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관련 - ①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

- 특정 검색 값으로 검색이 가능한 문서는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함. 그리고 피의자들이 사찰을 통해 작성한 문서는 국정원 내부 첩보시스템 등에 등재된 문서로 검색 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함. 문서 제목이 사찰대상 유가족의 실명 또는 세월호라는 키워드로 유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피의자들이 작성한 문서는 검색이 가능한 문서임. 따라서 피의자들이 작성한 문서는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하고, 피의자들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관련 -

②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한 부분

-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목적’은 ‘업무상의 목적’을 의미하지 특정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할 목적을 의미하지 않음

- 피의자들이 국정원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목적 아래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피의자들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국정원의 업무로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사찰하여 문건을 작성한 피의자들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죄책을 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한 부분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30조의2는 사참위의 활동개시일로부터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는바,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황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진 ‘공소권 없음’ 처분은 부당함

국정원장 등의 지시 존재 여부, 국정원 직원의 부당 조사 등에 대한 의혹

- 국정원의 세월호 관련 문건을 일부만 조사하거나, 국정원 직원의 일부 진술 등에만 의존하는 미진한 수사가 이루어졌음. 국정원 직원의 개입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혹을 부인하는 관련자들만 일부 조사하여 결론을 내렸음. 따라서 원처분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수사미진의 위법이 존재함

바. 세월호참사 전원구조 오보 관련 책임자

1) 주요 행위

- MBC, KBS, MBN 등은 세월호 승객 전원이 구조되지 않았는데도 2014. 4. 16. 11:01경부터 세월호 승객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허위보도를 하여 해경과 민간 구조세력의 구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에 대한 책임

2) 주요 항고 이유

- 각 언론사별 책임에 따라 보도하려는 과정에서 오보가 이루어진 것에 성찰이 여전히 없음,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하되 정확한 보도 원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음, 이를 계속 문제 제기할 필요성 있음
- 수사결과에 의하면, KBS는 10:04경 특보체제로 전환해서 보도하면서 10:38경 해경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하였고, 취재 기자가 현장에 도착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군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던 상황을 여과 없이 그대로 데스크에 전달하면서 자막에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이라고 보도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보충 설명이 없음
- 수사결과에 의하면, KBS는 10:04경 특보체제로 전환해서 보도하면서 10:38경 해경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하였고, 취재 기자가 현장에 도착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군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던 상황을 여과 없이 그대로 데스크에 전달하면서 자막에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이라고 보도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보충 설명이 없음
- MBC의 경우,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간 목포 MBC가 전원구조 발표가 오보라는 연락을 주었는데, 본사 MBC가 바로 오보를 바로 잡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4.16세월호참사 비평 vol.1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발행일 2021년 4월 12일
엮은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행처 4·16재단
글쓴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편집/디자인 청맥

ISBN 979-11-969655-3-2

이 책은 2014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나온 판결에 대한 비평을 엮은 출간물입니다.

본 저작권은 공동기획을 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4.16세월호참사 비평 vol.1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